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 (II)

전재경 송영선 박정원
황효형 유진식 고꾸분 노리꼬
한 강 광 건 육지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 (II)

전재경 송영선 박정원
황효형 유진식 고꾸분 노리꼬
한 강 광 건 육지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東北亞 文化共同體 形成을 위한
法的支援方案 研究(Ⅱ)



【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위 원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
	최 진 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흥 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I. 研究의 目標

1. 第1次年度 [2004年]

- 문화공동체의 개념정리 및 법적지원 가능성 모색
- 현상과 과제 분석 : EU와의 비교

2. 第2次年度 [2005年]

- 3국[韓·中·日]의 국내법제 분석 : 장애요인·촉진요인
- 법적지원 : 한국법제 정비추진 및 中·日 당국과의 협의안

3. 第3次年度 [2006年]

- 동북아 3국[韓·中·日]간 국제법적 접근 : 협약·MOU
- 주변국가[북한·대만·몽골] 확장방안

II. 研究方法 및 範圍 [第2次年度]

1. 條件과 假說

- ‘東北亞人’의 개념화
‘유사성의 연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와 접근방법을 모색
- 공동체 형성의 차별화
경제공동체 : 시장과 제도를 통한 직접적 형성
문화공동체 :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간접적 형성

2. 一般法과 特殊法의 分析

- 私權의 기초

韓·中·日 민법전의 정비동향 분석

□ 互惠主義

개별 법령상 외국인의 법적지위 분석

3. 研究範圍

□ 법제상의 조치

행정적 지원 및 프로그램 활동과의 구분

□ 정부차원의 접근

민간부문과의 구분

Ⅲ. 法的支援 分野 및 內容

1. 教育·學術分野

□ 언어교육 : 한국어·중국어·일본어

- 한·중·일 공동의 회의등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현실을 감안

- 3개언어 [한국어·중국어·일본어]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동북아 언어 특기생을 우대하는 인센티브제도 개발

□ 공용교과서 : 역사·문예·지리

- 『동북아문화사』·『동북아문예지』·『동북아지리지』개발

- 교육법 등의 개선 : 각급학교 교양학습 등으로 유도

- 전문교사의 양성 또는 연수

□ 자격공유 : 자격 또는 기능에 대한 공동인증 및 활용

-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국가간 협정체결

-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자격[기능]의 등록 및 인증증명서 발급

- 중복과목[기능]에 대하여서는 과목별 시험의 면제

2. 文化·藝術分野

- 국외반출 문화재의 동북아 순회전시
 - 법적 실체의 규명과 문화가치의 공유를 구분
 - 반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잠정유보
 - 각국 정부가 안전전시 및 순회후 귀환을 보장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에 대한 협력
 - 전문인력 파견
 - 기술적·재정적 지원
 - 세계문화유산 인증에 버금가는 '동북아 문화유산' 인증제 개발
- 풍속·관습의 발굴 및 보전
 - 풍수지리·역술 등 동북아의 전통을 체계화
 - 유사한 세시풍속·통과의례의 보전
 - 법률문화의 보전 : 공통의 法俗[관습법]을 발굴

3. 文化産業分野

- 문화의 다양성 존중
 - 문화상품에 대한 행정적·절차적 규제의 지양
 - 유행과 반유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 자제
 - 검열제의 폐지
- 상품의 진실성 확보
 - 고전 등 공통의 문화유산에 기초한 캐릭터 개발을 상호허용
 - 국가인증제를 통한 모조품의 방지
 - 상호협약 등에 의하여 캐릭터 경합의 방지
- 콘텐츠에 대한 재산권의 보장
 - 콘텐츠 내지 무체재산권의 법적개념 통일
 - 모조 또는 위조품에 대한 보상보험 제도의 개발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의 개발

4. 靑少年·體育分野

-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
 - 대학간 학점교류제의 도입
 - 초중등생 문화체험·어학연수 기회의 확충
 - 초중등생들의 유학에 의한 학년이수제의 도입
- 동북아체전의 개최
 - 대중적 경기종목 중심 : 매년 개최
 - 부상선수등에 대한 국가적 보장
 - 아시안게임 및 동아시아게임과 조화

5. 觀光레저分野

- 시장에 대한 상호신뢰의 확보
 - 관광표지판의 국제화 : 고전한자 표기등
 - 주요 관광정보의 공유화
 - 거래관습 또는 흥정문화의 격차해소
- 관광상품의 차별화
 - 명승지·유형지 중심의 관광지양
 - 민속·문화관광의 확장
 - 잠재적 관광자원의 개발
- 안전관리의 강화
 - 치안질서의 수준 제고
 - 재난관리·응급구호 체계의 구축
 - 관광지 안전기준의 제정운용 : 입장정원관리·사전예약제 등

6. 國際外務分野

- 출입국간소화
 - 무비자 또는 비자면제

- 동북아 별도창구 개설
- 여권·비자의 분실·훼손시 각국 영사보증 등에 의한 임시통관
- 동북아공용문자
 - 중국의 고전한자를 3개국 공용문자로 선정
 - 도로표지 또는 공식행사 등에 활용
 - 3개국 공통의 발음기호의 개발 및 보급
- 법률용어공용화
 - 같은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법률용어의 사용을 지양
 - 동일개념에 대한 동일용어[漢字] 표기 → CODE化
 - 3개국 법률용어 사전의 편찬 및 보급

7. 宗教分野

- 종교활동의 자유보장
 - 정교분리 원칙의 보장
 - 신교·포교 및 집회·결사의 자유 확충
 - 정치적 종교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회피
- 전통신앙의 보전
 - 동북아 공통의 신화의 발굴 및 전승
 - 샤머니즘·도교유산 등의 발굴
 - 민속자료 또는 문화유산으로 보전

IV. 研究結果의 履行 및 向後推進 方案

- 국내법제 정비안 건의
 - 동북아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저해하는 한국의 법령을 추출
 - 공론화 : 입법의견조사 → 전문가회의 등의 개최
 - 법제정비방안 건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무총리실

- 중국·일본 법제의 정비안 건의
 - 동북아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저해하는 中·日의 법령을 추출
 - 韓·中·日의 상호정비를 조건으로 외교적 협의 절차개시
 - ※ (가칭)『동북아 문화공동체 법제개선 포럼』의 창설
- 국제협약 또는 협력각서의 가능성 제시
 - 政·文 分離의 원칙을 천명 :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를 분리
 - 규범화 : 韓·中·日 다자·쌍무협약 또는 MOU 가능성 제시

목 차

I. 總 說	1
1. 研究目標	3
2. 先行研究	5
3. 主要論點	14
4. 研究範圍 및 接近方法	17
II. 韓國法制的 理解와 課題	23
1. 教育學術 및 勞動 分野	25
2. 文化分野	30
3. 文化産業分野	34
4. 靑少年·體育分野	37
5. 國際·外務分野	38
III. 中國法制的 理解와 課題	49
1. 文化交流 關聯 法制的 構造와 實態	51
2. 教育制度	63
3. 中國의 教育關聯法の 法源	69
4. 教育的 對外交流 및 敎員의 就業	76
5. 勞動規範과 對外就業	83
6. 국제법적 문제	95
7. 財産權 保護	104
8. 知的財産權의 保護	125
9. 文物保護法	141
10. 文化事業保護法	150

IV. 日本法制的 理解와 課題	163
1. 出入國管理와 涉外私法	165
2. 集團會合	174
3. 教育과 學歷	176
4. 就業·勤勞	183
5. 社會的·文化的人權의 保障	191
6. 外國人에 對한 社會保障	198
V. 私權의 基礎로서의 韓·中·日 民法典	203
1. 社會의 基本的 構成原理	205
2. 韓國 民法	206
3. 日本 民法	210
4. 中國 民法	212
VI. 結論 및 提言	215
1. 韓·中·日 國內法制的 課題	217
2. 障礙法制的 改善	225
3. 促進法制的 造成	227
參考文獻	231
參考資料	
韓·中·日 文化共同體 關聯 法制現況	235

I

總 說

1. 研究目標

法과 制度는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공동체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문화공동체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그 문화공동체가 잘 작동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하드웨어]을 마련함으로써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한다.

가. 理念의 制度 規定性

동북아 문화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공동체의 개념과 범주의 정립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제도 연구에서 기본법리상의 불확정 개념은 불가피하다. 제도연구에서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때로 “부정의 변증법”과 유사한 방법론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념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변전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구체화시킬 제도적 틀을 규정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이 과연 가능한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더라도 문화공동체란 실재하며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안출도 가능하다.

나. 制度의 理念 規定性

제도는 부단히 변전하는 이념과 달리 불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전한다. 제도의 안정성과 보수성은 언제나 이념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법과 제도는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성큼성큼 뛰면서 발전한다. 법과 제도는 당대의 모든 사상과 이념을 고루 반영하기보다는 당대를 풍미한 주류의 사상과 이념을 포섭한다. 법과 제도는 문화공동체에 대한 모든 사유를 담을 수는 없지만 정책 형성계층과 여

론주도계층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다.

당대의 사상과 이념은 법과 제도를 낳지만 일단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거꾸로 그를 낳은 사상과 이념을 제어한다. 문화공동체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형성은 당사국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틀을 짜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일단 형성된 법과 제도는 문화공동체에 대한 주류의 생각과 다른 사상과 이념을 배척하기도 한다. 때로 새로운 주류가 등장한 이후에도 묵은 주류의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보인다.

다. 韓·中·日 國內法制的 課題와 展望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연구(Ⅱ)는 우선 한·중·일 3국간에 문화공동체라는 관념이 실재함을 전제하고 또 문화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국내법제들을 분석하고 전망함을 연구목표로 설정한다.

각국의 국내법제는 그 사회와 문화를 둘러싼 사상과 이념들의 동향과 달리 전통적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안고 있다. 사회는 체제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하여 문화는 유연하게 변하고 학습과 전파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그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체제를 제어하고 문화소통을 방해 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회문화에 대한 정치경제의 규정성을 완화시키고 사상과 이념에 대한 제도의 규정성을 탈피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법제 연구(제2년차)에서는 한·중·일 3국의 사회와 문화를 규정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거나 촉진시키는 실정법과 법률 문화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2. 先行研究

가. 共同體法制

2003년 6월, 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the Japan Forum on International Relations)의 제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할』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CEA)의 창설을 제안하였지만, 그 제언 중에는 경제적 강론, 정치적 강론만이 있고, 법적 검토는 없었다. 이 논문은 WTO와 FTA의 질서가 아시아제국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것을 착목해서, WTO와 FTA의 양제도를 연휴하게 하면서, 동아시아 공통의 법제도의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아시아 제국에서 진행중인 사법개혁에서도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

동아시아는 한·중·일·대만과 ASEAN을 포함한 개념이다. 저자에 의하면, 동아시아 각국은 토착문화를 문화의 최하층에 가지고 있다. 그 위에 제2 문화층으로서 대 고대문명이 있고, 제3 문화층으로서 서구화, globalization, 제4 문화층으로서 정보혁명의 결과로 생긴 공통문화가 있다. 문화적으로 보면, 언어, 종교 등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지만, 『문화의 충돌』은 (국지적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전지역적인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의 특징으로 새로운 문화에의 순응성도 높다. 영화, 만화(animation) 등의 대중문화의 공통화 현상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층적으로 문화분류를 하면, 문화공동체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²

¹ 須綱隆夫, “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経済統合と法制度化,” (東아시아에서의 지역經濟統合와 法制度化)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13號 (2004年).

² 青木保, “東アジア共同體の文化的基盤,” (東아시아共同體의 文化的基盤)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國際問題』, 538號 (2005年 1月).

나. 教育制度³

먼저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국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경쟁이 치열하게 빚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앞서서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로서 교육에서 산업화의 후유증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학교붕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교육이 지위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육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교육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부터 개설되어 있는 중점학교 때문에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상급 단계 중점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시위주 교육이 만연되어 있으며 일찍부터 과외를 받는 등 우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립학교가 아닌 소위 국공립 명문학교까지도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받아 학생을 입학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 대학 진학률이 최근 대폭 늘어나 취학연령의 15%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자비로라도 외국에 유학하려는 풍조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 유학하여 외국의 발달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면 상당한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³ 한만길·최영표·이현영,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통일연구원, 2004), pp. 278-280.

다음으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교육이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회균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임으로써 교육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상황은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다.

그 동안 일본은 도시화가 진전되고 자녀수가 감소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 교육열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그리고 이지메(왕따), 등교거부 등으로 이른바 학교붕괴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 사이에 공적인 윤리를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본 교육은 지나친 평등주의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와 과도한 지식주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개성이나 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이 경시되어 왔다. 또한 학교제도나 입시교육 등 현행의 교육제도가 학생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신장 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로 전파되는 정보화 등 사회적 변화에 학교 교육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 觀光交流

(1) 基本的 障礙要因⁴

첫째, 동북아 3국의 정치체제의 차이가 관광교류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등소평 이후 개방, 개혁의 폭을 넓혀 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종 교류

⁴ 박기홍·김대관,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통일연구원, 2004), pp. 100-102.

와 관련된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교류의 내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외해시킬 염려가 있는 체제비판적인 내용들은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체제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제도적 차이가 또한 동북아 3국의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관광교류와 관련된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 등의 심사가 각기 다르며 중국의 경우 심의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에는 한·일간 독도문제, 중·일간 조어도 문제 등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 간도문제도 한·중간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영토문제는 3국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역내 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넷째, 영토분쟁과 함께 역사논쟁도 한·중·일 3국간 신뢰구축과 역내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교류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한국과 중국간에도 전례 없는 역사논쟁이 불붙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동북 3성 지역(만주)에 향후 예상되는 주변국(특히 한반도 통일이후 한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미 발해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취급해 온 중국이 고구려사마저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한국민의 분노와 반중감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동북공정과 관련된 파문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동북아 지역에서 역사문제에 관한 한 이제까지 한국+중국 대 일본이라는 기존이 대립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중·일간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이 엄청난 인화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3국 모두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근대 민족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근대의 해체기에 접어든 구미와는 대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민족주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근대의 절정기에 있음. 한·중·일 3국 민족주의의 특징은 국가 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일부 또는 민간그룹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북아국가들간 민족주의 갈등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가 협상이나 대화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일중간 지역패권 경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와 같은 경제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역내국가들에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주도국의 리더쉽과 같은 정치적 조건도 충족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 모두 이러한 역내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양국간 전략적 경쟁관계는 역내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중간 지역패권경쟁이 한국, ASEAN 등 역내 국가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긍정적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일중관계가 역내 협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단독으로 역내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유럽통합 과정에서 프랑스, 독일처럼 양국이 상호협력하여 지역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 또한 현재로서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2) 觀光部門 障礙要因⁵

한·중·일 3국 또는 각국의 지역간 관광교류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는 각국의 제반 규제사항들, 각국의 제반 규제 사

⁵ 박기홍·김대관,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p. 103.

항들, 각국 관광환경과 여건에 따른 관광정책 방향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에 의해 동북아 지역 관광교류 협력 에서는 개인의 관광 기회 감소와, 관광 관련 사업의 활동성 저하,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반감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광과 정부 정책,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로 는 비자정책, 관광관련 세제, 외국인에 대한 고용제한, 그리고 외국 투자 및 소유에 대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안전 및 안정과 관련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이 장애요인으로는 관광객 입국시 엄격한 입국심사 및 이에 따른 인권침해, 생물체와 관련된 통제, 방문객들에 반하는 범죄행위 등이 포함된다.

행정과 관련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의 장애 요인으로는 관광 관련 사업 및 개발에 대한 승인의 지연, 비자 발급의 지연, 관광정책에 대한 협의적 해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 및 문화와 관련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는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련된 기준이나 모니터링 시스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북아 교류협력의 관광부문 장애요인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제적 수준 격차와 한자문화권으로 문자를 통한 의사 소통은 유리하는 관광활동과 관련된 실질적 언어소통의 한계 그리고 한반도 남북문제에서 발생하는 북핵문제 등 국제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다.

라. 文化遺産

(1) 文化財 保護 및 不法去來 防止를 위한 東北亞 各國의 國內法 整備⁶

동북아의 실정에 적절한 문화재 보호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정이 동북아의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가 국내법적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북아간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약체결과 국내법 정비를 모니터하는 동북아문화지식인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국제협정의 체결 못지않게 각국의 문화재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도 이러한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현재, 중국의 경우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방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불법반입을 방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9년 규제 완화를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입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간의 각종 협의채널을 통하여 문화재 보호와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문화지식공동체와 정부간협의기구 등 동북아 문화의 공론장을 통한 사전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⁶ 박경하·홍윤기·김유환,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통일연구원, 2004), p. 191.

(2) 文化的 掠奪行爲 등으로 인한 國家間 問題의 解決⁷

동북아 국가 사이의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공동관리와 보호의 문제는 약탈문화재의 반환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지 않고는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는 지난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문화지식인 공동체를 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는 국가간 협상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의 기증 그리고 매입 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무상반환, 소장자의 기증, 매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동북아 국가간에 마련된 필요가 있다.

문화재 반출의 경우와 현재의 소유권 상황 등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반환의 방식을 마련하고 이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도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당사국가간에 따라 다소간 문제의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북아 문화협력의 큰 틀 안에서 일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국가별, 사안별 구체적 해결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동북아 국가간 이러한 문화재 반환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concerning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1965)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는 단지 그러한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될 것을 희망하고 권장한다는 의견교환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⁷ 위의 책, pp. 193-194.

마. 文化産業⁸

우선 대중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서는 쌍방향적 흐름이 어느 정도 정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문화제품의 수출입 상황을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잡힌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양국 모두에 대해서 심한 수입역조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호 간 교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합자나 합작방식을 이용한 교류를 증대함으로써 제품의 교류에서 생기는 불균형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중문화의 교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즉 비슷한 장르와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 가요의 교류가 지속되다 보면 이에 흥미 자체를 상실하여 교류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대중문화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소비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작권의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복제 CD, DVD, VCD 등으로 인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대중문화상품이 정당한 몫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매우 멀어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불법복제품이 판을 치던 때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이루

⁸ 양영균·문옥표·송도영,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통일연구원, 2004), pp. 218-220.

어진다. 아무리 상대방의 대중문화상품을 사주고 싶어도 그것이 소비 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와 내용의 제품을 생산하면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쌍방적 교류와 이해에 방점을 둔다면, 동북아 3국을 망라하여 일정한 방향의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기획·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복제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법복제품이나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노력에 비해 수익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교류를 지속하려는 움직임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主要論点

가. 東北亞의 正體性⁹

세계사 전체에서 역사의 반복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동아시아에 서는 120년 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1880년대의 동아시아를 살펴보면 지금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현재 중국은 제3 세계 사회주의 국가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청나라 말기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제국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유럽의 공동체 형성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지역적 공동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동시에, 중동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놓여 있다.

조공은 구 제국의 세계적 모습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두루 존재했다. 이 때 구 제국주의는 국민국가를 확장한 것이다. 그

⁹ 가리타니 고진, “동아시아의 근대와 탈근대,” 『한겨레신문』, 2005.6.1 (8면 : 대담 황종연).

래서 반드시 다른 국민국가를 지배할 필요가 없었다. 프랑스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지의 국민국가 형성을 (저해한 게 아니라) 촉발시켰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국주의는 각 국민국가들이 민족 자결을 주장하게 만들었다. 그 시기 한국,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때의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국민국가를 넘어선 경계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런 제국주의를 파괴하면서 현대의 국민 국가가 성립됐다.

유럽의 경우에는 제국의 이념이 유럽 통합의 이념 아래 계속됐다.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다가, 서로 분쟁하지 말자는 형태로 유럽연합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유럽은 ‘제국주의’가 아닌 ‘제국’을 형성했다. 나는 제국주의가 아닌 지역 공동체를 제국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동아시아에서 그런 제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1880년대에도 여러 선택의 길이 있었다.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결합했다. 일본은 현재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종류의 위협은 없다. 그 위협은 외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위협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동아시아 공동체, 또는 동아시아 제국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 國家의 利益¹⁰

‘동북아 협력과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한 제주 평화포럼 전체회의(2005.6.11)는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학자들의 시각을 조망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필

¹⁰ “막내린 제3차 제주평화포럼,” 『한겨레신문』, 2005.6.13.

요성을 한목소리로 얘기했으나, 미묘하고도 의미심장한 ‘차이’를 드러냈다.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달랐다. 한-중 역사 갈등의 극복을 강조하였으나 일·미·러는 ‘묵묵부답’이었다. 동북아 공동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중국은 동남아에 그리고 일본은 만주 등에 관심을 보였다.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둘러싼 각 나라의 주요 관심사와 손익계산이 어디서 만나고 어긋나는지를 보여준 현장이었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역사인식과 민족주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동북아 공동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의 문제”라며 다음 세대는 한국 또는 일본의 ‘국민’이 아니라 동북아의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족주의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정 연세대 교수도 “배타적 민족주의가 동북아에 팽배하지만, 유럽과 달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렌 샤오 중국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갈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역사에 발목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

한·중·일 3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은 각국의 민족주의가 더욱 강력한 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민족주의 충돌은 서로가 상대방을 타자화, 배제, 배척하는 적대적 관계인 동시에, 서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내연의 공범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범관계 속에서 3국의 민족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상호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각기 생존을 위한 민족주의 충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향후 한·중·일 3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필요성 증대에 따른 역내 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민족주의의 파고 속에서 영토분쟁 및 역

사 논쟁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3국간 협력 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간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핵심적 사안이라 할 것이다.¹¹

내셔널리즘의 문제는 각 국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 한국인이 일본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일본인이 한국 내셔널리즘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상대의 내셔널리즘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대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한일 작가회의에 참석한 뒤에 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한국을 비판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통해 일본에도 일본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이런 신뢰 속에서 ‘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하다.¹²

4. 研究範圍 및 接近方法

가. 韓·中·日 社會法制的 比較研究

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경제공동체가 정치체제에 의하여 강하게 규정됨에 비하여 문화공동체는 약하게 규정된다. 문화는 어느 사회의 생활양식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화공동체는 일정한 사회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 방안은 동북아의 사회구성을 규율하는 법과 제

¹¹ 박기홍·김대관,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p. 101.

¹² 가리타니 고진, “동아시아의 근대와 탈근대,” 『한겨레신문』, 2005.6.1 (8면 : 대담 황중연).

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권의 보장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사회적 법제의 주요한 과제에 속한다.

- 社會的 人權의 保障에 關한 研究課題
 - 布教·信仰·參拜의 自由
 - 學習·就業·相續·財産管理上 男女差別
 - 賣春·性賣買의 規制
 - 飲酒團束
 - 兒童虐待
- 外國人에 對한 社會保障에 關한 研究課題
 - 退職年金
 - 醫療保險
 - 災害補償
 - 商業的 保險[生命保險·損害保險]의 加入·脫退

동북아의 사회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다양하고 때로 이질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제로서 민법전을 갖추고 있다. 한·중·일의 사회도 기본적으로 그 민법전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의 민법은 그 계보와 적용범위 그리고 법적 중점이 같지 아니함으로써 때로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다.

동북아 3국에서는 민법분야의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랜 동안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법적 조치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不實擔保附債權의 처리를 위하여 민법에서 채권자 내지 담보권자의 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2003년에 민법개정¹³이 있었으며, 일본민법전의 글자를 口語體에서

¹³ 2003년에 개정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담보물권법의 중요한 개정내용은, 첫째로 一括競賣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裸地에 借當권을 설정한 후에 건축된 건물은 그 건축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借當권자는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일본 민법 제389조 제1항), 둘째

文語體로 바꾸고자 하고 있으며, 電子裝置를 통하여 다수의 집단적인 채권 및 유동집합동산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것의 양도담보의 설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시 1999년부터 대폭적인 민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¹⁴

- 外國人の 財産權 保障에 關한 研究課題
 - 不動産[土地·建物] 賣買
 - 財産의 登記·登錄
 - 銀行 預金·貸出
 - 國內法院에 民事訴訟 提起·遂行
- 知的財産權 保護에 關한 研究課題
 - 外國 著作權의 保護·外國人の 國內的 著作保護
 - 外國 特許權의 保護·外國人の 國內的 特許出願
 - 外國 商標權의 保護·外國人の 國內的 商標出願
 - 外國 實用新案權의 保護·外國人の 國內的 實用新案 出願

나. 韓·中·日 文化法制的 比較研究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저변을 형성하는 “문화” 영역과 관련된 각 국의 실정법제들은 다양하다. 사회와 문화의 접점에 위치하는 교육·청소년·양성평등·고용·스포츠 등에 관한 법제, 그리고 문화영역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언론출판·문화시설·문화산업·관광 등의 법제 그리고 국제 교류·협력 및 출입국 등에 관한 법제 등이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로는 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방법 이외에 收益執行制度를 신설하여 저당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 수입으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하였다(일본 민사집행법 제180조 2호).

¹⁴ 김상용, “중국에서의 민법전 제정작업의 경과와 민법전 초안내용의 검토,”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5.3), p. 8.

- 出入國管理·涉外私法에 관한 研究課題
 - 國籍 取得·拋棄
 - 難民 認定
 - 外國人과 內國人的 婚姻·離婚
- 集團會合에 관한 研究課題
 - 國際會議 開催
 - 國際競技 開催
- 教育·學歷에 관한 研究課題
 - 義務教育
 - 外國人的 入學·修業
 - 外國學歷의 國內的 認定
 - 教科書 檢定·通關
- 就業·勤勞에 관한 研究課題
 - 教員·研究員 就業
 - 外國人 留學生의 勤勞
 - 外國取得 資格·技能의 國內的 認定
- 文化產業에 관한 研究課題
 - 外國人的 國內的 出版
 - 外國人的 國內的 公演
 - 外國人的 國內的 放送出演
 - 外國 放送의 國內的 送出
 - 外國 出版物의 輸入·流通
 - 外國 VIDEO·音盤의 輸入·流通
- 文化財 保護에 관한 研究課題
 - 他國 文化財의 返還
 - 文化財의 國際的 去來
 - 文化財 密去來의 規制

다. 韓·中·日 法律文化的 比較研究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 방안(I)에서 논구한 바와 같이, 문화는 법적 논리보다 경험과 역사에 의하여 발전한다. 사회와 문화에 관한 한·중·일의 실정법들은 법적 논리를 표명한다. 그러나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감정·법 의식 그리고 관습 등을 포함하는 법률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바가 크다.

한·중·일 3국은 그 언어생활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한자, 종래의 사상과 이념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던 유교 그리고 동북아 전역에 걸쳐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일과 놀이 그리고 무속 등을 포함하는 민속 등에서 아직도 다양한 공감대를 유지한다. 전통문화 내지 생활 문화의 유사성과 동질성은 여전히 법률문화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친다. 법적 논리를 우선하는 실정법이 담보할 수 없는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방안이 긴요하다.

II

韓國法制的 理解와 課題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국내법제의 검토대상으로 이하에서는 현재 동북아국가 상호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학술 및 노동, 문화, 국제외무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부문별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教育學術 및 勞動 分野

가. 教育

교육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국민 중에서도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외국인이 기본적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외국인은 국민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외국인의 권리까지 실정법상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교육 기본권을 단순히 전통적인 사회권 내지 생존권으로서만 파악하여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권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부정될 것이며, 우리 헌법학에서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⁵ 그러나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해서는, 문헌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⁶ 따라서 인간적 성장발달권으로서의 학습권을 그 중핵으로 하는 포괄적인 교육기본권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국민만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그 권리주체성은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¹⁵ 권영성, 『헌법학원론』(박영사, 2001), p. 613.

¹⁶ 김철수 교수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외국인에게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권영성 교수는 사회적 기본권은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에게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환경권(§ 35)이라든가 건강권(§ 36)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권리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생존권 또는 사회권이라고 하여 무조건 부인될 것은 아니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여 획일적으로 부인될 것도 아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나아가 포괄적인 교육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기본권의 인격권성, 자유권성, 평등권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생존권성이나 청구권성은 필요한 범위로 한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헌법 제3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모든 인간”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국적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1) 敎科書 檢定 制度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면 한 나라의 교육철학과 문화 수준만이 아니라 미래 변동 방향까지 추론할 수 있다. 교과서는 교수·학습 과정의 실제적인 준거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를 혁신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과의 모든 이론적 내용체계를 망라하여 학생이 암기토록 하는 성전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내용을 담아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안내하는 자료집이 되어야 한다.¹⁸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국정), 민간 저작자가 개발한 도서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2종(검정)으로 나뉘어진다. 2종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검정심사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선별한 도서에 한정된다. 검정 제도(textbook authorization system)는 도서 발행의 자유 경쟁을 전제로 하면서도 질적 수준이 높

¹⁷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6) 참조.

¹⁸ 김정호, 『2종 교과용도서 검정업무』 <<http://www.kice.re.kr/data/organ/ki4/jungho.html>>.

은 도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시장 진입의 자유가 원칙이지만, 교과서와 같은 공공재는 양질의 상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합치된다. 검정 제도의 취지는 교과서 시장에서 양질의 상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1종도서의 유일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 발행제에 따른 악화에 의한 양화의 구축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2) 學校入學 等

외국인의 대학 입학은 정원외로 대학 자체의 전형일정과 기준에 의하여 선발(특별전형)되고 초중등학교 편입학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의하여 선발하되, 학년 배정은 학교의 심사에 의하여 정해지나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보통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전형을 같이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이화여대-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최소 해외 수학기간 및 체류기간 - 제한 없음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도 내국인 학교와 똑같은 설치기준을 적용받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우선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 (유치원, 초·중·고·대학)이나 제주(대학)에 설치되는 외국인 학교도 국내 일반학교처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런 경우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외국인학교도 도시 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 이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다.

현재 형질변경 허용 면적은 관리·농림·공업지역은 3만㎡ 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1만㎡ 미만으로 각각 제한되어 있다.¹⁹

¹⁹ 『한국경제신문』, 2005년 8월 8일.

나. 學 術

(1) 海外 優秀人力の 誘致·活用 擴大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및 초청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원)이 국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의 우수교수 및 연구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우수 과학자를 초청하여 국내 연구개발 활동 등에 활용한다.

또한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Science Card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Science Card를 발급하고, 출입국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²⁰

(2) 國際 共同研究 事業의 戰略的 推進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국제 공동연구 부문의 강화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별·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공동연구 비율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외국 연구자(기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또는 총괄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科學技術의 國際交流 擴大

과학기술 정보 수집, 국제 과학기술협력, 인적교류, 공동연구 등 해외에서의 국가전략분야 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외사무소, 교육관, 재외공관, 무역관, 과학협력센터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 과학관 파견을 확대하고, 첨단 과학기술 정보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한다.

²⁰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부문에서 면허 전문직 인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전문직 인력양성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하는 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교육인적자원부, 2001. 12.), p. 57 참조.

다. 勞動分野

(1) 外國人의 國內就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²¹,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의 해고·퇴직시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2) 外國人의 勞組設立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 가입과 설립 등이 허용되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장래에 근로조건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³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노동부 관계자).

(3) 關聯 法令 等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선박직원법시행규칙²²

²¹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7),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등

²²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7호) : 외국인 해기사 이수교육·교육기관지정 구체화 :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 대해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사항을 선박직원법에 수용함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의 해기사 시험·교육 이수절차 및 승무자격증 세부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 외국인관련조례

-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
-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 광주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 고시

- 장기체류외국인및재외국민에대한지역가입자적용기준고시²³

2. 文化分野

가. 博物館等의 設立

외국인이 국내에 박물관 혹은 미술관 건립시 외국인이라고 해서 받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상호 평등 원칙에 의하여 상대방 국가가 진입제한을 두면 우리나라도 동일한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다(예: 싱가포르)

이러한 사항은 현재 WTO 도하아젠다(DDA)²⁴에서 추진 중에 있으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²³ 제3호나목(1)자격취득시기 : 국내거소신고등록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취득시기 : 국내에 3월이상 거주한 때(3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2002. 7.부터 시행.

며, 우리나라의 협상 주체는 외교통상부 및 재정경제부이다.

나. 外國人 宗教人의 國內活動 許容 等

외국인 종교인이 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 승인, 허가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종교국가로 종교 활동이라고 하여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 선·포교의 자유로 대별하고, ‘종교의 기능’을 내적기능과 외적기능으로 나눌 때에 신앙인의 영적성장과 삶의 통일을 추구하는 내적기능은 신앙의 자유차원에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나, 선·포교 등 사회적인 작용을 하는 외적기능은 특별한 규제없이 일반적인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종교시설(이슬람 사원 등)을 설치할 경우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건물 건축시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종교인이 한국내 종교활동을 승인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교단체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파송명령서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지원 관련 서류

단,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순수종교 단체를 빙자한 사이버 종교단체나 그 종교인, 국가이념에 상충되는 경우,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관련 종교인은 사증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²⁴ 〈<http://wtodda.net>〉 참조.

다. 東北亞 文化交流 活性化 推進 方案

(1) 交流對象 擴大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는 교류 수단은 좀 더 구체적인 협의의 문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작품, 학술교류, 교육연계 등으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가능성은 이외의 문화재나 역사자료, 역사서, 출판, 순수 예술분야 등 다양한 활로를 통해서 개발될 전망이다.

(2) 人的交流 活性化

문화교류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기반하고 있는 경제교류와 달리 인적교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을 포함한 청소년, 관광사업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연수프로그램’이나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각종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을 통하여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民間交流 活性化

민간의 순수한 예술 교류 혹은 상업적인 의도만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추진은 어렵고, 정부가 유일한 교류주체가 될 수도 없으므로 양자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교류 인식의 공감을 확보해야 하고 미비한 교류설비 인프라를 확충하여 나아가 공동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 國內外 機關·團體의 活動 現況과 問題點

(1) 國內

(가) 政府關聯 機關

국제교류의 실제 내용상 기관별 특색을 찾기 어렵고, 사업의 규모와 양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질적인 향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같은 내용의 교류(예:기관방문 등)가 반복되고 있는 바,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學會 및 研究所

개별 학회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미비하며 특히 민간연구소(회)와 대학 부설 연구소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학회는 재정상태가 열악하며 정부의 지원에 따라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일회성 행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한 가지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 市民團體 및 其他

인접국가간 역사 문제와 관련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혹은 학계가 연대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하여, 이에 대한 방안은 강구되고 있지 않은 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國外

(가) 中國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소수 연구기관들의 경우 활동상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교류가 일부의 학자,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바, 중국 관련 교류에 있어서 국내 유관 기관간의 사전 정보교류체제가 필요하다.

(나) 日本

국내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정보 교환 체계가 미비하고, 국내외 학계 연구성과의 정보교류 및 결과물 공유 체제가 부재하다.

마. 向後의 課題

(1) 國內 關聯 機關 네트워크(network) 構築

- 정부관련 기관, 학회·연구소,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조직망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 공동의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사업현황 공개 및 간행물 정보 교환
- 유관기관간 자료교환 체제 구축을 통해 개발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

(2) 國內外 機關·團體間의 情報 交換 시스템(system) 마련(準備)

- 해외 관련 기관의 종합 정보망 구축
- 외국소재 연구기관을 통합 관리할 국내 조직 필요
- 외국 연구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필요

(3) 有事時 業務 擔當 機關의 重複事業 止揚 및 專門性 提高

- 유사 업무 담당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유사 업무 담당자(예:국제교류)간의 실무자 협의회 구성

3. 文化産業分野

무체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법제 현

항을 파악하기로 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제3조).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1987년 7월 1일 가입하여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TO의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 이행을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급보호의 범위를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단체 명의저작물 등 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까지로 제한하여 국내 저작권자의 보호범위와 균형을 맞추었다(부칙 제3조), 한편,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

첫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행위책임불소급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복저작물을 복제, 번역, 각색, 기타 이용한 행위도 이 법 시행일 전까지만 완료되면 침해 행위가 아니다.

둘째로,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회복저작물의 리프린트물의 경우에는 1996년 말까지 책임없이 배포할 수 있다. 복사판 원서의 경우에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

셋째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수록된 판매용 음

반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당해 판매용 음반을 대여코자 하는 사람은 당해 음반과 관련한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렇게 조약에 의해서 보도되는 저작물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우리나라 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그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의 예외는 우리나라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과 그야말로 한 치의 차별 없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3조는 그 외국인의 국적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거나 우리보다 약한 보호를 하는 때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보호의 차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베른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은 무국적자도 상호주의 적용 없이 내국민과 차별 없이 보호를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내에 상거소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의 당사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의 국적 국가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과 차별 없이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호주의도 적용할 수 없다. 후자에 대해서는 협약이 인정하 내국민 대우 원칙의 4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국민과 차별 없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4가지 예외를 적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우리나라가 협약에서 정하는 이상의 보호를 하고, 그러한 보호를 동맹국에서도 보호를 하는 때에는 양 당사국 사이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후 50년간 보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의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후 70년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경우, 현재 보호 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규정한 유럽 국가나 미국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70년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50년을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70년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보호 기간을 비교하여 동맹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협약상 내국민 대우의 예외에 해당한다.

요컨대, 외국저작물에 대하여 협약이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4. 靑少年·體育分野

국제체육활동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이다. 체육외교로 대변되는 다양한 국제체육활동은 문화·정치·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체육계는 서구중심의 지배적 구조 속에 스포츠에서의 인본주의와 환경보전의 추세로 반도핑과 환경친화를 강조하고, 글로벌 체제에 부합되는 상업화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체육외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으로 국가간·국내올림픽 위원회(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 NOC)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국제체육기구 임원으로의 진출 등을 도모 하고 있다. 또한 국제체육활동증진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파견과 국내유치

개최, 국제회의 참석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에서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홍보관에서는 일부 업무로서 관광·체육협력에 관한 일반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국제행사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부문 조직은 체육외교에 관한 정책 입안과 지원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외교 실무는 민간부문(ex. KOC, 대한체육회)에서 활성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5. 國際·外務分野

가. 國際會議 開催 關聯

(1) 國際會議의 概觀

국제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와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있다. 정기적인 경우 그 주기는 보통 반년, 1년, 2년, 3년, 4년, 5년 등 다양하며, 대개 대규모 회의는 그 개최 주기가 긴 편이다. 회의개최지의 결정은 국제기구에 따라 다르나 전 전회의 회의 개최시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회의의 개최국으로서 입후보하려면, 1년 주기의 회의는 2년 이상 전에, 3년 주기의 회의는 6년 이상 전에 회의 개최 입후보를 표명해야 한다. 물론 입후보 전에 여러 각도에서 회의 개최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가) 立候補의 條件

입후보하기 전에 주최국으로서 개최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야 할 요소의 주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開催規模

과거의 회의실적과 회의테마 수에 의해, 참가자·동반자의 수를 추정하고, 개최도시나 개최시기 등도 고려하여 회의규모를 예측한다.

2) 財務

금회의 추정규모와 과거의 예산을 참고로 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한다. 수지의 균형을 보아 부족자금의 조달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3) 會期·始期

총래의 회기·시기를 대폭으로 변경하지 않고, 본부의 의향이나 전 회의 회의개최에 입각하여, 회의의 주제나 개최국의 특수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 회기·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는 기후적으로는 봄, 가을이 가장 좋으나 관광성수기와 중복되어 숙박 등의 예약을 하기 어렵고, 원만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會議場

회의규모와 회의형태에 상응하는 회의장의 선정만이 아니라, 회의장, 전시장, 호텔, 기타 관련시설의 기능적인 배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5) 其他

그 밖에 외국인 대상 시설의 확보, 출입국에 관한 문제점의 유무, 정부관계자, 지방자치 관계자 등의 참가의 가능성, 회의장에서의 접근에 관한 문제의 유무, 공항, 철도, 항만, 자동차, 도로 등의 정비상황의 점검, 기타 특수사정(시설방문 및 관련행사 전반)의 점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초조사에 입각해서 입후보를 검토할 때는 민간의 회의 전

문업체인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 호텔, 여행사, 회의장 등과 의견교환을 하며 추진하는 편이 좋다. 수용이 결정되고 나서, 이들 전문기업에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立候補 表明

개최국의 결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전회의 회의 중에 행해지는 이사회나 임원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입후보 취지서와 기타 필요서류 등을 본부의 임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의지를 표시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개최국의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관련학회장 등의 명의로 초청장을 송부하는 것도 매우 유효하다. 입후보 취지서의 형식이나 형태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 개최의 의의를 비롯하여 회의시설을 포함한 수용체제가 완비되어 있다는 것
- 관광지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문화유산, 자연경관, 쇼핑 등)
- 정치정세가 안정되어 있으며, 기후 등 회의개최 장소로서의 쾌적성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정식적인 제출방법이나 수속은 본부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경우, 개최국으로서의 적합한 장점을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각종 한국소개 인쇄물·필름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²⁵

(다) 誘致活動

²⁵ 16mm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멀티비전, 인쇄물(회의장 및 전시장, 관광), 팸플릿, 호텔안내 리스트

한국 외에 경쟁국이 없고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에서의 개최가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수국이 입후보할 경우가 많아 그 수는 10개국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 유치경쟁에서 승리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된다면 유효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본부임원이나 책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회의시설을 비롯한 수용능력, 관광매력 등을 홍보한다.
- 본부임원에게 정부관계자, 도지사, 시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관련학회 회장 등의 초청장을 송부한다.
- 한국소개의 팸플렛류, 호텔, 회의장, 전시장 등의 시설을 소개한다.(충실한 회의 제시설의 홍보)
- 한국의 뛰어난 주거환경을 홍보한다.
- 편리한 교통편을 홍보한다.
- 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
 - “한국의 밤” 개최
 - 회의장에서의 한국홍보 코너 및 안내상담실(Hospitality Suite)의 설치
 - 한국홍보영화 및 비디오의 상영
 - 한국으로의 회의유치 환영연설 등

(라) 準備委員會(事務局)의 設置

국내관계자가 입후보의 의사를 결정하고 정식으로 입후보함에 즈음하여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입후보의결과 개최가 결정되면 준비위원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직위원회”로 개칭되며 동시에 개최준비를 위한 사무국이 설치된다. 특수한 경우나 대규모로 사무업무가 과중한 경우, 그 밖의 이유로 사무국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회의 전문용역업체(PCO)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사무국은 실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

문에, 사무국장으로는 조직위원장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빠른 시기에 조직위원회 운영요강과 회의규정 등을 작성해 넣는 것이 좋다.

(2) 國際會議 誘致·開催 支援申請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3) 申請書 處理節次

신청서 작성→접수(처리기관 : 국제회의 전담조직)→검토→적합→지원→사업시행→부적합→통보

(4) 支援結果報告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개최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誘致支援 프로그램(program)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으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가) 國際會議 誘致(韓國觀光公社 事業內容 中 國際會議 誘致支援)

- 유치예정 단체대상 유치절차 자문, 유치제안서 작성, 해외 프리젠테이션 지원, 국제기구인사 방한답사 및 지원 등
- 개최예정 국제회의의 운영 자문, 해외홍보, 회의홍보물 제작 지원, 한국관광 홍보물 제공

(나) 海外弘報

- 광고 및 기사화, 인터넷 홍보
- 컨벤션관련 국제회의 및 전시박람회 참가

(다) 國際會議 誘致 및 開催에 關한 教育 프로그램(program) 運營

(라) 資料 蒐集 및 情報 提供

- 국제행사 개최계획 및 실적 조사, 국제회의 유치의향 조사
- 컨벤션캘린더, 한국 국제회의 산업현황, 컨벤션 시설 가이드 등 국제회의 산업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국제회의 정보제공

나. 出入國管理 關聯

(1) 査證制度

(가) 査證의 概念

사증이란 어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재외공관 영사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나) 査證의 內容

사증의 내용에는 “사증의 종류”, “체류기간”, “체류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다.

1) 査證의 種類

가) 單數査證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단, 협정에서 정한 경우는 그 협정상
상의 기간)

나) 複數査證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에 의한 사증은 3년간 유효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동안 유효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
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동안 유효

2) 滯留期間

사증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며, 크게 90일, 6개월, 1년, 2년, 3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3) 滯留資格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갖가지 활동을 체계있게
유형화한 것으로, 외국인인 체류자격에 따라 그의 법적 신분이나 지
위 또는 활동의 범위가 달라지며, 총 35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2) 査證과 滯留資格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기본제도로써 체
류자격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 적
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 총 35개로 분류되어 있
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 체류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체류자격은 사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증보다 넓은 개념으로 즉, 사증면제협정(B-1)이나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록 사증은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류자격은 사증 면제 협정(B-1) 또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²⁶

(3) 外國人의 無査證 入國

우리나라는 외국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78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49개 국가에 대하여는 국익차원에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하여 협정상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체류할 수 있으며, 무사증입국허가 대상국가 국민도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아 체류할 수 있다.²⁷

그 외 국가는 우리나라 입국시 사증을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으로 가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국가의 사증과 연결항공편이 확인되면 30일간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위 5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본국으로 귀국시에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제주도 지역은 “제주도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22개국)를 제외한 다른 국가 국민은 30일의 범위

²⁶ 체류자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를 참조.

²⁷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와 무사증입국허가 대상국가 현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참조.

내에서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며, 무사증입국불허국가 국민이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

(4) 外國人 登錄制度 等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²⁸ 이 때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6조),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

(5) 滯留期間 延長 等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

(6) 歸 化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적법 제5조)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²⁸ 등록사항: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근무처·직위, 본국주소·국내체류지, 체류자격·체류기간 등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재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그 밖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국적법 제7조).

III

中國法制的 理解와 課題

1. 文化交流 關聯 法制的 構造와 實態

가. 概要

중국의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외적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중국의 법제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도 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지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배경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법제를 보면, 다양한 방면에 대한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는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에의 중국문물의 선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른바 중국 내에서의 ‘한류’의 영향에 대한 대응방향을 두고 중국의 문화부문에 대한 관심과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른바 ‘東北工程’ 사업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제도화하는 현실을 읽기에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큰 틀에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과 태도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중국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는 어느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내적 문화진흥과 발전, 국제적 문화교류와 협력 부문에 망라하여 있다. 여기서 이른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특별부문을 위한 법제도화의 방향을 확실하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먼저 중국의 체제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국

은 ‘당-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당이 국가를 영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산당에서의 논의와 결의를 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국 헌법의 개정 절차를 보면, 중국 헌법에 헌법개정절차를 위한 형식적 절차적 단계를 잘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공산당에서의 사전 논의와 결정에 의해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된 후 헌법상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개정절차를 사후에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의 모든 주요한 국가정책은 바로 당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당 차원에서의 결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한 그 정책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한편 중국은 그러한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체제를 공식화하면서도 최근 이른바 법치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의 정비, 즉 새로이 형성되는 사안에 대한 법령의 제정, 기존법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내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제도화의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점에서 2001년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에의 가입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 동참과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자세를 보여준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기반을 다지는 데에 있어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규모의 면적과 인구로 구성되어 특정한 문화 협력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보인다. 그러나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문화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특성화된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점차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의 문화교류협력관련 법제도를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일부 나타나는 비이사아적인 비밀주의는 중국의 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어느 특정 문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그 불가사유를 알려면, 그 근거에 대한 비밀주의에 의해 미래적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당차원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비공개에다가 개인이 이에 대한 접근 그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다음의 중국의 문화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경우에 체계적인 중국 정부의 문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의 자료현황은 중국정부의 공식문건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법령체계상 미분화현상은 중국의 당해 사안에 대한 법제도화를 살펴보는 데에 애로를 가져온다. 이를 감안하여 다음의 중국의 문화교류협력의 법제도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²⁹

나. 中國의 世界文化遺産 登載 關聯 規程

세계유산의 평정 표준의 주요 근거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 공약』의 제1조, 제2조의 규정이 있다. 유산항목은 『世界遺産名錄』에 들려고 한다면 엄격한 심사와 허가 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해마다 한번씩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는 그전에 위원회가 위탁한 전문가가 각국에서 추천한 유산과 유지를 현지 조사한 후에 제출 하는 평가보고를 근거로 하여 명단을 들기 위하여 신청한 유산 항목을 심사하고 허가한다.

²⁹ 아래의 자료는 중국의 문화교류협력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구체적인 분석작업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각국에서 추천한 유산과 유지의 조사는 주로 위원회와 국제고적유지 이사회(ICOMOS) 및 세계보호연맹(IUCN)이 전문가를 조직하여 진행 한다. 국제고적유지이사회(ICOMOS)는 본부가 파리에 있고 1965년 창립해서 유일한 문화유산의 보호 이론, 방법과 과학기술의 운용과 확대를 종사하는 비정부의 국제기구이다. 80개 국가회원과 4,500여 개 개인회원이 있다. 세계보호연맹(IUCN)은 본부가 제네바에 있고 1948년에 창립해서 원명이 국제자연과 자연자원 보호연맹이 있다. 그의 주지는 인류가 자연자원에 대하여 보호와 영원한 이용을 촉진하고 격려한다. 성원은 120개 국가의 기구, 민간단체, 과학 연구와 보호 기구를 포함한다.

세계유산의 식별과 신고 절차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의 문서에 따라 세계유산의 식별과 신고는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국가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 공약』을 서명하거나 본국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를 보증해서 계약국이 된다.
- ② 모든 계약국은 본국에서 뛰어난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와 자연유산의 예비명단을 열거한다.
- ③ 그러한 후에 예비명단에서 『世界遺産名泉』에 들려고 한다는 유산을 선별한다.
- ④ 기입한 추천서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에 보낸다.
- 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는 추천서를 검사 후에 국제자연과 자연자원 보호연맹(IUCN)과 국제고적유지이사회(ICOMOS)에 평가하고 심사하러 보낸다.
- ⑥ 전문가는 유산의 보호와 관리상황을 현장까지 평가한다. 문화와 자연유산의 표준에 따라 국제자연과 자연자원 보호연맹(IUCN)과 국제고적유지이사회(ICOMOS)는 추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심사한다.
- ⑦ 국제자연과 자연자원 보호연맹(IUCN)과 국제고적유지이사회(ICOMOS)는 평가보고를 만들어 낸다.

- ⑧ 세계유산위원회 주석단의 7명 성원은 평가보고를 심사하고 나서 위원회에 추천을 만들어 낸다.
- ⑨ 21명 성원을 구성한 세계유산위원회는 최종적인 당선, 연기 아니면 도태의 결정을 낸다.

중국은 2005년에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의 제정에 의하여 전면적인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과학기술의 함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관리정보, 동태적인 관리체계와 경보체계 및 세계문화유산의 보호 전문가 자문제도 등의 수단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세계 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다. 文化交流協力 關聯 機構 및 組織

(1) 國際合作事務局

(가) 국제합작사무국(원래 국제합작부라고 함)은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이하 센터라고 함)가 국제 교류와 합작을 진행하는 주요 부서이다.

(나) 국제합작사무국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센터에 관련 외사 規章제도와 국제 교류 및 합작계획의 제정
- 2) 센터의 국제 합작 항목 그리고 센터가 개최하는 각종 양자 간 이고 다자 국제회의의 조직, 관리와 협조
- 3) 정책의 연구, 자문에 관련 고찰, 조사와 연구 등의 국제교류활동 그리고 해외에서 방문하러 온 단체와 인원의 초청과 접대 사정의 조직, 관리와 협조
- 4) 센터 기관과 직속 단위 인원의 방문 항목의 심사 비준과 여권 비자 수속 등의 외사업무의 처리
- 5) 센터가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과의 학술 교류 사무의 처리

(다) 下設機構項目處, 聯絡處와 綜合處

(2)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 ① 教育部는 教育문화산업과 언어문자 작업을 주관하는 국무원의 조성 부서이다.
- ② 教育부의 주요 직능은 교육 작업의 방침과 정책을 연구하여 계획을 세우고 교육에 관련 법률, 법규 등의 초안을 제정한다.

(3) 國際合作과 交流司

국제합작과 交流司는 교육의 국제합작과 교류에 책임을 지고 出國 유학과 來華 유학 작업의 관리를 총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대외 원조와 외원 항목을 관리하고 대외 중국어 교육 작업을 계획하여 지도하고 외국 주재 대사관(영사관)의 교육부의 업무 작업을 지도하고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과의 교육 교류작업을 전개한다.

라. 中國의 對外, 대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대만(臺灣) 交流 解除³⁰

(1) 대외문화교류활동의 심사비준 권한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대외문화교류활동의 심사비준 권한

(가) 문화부와 외교부가 회동하여 국무원에 심사비준을 신청하는 사항:

- 1) 정부 간의 문화 합작 협정의 체결
- 2) 현직 正, 副 省(部)급 인원이 문화예술단을 인솔하고 出國 방문. 외국 현직 正 부급 인원이 문화예술단을 인솔하고 중국으로 방문함.
- 3) 出國하여 참가하거나 중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방면의 중대

³⁰ <<http://www.xf.gov.cn/zhuanti/souce/index.html>>.

한 국제회의, 국제경기, 국제 藝術節 또는 기타 중대한 국제적, 區域적 문화 예술 활동

- 4) 출국하거나 중국으로 들어와서 열리는 전시품이 120건 이상 또는 전시품 중에 1급 문화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문화재 전람
- 5) 중요한 정부 간이나 비정부 간의 문화예술영역의 국제적, 區域적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함
- 6) 수교하지 않는 국가와의 중요한 문화 예술단, 個人往來
- 7) 다변적 영역 중에 중대한 정치 민감 문제 또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문화교류활동
- 8) 문화부는 국무원에 심사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나) 문화부가 심사, 비준하는 사항

- 1) 정부 간의 문화교류 年度 집행 또는 항목 계획의 체결
- 2) 출국하는 司, 局급 이하(司, 局급이 포함됨), 중국으로 들어오는 副部급 이하(副部급이 포함됨)의 인원들과 그들이 인솔하는 문화 예술 대표단
- 3) 정부간 또는 민간 경로를 통하여 출국하거나 중국으로 들어와서 하는 無償, 有償 또는 상업적 예술 공연과 예술전람
- 4) 출국하거나 중국으로 들어와서 열리는 전시품이 120건 이상 또는 전시품 중에 1급 문화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문화재 전람
- 5) 국무원에 심사비준을 신청하거나 각 지역, 각 부서가 심사, 비준하는 것을 규정하고 문화부서에 등록하는 것 외에 문화 예술단과 개인의 출국 방문, 출국 고찰
- 6) 문화 예술단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하는 지역별 방문, 고찰, 강학 또는 對口 학술 교류
- 7) 문화 예술 방면의 일반적 조직, 지역적 조직에 가입하거나 탈

퇴함; 문화 예술 방면의 일반적 국제회의, 국제경기, 국제 藝術節, 국제도서전시회 등의 개최, 개최의 참여 또는 참가

- 8) 외국에서 中國周, 中國日, 박람회 등 활동을 개최하거나 개최에 참여하는 것 중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외국이 홍콩, 마카오 지역과 중국 대륙에서 상기와 동일한 활동을 개최하거나 개최에 참여하거나 참가하는 문화 예술 사항
- 9)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얻는 것과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에 수권하여 심사비준을 얻는 것 이외에 홍콩, 마카오와 문화 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 10) 수교하지 않는 국가와의 일반적 문화 예술단, 개인 간 그리고 예술 전시 방면의 교류를 문화부에서 외교부와 회동하여 심사 비준을 함
- 11) 문화부가 심사비준을 하여야 하는 기타 사항

(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 비준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사항

- 1) 정부 간의 문화 합작 연도 집행 계획에 넣는 본 지역의 출국과 입국 항목의 실시
- 2) 국가 또는 문화부가 비준한 항목 혹은 정부 간의 문화 합작 연도 집행 계획 항목 그리고 관련 국가 및 지역의 기구, 단체상과 체결한 비망록, 회의 요록 또는 실시 협의의 집행
- 3) 본 지역의 정부 당국 또는 민간 기구, 단체와 외국 및 홍콩, 마카오 지역의 對口 기구, 단체 기초 의도적 교류 합작 협의가 홍콩, 마카오 지역의 문화 방면의 정부측 교류에 속하면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하여야 함
- 4) 본 지역에서 정부 간 또는 민간 경로를 통해서 출국하여 하는 강학, 對口 학술 교류 사정
- 5) 정부 간 또는 민간 경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와서 본 지역

의 범위에서 하는 우호방문, 고찰, 강학, 對口 학술교류

- 6) 友好省, 州와 友好市, 縣 간의 문화 예술 교류
- 7) 비준을 받은 연도 계획 항목 중 중국으로 들어오는 40명 이하의 외국 예술단과 전시품이 100건 이내의 외국 예술 전람이 단지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공연하거나 전시함; 본 지역의 서커스 이외의 예술 공연단의 출국 공연과 전시품이 100건 이내의 출국 예술 전람; 본 지역에서 아프리카 주에 나가서 예술 공연단의 공연과 예술 전람. 계획 이외의 상기 항목에 대하여 문화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을 필요가 있다.
- 8)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개최하는 체계적 집중 관리가 필요한 관련 문화 예술 공연, 전람 등 활동 사항

(라) 중앙과 국가 기관 각 부위원외, 각 직속기구, 군대의 각 대 단위, 각 인민 단체가 심사 비준을 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사항

- 1) 정부 간의 문화 합작 연도 집행 계획 내에 넣는 본부서의 출국 과 來華 항목의 실시
- 2) 국무원 또는 문화부가 비준한 항목 혹은 정부 간의 문화 합작 연도 집행 계획 내에 넣는 항목 그리고 관련 국가 및 지역의 기구, 단체상과 체결한 비망록, 회의 요록 또는 실시 협의의 집행
- 3) 본 지역의 정부 당국 또는 민간 기구, 단체와 외국 및 홍콩, 마카오 지역의 對口 기구, 단체 기초 의도적 교류 합작 협의
- 4) 본 지역에서 정부 간 또는 민간 경로를 통해서 출국하여 하는 강학, 對口 학술 교류 사정
- 5) 정부간 또는 민간 경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와서 본 지역의 범위에서 하는 우호 방문, 고찰, 강학, 對口 학술교류

(마)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은 홍콩, 마카오 지역과의 문화교류활동이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시비준을 받을 사항시 제외하고 신화사 홍콩 지사, 신화사 마카오 지사가 문화부를 협조하여 체계 집중 관리를 함;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의 인민정부가 문화부의 위탁을 받고 심사, 비준을 하는 홍콩, 마카오 지역과의 문화 교류 연도 계획은 사전에 신화사 홍콩 지사, 신화사 마카오 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함.

(바) 중국 국경지대의 성, 자치구와 이웃 나라와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전문적 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함

(2) 예술 공연 단체가 출국하여 공연하는 경우 어떻게 서면으로 상급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가?

예술 공연 단체의 출국 공연은 행정 종속 관계에 따라 省(區, 市), 地, 市, 州의 文化局 또는 省(區, 市)의 직속 주관부서가 의견을 제출하고 省(區, 市)文化廳에 보고하여 審查를 받아야 한다. 省(區, 市)文化廳이 문화부 대외문화교류심사비준권한구별의 규정에 따라 공연 단체의 규모와 단체를 인솔하는 영도자의 직무(현직 또는 원래 담당 한 직무)와 나가는 국가(地區)와 예술 종류를 구별하고 심사 비준권한을 가진 기관(국무원, 문화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에 출국 수속을 한다.

예술 공연 단체가 출국하여 공연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급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을 내용은 공연 단체의 名稱, 인원수, 명단, 시간, 연극 목록, 공연 횟수와 공연 성격 그리고 국제 왕복 여행비, 운송비와 숙식비, 교통비의 예산 승낙, 초청장(중국어, 외국어) 또는 의향서, 초청자의 姓名, 소재지 국가(지구), 단위, 만약 有償적 또는 상업적 공연인 경우 상기내용 이외에 국(경)외 합작 측의 자금 신용 조건과

개최 부담 능력의 배경상황 그리고 공연마다 비용 지불 기준과 계약 위반에 의한 클레임 등 협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문화 예술단과 개인이 정부 또는 민간 경로를 통하여 출국해서 방문, 고찰, 강학, 對口학술교류를 하는 경우 어떠한 수속을 하여야 하는가?

문화 예술단과 개인의 출국 방문, 고찰, 강학, 대구학술교류는 성(구, 시)문화청의 심의를 받거나 심사비준권한을 가진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국 방문, 고찰인 경우 문화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출국 강학, 대구 학술 교류인 경우 성(구, 시)의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심사비준의 내용은 (1) 상대방의 초청서(중국어, 외국어), (2) 관련 국제 왕복 여행비, 숙식비, 교통비의 승낙 상황, (3) 출국 기간, 나가는 국가(지구)와 접대 단위. 문화 예술단과 개인의 출국 고찰인 경우 문화부에 고찰 항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문화재 展覽단이 출국하여 전람회를 개최하는 유형이 몇 개 있는가, 어떠한 수속을 하여야 하는가?

문화재 전람단의 출국 전람은 2가지 유형이 있다. 商業型和 文化交流型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문화재 전람단이 출국(경)하여 문화재 전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사비준을 신청할 단위가 반드시 전람의 허가를 받은 측과 정식적으로 의도적 협의를 한 다음에 전시할 문화재의 명부와 그의 카드가 신청 보고서와 같이 성(구, 시)의 문화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성(구, 시)의 문화재 감정 조직이 문화재에 대하여 급별 감정과 금액 보증 감정을 하고 전시할 문화재의 명부를 확인한 다음에 국가 文化財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세관은 携帶하는 문화재, 서화, 공예품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문화재(서화, 공예품)의 출국인 경우 국가 문화재국이 지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문화재 행정 관리부서가 설립한 문화재 출국 감정 조직이 그를 감정한다. 문화재(서화, 공예품)의 출국 감정 기준은 국가 문화재국이 제정한다.

감정을 받고 출국 허가를 받은 문화재(서화, 공예품)는 감정 부서로부터 문화재(서화, 공예품) 출국 허가증을 받는다. 세관은 문화재(서화, 공예품)의 출국 허가증과 국가 관련 검사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출국하게 한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문화재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감정을 받고 출국하여서는 안되면 문화재 행정관리부서가 등록하여 반환하거나 구입하고, 필요로 할 때 징수할 수 있다.

(6) 과학 기술 人員은 출국 고찰, 방문하거나 국제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고 비준을 받는가?

일반 과학 인원의 출국 고찰, 교류, 방문은 그의 소속 단위가 상급 주관부서나 地, 市, 州 과학 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省級 주관부서나 地, 市, 州 과학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다음에 省級 과학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副 廳급 이상의 행정 직무를 맡고 있는 과학 인원이 출국하여 과학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省 과학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다음에 省 政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과학 기술 인원은 출국하여 중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 과학 기술 조직이 개최한 국제 과학 기술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과학 기술 부서가 통일적으로 심사, 비준을 한다. 출국하여 국제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는 인원은 “出國參加國際學術會議申請 카드” 를 기입하여야 한다. 기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의 명칭, 장소, 시간, 개최 단위, 참가 이유, 논문, 외국어 수준, “一中一臺” 사상 여부의 문제 등의 상황.

출국하여 국제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은 반드시 국내 과학 연구 작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출국 인원은 반드시 업무상의 핵심 인물이고 학술상 일정한 조예를 가지고 외국어 수준이 교류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귀국한 다음에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7) 중국에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가?

국가는 중국의 더 많은 과학 기술 인원이 국제 과학 기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중국에서 국제 과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제창하고 지원한다.

일반적인 국제 세미나의 개최는 국내 주최 단위나 발기 단위가 신청을 제출하여 신청서를 기입하되, 신청서에는 세미나의 명칭, 내용, 주관 및 참여 단위, 개최 이유, 단정한 시간, 장소, 인원수, 외국전문가 인원 수와 조직기구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음에 신청서를 상급 주관 부서와 성, 시, 구 과학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과학 기술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중요한 국제 과학 기술 세미나인 경우 과학 기술 부서에서 외교부와 협의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받는다.

2. 教育制度

가. 中國의 教育理念과 政策

중국의 교육정책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정책 이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중국은 종래 사회주의적 이념에 치중한 교육에 중점을 두다가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덩샤오핑은 “교육은 현대화, 미래화, 세계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교육에 의거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³¹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1985년 ‘교육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과 1993년 ‘중국교육과 발전요강’을 통하여 대대적인 교육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시장 경제에 상응한 대학 교육 체제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어 장쩌민(江澤民)도 “교육은 전면적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수요에 적응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질고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4대 교육목표를 이상, 도덕, 문화, 규범의 구현(有理想, 有道德, 有文化, 有規律)으로 삼았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의 각급 정부기관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학교경영을 장려하고 있다. 이른바 ‘현대화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라는 기치는 중국교육발전 방향으로, 교육개혁과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이념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의 구현과 관련하여 국무원 산하의 교육부는 교육 행정부서로서 전국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 사업을 총괄계획, 관리하고 있다. 각 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각 지방 시, 구, 현에는 상응하는 교육국 혹은 교육 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전 국민 교육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며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경제수준

³¹ 1982년 덩샤오핑은 “교육은 현대화를 위해,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3개면향(三個面向)’을 제의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후 중국 교육의 개혁과 발전방향의 지표가 되었다. 1985년 ‘의무교육법’을 공포하여 9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教育委員會)를 설치하여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거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드는 데 치중해 왔으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실용적인 과학기술과 전문기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고등교육에서는 문과교육(文科教育)의 재건, 중점대학(重點大學:세칭 일류대학)의 육성, 대학의 자주성 인정,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면제라는 기존제도를 고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 교육의 발전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흥국’(科教興國)을 전략방침으로 제창했으며 교육체제개혁과 전인교육을 계속 심화시키고, ‘9년 의무교육제 보급’과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각급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여러 채널과 형식의 사학설립을 격려하여 교육분야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中國의 教育段階(學制) 概觀

(1) 概 觀

중국의 기본적 학제는 유치원-소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대학 포함)으로 되어 있고, 학제는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6·3·3제를 받아들였다가 1951년부터 5·3·3제, 문화혁명기에 5·3·2제를, 그리고 현재는 5·4·3제를 시행중이나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많다. 한국의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원교(高等院校)에는 대학, 전문학원(專門學院), 전과학교(專科學校) 및 부설연구부(附設研究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점대학은 1954년 중국인민대학, 베이징대학, 칭화[淸華]대학이 지정된 이래, 1981년부터는 그 수가 96개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농업중학, 고등전문학교, 직업 기술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일제(全日制)가 곤란한 학생 및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다.

다음에 중국의 교육단계와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취학 전교육이다. 3~5세 아동이 幼兒園에 들어가 취학 전 교육을 받는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이다. 6~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는 보통 지방정부에서 설립운영하며,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기도 한다.

셋째, 中等教育이다. 12~1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지방

정부와 업무부에서 설립 운영한다. 중등교육기구에는 普通中學, 職業中學과 각종 中等專業學校가 있다. 보통중학은 일반적으로, 初中(우리의 중학교)과 高中(고등학교)으로 나뉘며, 기간은 각각 3년 이다. 중학교 졸업생 중 일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일부는 직업 고등학교와 中等專科學校에 들어가고, 기간은 3~5년이다.

넷째, 高等教育이다. 專科(전문대학), 本科(4년제 대학), 研究生(대학원생)교육을 말한다. 중국은 고등교육의 기구로 대학교, 단과 대학과 高等專科學校를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교수법, 과학 연구와 사회 봉사 등 3대 임무를 지고 있다.

(2) 教育段階

(가) 就學前 教育: 幼稚園

3세 이상의 연령의 학생을 모집 3~5세의 아동이 유치원에서 교육 받는 과정을 말한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민간이 설립하며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 중도시에서는 유아들의 취학전 교육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아교육사업의 발전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향진(鄉鎮: 중국 현 이하의 소도시)은 이미 취학 전 1년 교육이 보급되어 있다.

(나) 初等教育

중국의 '의무교육법'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서는 반드시 초등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하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설립한 곳도 있다. 초등교육의 주체는 전일제 초등학교이며 학제는 6년이다. 교과목은 이념, 덕성, 국어, 수학, 자연, 역사, 지리, 미술, 음악, 체육 등이다.

(다) 中等教育

보통중학교 교육과 중등직업 기술교육을 포함한다. 보통중학교 교육은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고등학교) 2개 단계로 나누는데 학제는 각각 3년씩이다. 보통중학교의 학과목은 국어, 수학, 외국어,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위생, 노동 기술을 포함한다. 지, 덕, 체가 우수한 우등생에 대해서는 진학 시험을 면제한다.

중등 직업기술 교육은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직업학교로 나누는데 학제는 2~3년, 3~4년 등 같지 않다. 중등 전문학교와 직업학교는 공과, 농과, 임과, 의약, 재정, 경제, 사범, 체육, 예술 및 정치, 법률, 문화, 교육, 관광, 요리, 공예 미술 등 전공과목을 설치하고 기술학교는 주로 중급기술공을 양성한다.

(라) 高等教育

중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차원, 형식의 고등교육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대학교는 종합대학, 전문대학, 또는 학원을 포함한다. 본과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제가 4년(의대 등은 5년), 전문대학은 다수가 3년(2년 과정도 있다)이다. 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내지 확대를 위하여 2005년까지 대학졸업자의 수를 전 인구대비 15%까지 증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학은 고등교육발전 모델 중 엘리트형 양상과 대중화형 양상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의 고등교육의 특징은 소수에게만 특권으로 교육기회가 부여되던 것에서 점차 대중에게 교육기회가 확대 제공되고 있다. 이는 고등 교육의 목표가 지배계급의 재생산에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의 양성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화형 모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학생층이 동일연령층이며,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학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엘리트형의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³²

그리고 중국은 이른바 ‘211공정’³³에 의해 전국에서 100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1998년 이후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세계 일류대학육성에 노력하고 있다.³⁴ 중국의 대학교는 전국 통일 입학시험을 친다. 학교는 수험생들의 성적, 신체상황 및 응시지원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택하여 입학시킨다.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일정 범위 내에서 직업을 알선해 주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일반적으로 10~15%선) 외에는 대부분 스스로 직업을 찾고, 선택하고 있다.³⁵

³²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중국교육용 콘텐츠 시장 조사 보고서』 (2002) 참고.

³³ ‘211공정’에 대한 내용은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르다. 1993년 2월 13일에 공포한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요강’을 보면, “중양과 지방, 그리고 여타 많은 부문의 역량을 집중하여 100개교 정도의 중점대학과 일부학과(전공)를 잘 육성하여 21세기 초에는 그 중 일부 대학과 학과(전공)가 교육의 질, 과학 연구의 수준, 대학운영관리 차원에서 비교적 높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993년 ‘211공정’을 제기한 초기에는 21세기를 지향하여 100개교 정도의 중점대학과 일부 중점학과(전공)를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1일, 국무원에서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요강”을 실시함에 대한 ‘의견’을 공포한 이후 ‘211공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개 정도는 중점대학 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대학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여기에서 발전과정을 강조한다.

둘째, 100개 정도의 학교가 모두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몇 개교만 일류수준에 접근하거나 도달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100개 정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로 몇 개 대학은 세계 일류대학 수준에 도달토록 하며, 둘째로는 일부 대학은 국내의 일류대학이 되도록 하며, 셋째로는 그 밖의 대학은 계열과 지방에서 시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211공정’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한다. ‘211공정’의 전반기 평가는 일단 1996년에 끝났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34개 대학 중에 4개 대학(陝西師大, 西南師大, 華中師大, 北京語言文化大學)을 제외한 그밖의 30개 대학은 모두 전반기 평가대상교였으며, 이들 대학은 평가에서 인정되었다.

³⁴ 1992년 일반대학교 재학생수는 218만 4천명이었다. 고등교육의 범위는 확산되어 2000년 학생수는 100만여 명이고, 입학률은 1980년대 초의 2%에서 11%로 상승하였다.

³⁵ 예컨대 북경의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타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로서 그들의 고향보다 북경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경에 머무르려고 한

학교 운영방식은 1994년 9월 신학기부터 국가투자 및 사회 자금 조달에서 자비로서 공부하는 체계로서 실험적이며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1994년 가을 전국적으로 100개 중점대학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 걸친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상당수의 중점학과, 전공 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211공정’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연구생(대학원생)을 양성하는 곳은 주로 대학교와 과학 연구부문이다.

(마) 成人教育

중국의 성인교육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며 방식도 다양하다. 라디오 방송대학, TV방송대학, 직공대학, 농민대학, 통신대학, 야간 대학, 관리간부학원, 교육학원이 있는가하면 각종 성인 중등 전문학교, 기술양성학교 및 문맹퇴치반, 소학반, 기술반 등도 있다. 성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지식갱신을 위한 사람도 있고, 기능습득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람도 있다.

3. 中國의 教育關聯法の 法源

가. 中國憲法上 教育條項과 教育法體系

(1) 憲法上 教育條項

중국 헌법은 제46조 제1항에서 “중국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국가는 청소년, 어린이 등의 인품과 지능, 체질 등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헌법으로 중국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의무를

다. 그러나 북경내 기업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이 되더라도 북경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주택 분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우고,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교육사업에 중시하는 중국국민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국가의무로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의 현행 헌법은 이전의 헌법에서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의무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³⁶

첫째, 국민의 사회적인 문화지식의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국민이 생계를 도모하고 국가의 관리와 건설에 참여하면서 문화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발전을 요청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사상·도덕적 소질과 과학·문화적 소질의 좋고 나쁨은 한 국가 및 모든 민족의 발전과 흥망의 큰 문제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국가는 국민의 의무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의무교육의 보편적 실행과 함께 그 기한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의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고도의 정신문명과 민주적이고 번영된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교육·과학·문화가 바로 물질문명건설의 중요한 조건이고 인민대중의 사상도덕적 자각을 현상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4개 현대화의 실현의 관건은 인재에 달려 있으며, 인재양성의 기초는 바로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 청소년과 어린이의 육성의 강조는 현실)적으로 중국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중국에서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신예부대이고 후계자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시

³⁶ 許崇德 著, 卞相弼 譯, 『中國憲法』(東玄出版社, 1996), pp. 280-281.

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2) 中國의 教育法體系

중국은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문맹률을 낮추는 정책을 취하면서 교육사업의 성과를 보였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은 큰 격차를 보여 왔다. 이는 중국정부가 제시한 부강하고 문명화된 민주적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교육사업에 대한 개혁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80년 당과 국무원은 1990년대 이전에 여러 가지 형식을 전국에 초등교육의 보급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비교적 경제가 발달하고 교육기반이 조성된 지역부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985년 중공중앙이 내린 ‘교육체계개혁에 대한 결정’이다. 이어 중국은 1986년 제6기 전인대 제4회의에서 ‘의무교육법’을 통과시키고, 1995년 제6기 전인대 제4차회의에서 ‘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총체적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육법, 의무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사법, 학위조례 등의 주요 법령을 정비하여 왔다. 그 법령정비는 교육법과 그 하위 행정법규를 주로 하고, 교육규정과 지방법규를 부로 하여 추진되었으며, 이른바 중국특색의 교육법 체제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제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여기서는 중앙국가 차원의 법령을 중심으로 그 법령을 다음에 기술한다.

우선 중국의 주요 교육법령은 다음을 들 수 있다.

〈주요 법령〉

-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
- 中華人民共和國國民教育促進法
 - 中華人民共和國國民教育促進法實施條例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高等教育自学考试暂行条例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若干问题的通知
 - 教师资格条例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 幼儿园管理条例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
- 教学成果奖励条例
- 扫除文盲工作条例
- 普通高等学校设置暂行条例
- 普通高等学校学生管理规定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기타 법령〉

国家教委关于印发《普通高等教育学历证书管理暂行规定》的通知
 全国学生体育竞赛管理规定
 教育行政处罚暂行实施办法
 国家教育考试违规处理办法
 中小校园环境管理的暂行规定
 中小学卫生保健机构工作规程
 汉语作为外语教学能力认定办法
 中小学校电化教育规程
 中小学德育工作规程
 特级教师评选规定
 少年儿童校外教育机构工作规程

流动儿童少年就学暂行办法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国家教育委员会督学聘任暂行办法
 县级扫除青壮年文盲单位检查评估办法 (试行)
 高等学校培养第二学士学位生的试行办法
 普及义务教育评估验收暂行办法
 成人高等学校设置的暂行规定
 广播电视大学暂行规定 등

중국은 교육체제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하여 학위조례와 의무교육법의 개정, 이른바 민영교육법의 제정과 평생교육법의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나. 中國의 教育法令 概觀

(1) 中國의 教育法和 教育制度

중국의 교육법 체계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1995),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1986),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1998) 등을 기본법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육법』은 중국의 교육사업의 발전, 전민족의 자질향상, 사회주의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촉진 등을 위하여 헌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의 구성체계는 총칙, 교육의 기본제도, 학교와 교육기구, 교사와 교육 업무자, 교육을 받은 자 등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에 의하면, 중국의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학교교육제도 (제 17조)
- 9년제의 의무 교육제도 (제18조)

-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제19조)
- 국가교육시험제도 (제20조)
- 학업증명서제도 (제21조)
- 학위제도 (제22조)
- 교육감독 지도제도, 학교와 교육기구의 교육평가제도 (제24조) 등이다.

현재 중국의 교육목표와 체제는 이른바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상적, 이념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개발목표와 함께 정신문명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접근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국은 교육부문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틀을 강화하면서 국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義務教育法

이 법에서 중국은 “9년제의 의무교육을 실행한다”(제2조), “만 6세의 아동은 성별, 민족,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입학하여 규정한 연한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의무 교육은 초등교육과 초급중등교육 두 개 계단으로 나눈다”(제7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高等教育法

중국의 고등교육은 고급중등교육을 완성하여 실행하는 교육이다. 이 법에 의하면, 고등교육은 학력교육과 非학력교육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뉘어지고 있다(제15조). 고등교육은 중국이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개혁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다양한 차원·형식 및 학과로 분류된 고등교육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대학교

는 종합대학·단과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대학의 본과인 학부 과정은 일반적으로 4년제이다(전공과목에 따라 5년제).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3년제이다(2년제도 있음).³⁷

중국의 대학교는 전국의 통일적인 입학시험을 치른다. 대학교는 수험생들의 성적, 건강상태 및 각자의 지원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모집한다. 졸업생들의 취업은 졸업생과 채용할 單位가 이른바 ‘상호선택’의 방법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학원생을 양성하는 단위는 주로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이다.

(4) 民營教育促進法

중국에서는 1949년 이후 사립대학을 ‘국영화’함에 따라 오랜기간 사립대학은 존립기반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헌법의 개정을 계기로 하여 1980년대 이후 많은 민영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이들 대학은 반드시 국가교육위원회 인가를 받아야만 졸업생의 학력을 인정한다. 정부가 대학 설립의 주체였던 상황에서 민간단체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중국에서 고등 교육체계의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정부의 인가를 받기도 힘들다. 정부의 교육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영대학의 설립을 권장하여 국·공·사립대학이 공존하는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 법은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2003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과학교육정책을 실시하고, 민영교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학교와 피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³⁷ 중국대학은 국가교육위원회화 직속고등학교, 중앙기타 部·委소속고등학교, 성·자치구·직할시소속고등학교, 지방중심도시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및 민간운영학교로 나뉜다. 중국대학교와 단과대학은 동등한 지위에 속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각 高等學校 학생모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국은 엄격한 학생모집시험제도를 두고 있다.

것으로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또한 이 법은 국가 이외의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비국가 재정성 경비를 사용하여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활동에 대한 입법에 해당한다(제2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민영교육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조성부분이라고 하였다(제3조). 따라서 국가는 민영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법에 따라 그 관리방침을 정하도록 하였다.

4. 教育의 對外交流 및 敎員의 就業

가. 對外交流와 協力の 原則과 方向

중국은 교육부문에서의 대외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관련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교육법에 의하면, 제67조제1항에서 “국가는 교육 대외 교류와 협작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제2항에서 “교육 대외 교류와 협작은 독립자주, 평등호혜, 상호존중을 원칙으로 중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8조에서 “중국 국내의 공민의 출국유학, 연구, 학술교류 혹은 교육 담당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제69조에서 “중국 국경 이외의 개인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을 부합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에 중국 국내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 들어가서 학습, 연구, 학술교류 혹은 교육 담당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70조에서 “국경 이외의 교육기구가 수여한 학위증서, 학력증서와 기타 학업 증서의 승인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보면, 교육부문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당해 국제규범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제12조에서 “국가는 고등학교 간, 고등학교와 과학연구기구 및 기업 사업조직 간에 협조를 전개하고 우세의 상호 보충을 실시하여 교육자원의 사용 효율을 제고”시키고, 제2항에서 “국가는 고등교육사업의 국제 교류와 협작을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제36조에서는 “고등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국경 이외의 고등학교간의 과학기술 문화교류와 협작을 전개”한다는 원칙규정을 두어 고등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화하고 있다.

3) 중국은 1995년 1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학교를 설치·운영하는데 대한 잠정적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과 국가가 특별히 정한 교육기관을 제외한 그 밖의 교육기관은 외국인과 합작하여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반드시 중국의 교육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영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장은 반드시 중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어야 한다.

셋째, 학생모집은 중국의 교육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넷째, 졸업생에게는 졸업장을 발급하여 그 학력을 인정한다. 학위는 국무원의 학위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뒤 수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영교육촉진법은 제67조에서 “중국 국경 이외의 조직과 개인은 중국 국내에서 합작의 방식으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하여 외국과의 합작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4) 그리고 학위조례는 제14조에서 “중국은 학위 수여 단위의 추청을 겪고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비준을 받으면 국내외의 뛰어난 학자 또는 유명한 사회 활동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하고, 제15조에서 “중국에서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업을 종사하는 외국인 학자는 학위 수여 단위에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국인의 중국내에서의 학위 취득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나. 留學制度와 學歷·學位認證

(1) 留學制度

외국인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유학하는 것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국경 이외의 개인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을 부합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에 중국 국내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 들어가서 학습, 연구, 학술교류 혹은 교육담당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제69조).

중국의 고등학교는 외국유학생에 학력교육과 非학력교육을 제공한다. 『고등학교의 외국유학생을 뽑은 방법에 대한 관리 규정』은 제10조에서 외국유학생에 제공한 학력교육은 전문대학생, 학부생, 석사연구생, 박사연구생을 나누어 非학력교육은 연수생, 연구학자로 나누어진다.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유학생에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이수증명서) 또는 학업증명서를 수여하며, 학위를 받은 외국유학생에 학위증명서를 수여한다(동 『규정』제29조). 외국유학생은 학습기간에 취업, 장사 또는 경영활동을 금지하며, 학교에서 규정하는 교학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동 『규정』제36조).

외국인은 중국에서 자비 유학하려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신청 방법이 있다.

첫째, 외국의 교육기구 또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중국) 국가 유학 기금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직접 (중국)국가 유학 기금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직접 중국의 대학에 신청할 수 있다.

(가) 中國의 外國留學生教育

중국의 외국유학생교육은 195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들어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유학생은 어언진수생, 본과생, 석사연구생, 박사연구생, 보통진수생, 고급 진수생, 연구학자 및 각종 단기학습반 학생으로 구별한다.

첫째, 어언진수생(語言進修生)은 중국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자가 대상이다. 학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이며, 학습이 끝나면 진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본과생(本科生)은 중국본과대학생의 학제와 강의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기간은 4~5년이다. 중국학생과 합반해 수업을 듣는다. 동시에 유학생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일부 선택 과목을 적당히 조정하거나, 단독으로 일부 강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시험에 합격이 되고, 졸업논문을 완성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셋째, 석사연구생(碩士研究生)은 중국석사연구생의 학제와 강의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기간은 2~3년이다. 유학생은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훈련계획에 의거해, 정해진 교과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석사연구생졸업논문을 완성하고, 논문발표시험에 통과되면,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넷째, 박사연구생(博士研究生)은 중국박사연구생의 학제와 강의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기간은 3년이다. 유학생은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훈련계획에 의거해, 정해진 교과를 이수하고, 박사연구생졸업논문을 완성하고 논문발표시험에 통과되면,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다섯째, 보통진수생(普通進修生)은 전공에 의거해, 또는 중국 학생 교과과목을 선택해 중국학생과 합반해 수업을 듣거나, 또는 학교에서 단독으로 강의를 개설해 진행한다. 학습기간은 1~2년으로, 시험 및 심사를 거쳐 진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여섯째, 고급진수생(高級進修生)은 연구주제에 의거해, 학교에서 한 명의 지도교사를 배치해 그 연구를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는 사전에 협의 결정한 주제연구와 관련된 사회조사 및 방문을 안배한다. 연구기간은 주제연구의 필요한 시간에 맞춰 결정한다.

일곱째, 연구학자(研究學者)는 연구주제에 의거해, 학교에서 한 명의 지도교사를 배치해, 학자 자신이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주로 하며, 학교는 사전에 협의 결정한 주제연구와 관련된 사회조사 및 방문을 계획, 안배한다. 연구기간은 주제연구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결정한다.

(나) 外國留學生 募集 條件

외국유학생의 모집조건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과연구생은 25세 이하로 중국고등학교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이상을 소지한 자로, 중국대학시험 또는 심사를 거쳐 합격된 자로서 4~5년이 소요된다.

둘째, 석사연구생은 35세 이하로 대학본과졸업, 부교수 2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입학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중국대학 본과 졸업을 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추천을 거쳐 시험 없이 입학하는 자이다. 2~3년이 소요된다.

셋째, 박사연구생은 40세 이하로 석사연구생을 졸업하고, 2명의 부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학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된 자로서 3년이 소요된다.

넷째, 어언진수생은 55세 이하로 중국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1~2년이 소요된다.

다섯째, 보통진수생은 35세 이하로 대학 2학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이며, 1~2년이 소요된다.

여섯째, 고급진수생은 45세 이하로 석사졸업학력 또는 박사연구과정중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내 연구학자 55세 이하 부교수 이상의 직책을 소지한 자, 1년 이내 단기생 60세 이하 중국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며, 4~20주가 소요된다.

(2) 外國學歷과 外國에서 받은 學位의 認證

중국 공민의 외국에서 받은 학력과 학위에 대하여 교육법은 제70조에서 중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교육부 유학복무 센터는 유학귀국인원의 학력과 학위 증명서의 인증복무를 제공한다.³⁸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認證範圍

- 1) 외국에서 정규과정을 공부해서 받은 전문대학 이상(전문대학 포함됨)의 학력 또는 학위증명서.
- 2) 국무원 학위위원회 허가한 연합경영 학교에서 받은 외국학력 또는 학위증명서.

다음의 국가에서 받은 학력과 학위증명서는 인증 서비스에서 포함된다: 미국,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인도, 북한, 남한, 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³⁸ 이와 관련 규정으로 ‘자비 출국유학에 관한 집행규정’과 ‘자비 출국유학 중개서비스에 관한 관리규정’ 등이 있다.

(나) 認證內容

- 1) 신청자는 증명서를 수여한 대학교 또는 교육, 연구기구에서 공부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2) 신청자가 다닌 학교 또는 연구기구는 그 나라의 정부 혹은 권위가 있는 기구의 인증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 3) 신청자가 다닌 학교 또는 연구기구는 증명서에서 나와 있는 학과가 있는지 또는 학위를 수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4) 신청자가 이 학력 또는 학위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 5) 신청자의 학력 연한을 확인해야 한다.
- 6) 신청자가 받은 외국학위 증명서의 분류와 학력의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다) 必要書類

- 1) 여권
- 2) 받은 외국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3) 성적증명서(석사, 박사는 졸업논문의 요약문을 필요함)
- 4) 외국 주재의 중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유학 귀국인원 증명서
- 5) 출국 전에 받은 최종 학력증명서

(3) 外國留學生의 就業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 허가증제도를 실행한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취업관리 규정』제8조에 의하면, 중국에서 유학, 실습하는 외국인은 중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 유학생은 유학 기간에 취업을 못하지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고학도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외국유학생을 뽑은 방법에 대한 관리 규정』에 의하면, “외국유학생은 학습기간에 취업, 장사 또는 경영활동을 금지하며 학교가 규정한 고학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제36조), “중국정부는 외국유학생을 위하여 ‘중국정부장학금’을 설립”(제19조)하여 외국유학생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國際學術會議 開催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정부는 국제학술 교류와 협작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교육법은 제6조에서 국가는 교육 대외 교류와 협작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대외교류는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제12조 제2항과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법제도적 기초를 다지고 있다. 특히 중국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학의 국제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문화부문의 대외교류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신청과 승인, 비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국제교류에 대한 제한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中國의 對外, 대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대만(臺灣) 交流 解除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³⁹

5. 勞動規範과 對外就業

가. 中國 勞動關聯法制的 概觀

(1) 勞動關係法制的 體系와 法源

중국의 노동법령은 경제체제 및 경제주체(노동영리부문)의 기능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알다시피 중국에서 1978년 이후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에 의한 노동입법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³⁹ 對外, 對港奧臺交流手冊 〈<http://www.xf.gov.cn/zhuanti/souce/index.html>〉.

중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법령을 모두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법령의 단계를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른 중국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규의 입법기관의 성격과 노동법제의 위상에 따라 노동기본법, 노동기본법 이외의 노동법규, 노동행정명령, 노동행정규정, 지방성의 노동법규 및 노동자치조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중국의 노동법은 헌법, 노동법, 기타 노동규율, 노동행정법규, 지방노동법규와 노동행정규칙 등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왔다. 노동관련 법령은 다음의 구성체계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 1) 먼저 중국 헌법상 노동규정은 하위 노동규범의 제정 및 입법 근거가 되며, 당연히 노동법체계의 최상위규범에 해당한다.
- 2) 중국노동법은 중국노동법제의 기본법이며, 기타 노동법령의 입법근거가 된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었다.
- 3) 기타 노동규율은 노동법의 하위규범으로 노동법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규범으로 취업촉진법, 임금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4) 노동행정법규는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률을 구체화하는 규범으로 국무원에서 제정된다.⁴⁰ 노동계약실시조례, 노동쟁의조정법 실시조례 등이 해당된다.
- 5) 지방노동법규는 지방정부(성)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노동법률과 노동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각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자치조례와 단행법률 등으로 제정된다.
- 6) 노동행정규칙은 국무원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부서에서 노동법률 및 노동행정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규범이다. 여기에는 국무원이 제정 공포한 모든 항목이 노동규정인 규장(規章)과 기타 부서에서 제정한 규칙 가운데 노동관련 부

⁴⁰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조례, 규정, 결정, 명령, 방법, 실시세칙 등)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문을 가지는 규칙이 포함된다.

- 7) 한편 이들 규범 이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가맹국으로서 중국은 주요한 국제노동규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국제 규범은 중국 노동법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노동조직에서 채택된 노동관련 협약과 권고는 중국정부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 중국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 8) 노동조합(工會)에서 제정하고 관련 행정부문이 인가한 규범적 문건 또는 국무원의 관련법률과 부합하여 공포한 규범력 있는 노동문제관련 문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主要 勞動規範의 概觀

(가) 中國憲法上 勞動規定

중국헌법은 제4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가 취업조건을 만들고,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생산 향상을 기하고 보수와 복리후생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43조와 제45조에서 근로자의 휴식권과 물질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35조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1975년 헌법에는 이른바 ‘4대 민주’의 하나로서 노동 조합의 파업권과 그 전제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었으나, 1982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파업권 조항을 삭제하였다.⁴¹

⁴¹ 단체교섭권은 노동법과 노동조합법(工會法) 등 개별법제에서 규정되고 있다.

(나) 中國 勞動法(工會法)

노동법은 1994년 제정되고 1995년 시행되었는데, 총 13장 10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취업촉진, 근로계약, 임금, 산업안전 및 위생, 직업훈련, 사회보험 및 복지, 여성노동보호, 노동쟁의 및 근로감독 등의 장을 두고 있다.

중국노동법은 주요한 법률체계와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민법 및 기타 법률부문에서의 상호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등한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조정하고, 근로자를 훈련시키며 기업과 개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등 행정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중국노동법은 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동법의 주체에 있어 사적 관계를 조정할 때는 민법의 범주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⁴²

이 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노사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적합한 근로제도를 수립 유지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안정과 노사관계의 조화에 대한 필요가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비공유제 경제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 공유제 기업도 급속도로 경영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며 노동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노동관련제도를 적절히 수립하기 위한 법제이다. 이로써 노동법의 제정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⁴² 문무기, 『중국노동법제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p. 21.

(3) 中國 勞動法制의 特徵

종래 중국에서는 대립적 의미에서의 노사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영기업과 집체기업의 노동관계란 근로자간의 동지 관계 또는 협조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관계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관계법상의 노사관계는 그 개념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중국에서 국영기업과 집체기업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관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⁴³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노사관계가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역할이 증대되었다. 사회주의시장 경제체제는 경제제도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상품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중국에서도 정부, 사용자, 근로자 등 3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와 유사한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이념과 본질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중국은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이며, 이른바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의 여러 노동관계의 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⁴⁴

그러나 계획경제하의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각종 노동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의 현실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내외 기업 또는 국유기업과 사업기업과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

⁴³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기업의 주체가 근로자였으며, 자본주의국가에 말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은 국가기관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⁴⁴ 이러한 중국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중국은 광범위한 국민의 의지와 기본적인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생산력 발전과 중국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성이 강조되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고용에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부는 고용촉진과 실업자구제의 방향을 강화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중국의 노동법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노동법은 그 이념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노동법으로서 사회주의법제적 요소와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노동법제의 요소가 병존하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나. 中國의 勞動法制 改革과 海外 勞動進出

(1) 勞動法制 改革

중국은 1978년 이전까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아래 국가에 의하여 고용인력규모와 형태, 채용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결정하여 분배하는 체제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율성은 인정될 수 없었다. 특히 고용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개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노동계약제를 실험운영하면서 계약 노동자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약제시행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1983년 2월 22일 ‘노동계약의 시험에 관한 일반규칙’, 1986년 7월 12일 ‘국유 기업노동계약잡정규칙’, 1992년 2월 25일 ‘노동계약제도의 시행에 관한 문제처리의견통지’ 등이 그 사례이다. 이를 기초로 앞서 언급한 중국의 노동법제가 정비되었다.

중국의 노동법제에서 나타난 노동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92년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시스템의 건설을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제시하고,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노동제도의

개혁을 위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⁴⁵

이어 전술하였듯이 1995년 노동법의 시행으로 중국에 노동계약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⁴⁶ 한편 중국이 개혁과 개방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모순현상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현실화되었고, 그것은 실업문제로 나타났다. 실업문제는 중국에서 큰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중국정부는 진력하고 있다.⁴⁷

대체로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적 제도와 체제로의 경제체제의 이행을 이룬 셈이며, 이로부터 노동 관련 법령의 경우에도 관련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물론 중국은 노동관련법제의 기본을 사회주의체제에 두고 법령에도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규정의 개선을 확대하고 있다.⁴⁸

향후 중국의 노동법은 자본주의적 근로자보호법제로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2001년의 노동법의 개정은 외자유치에 있어 성공을 거둔 중국이 근로자보호에 치중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⁴⁵ 선한승 외, 『사회주의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p. 39. 1993년부터 노동부는 중업원 인수, 임금총액 및 기술전문학교 모집 수량 등 종래의 계획지표를 취소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기업도 자주적으로 노동력을 채용하고, 개인이 독자적으로 취업을 선택하는 노동시장으로 변화하였다.

⁴⁶ 2000년 초에는 전국 도시의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및 외자기업에서 노동계약제를 실시하는 중업원은 취업자 통수의 9%에 달하였다. 위의 책, p. 39.

⁴⁷ 중국의 공식통계(국가통계국)와는 달리 실제 실업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중국의 농촌에는 1억 3천만 내지 1억 5천만명의 잉여노동력이 있으며, 국유기업의 임시휴업자(lay off, 下岗(下崗)): 기업내에서 3개월 이상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1,100만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80%가 실업상태에 있다고 알려졌다. 위의 책, p. 54.

⁴⁸ 예컨대 근로계약제의 도입, 고용형태의 다양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 경영상 해고 및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분쟁처리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2) 失業對策의 一環으로서의 海外勞動進出

일부 지적했다시피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경제의 지속성장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취업 및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대책으로는 취업기회의 확대가 용이한 서비스산업의 발전, 비국유경제의 발전을 통한 민간기업의 취업기회 확대, 다양한 형식의 취업방식(서비스업, 비전일제 및 파트타이머 등)의 다양화를 통한 임시휴업자의 자아취업확대, 실업보험제도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노동시장에 대한 중국 근로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해외 노동시장을 개척하여 해외노동수출을 추진함으로써 노동력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⁴⁹

(3) 外國投資企業의 勞動組織

무엇보다 중국의 노동시장의 개혁은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과 사영기업의 영향이 컸다. 외자기업의 중국활동을 계기로 임금, 근로조건, 복지제도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른바 완전고용, 평등분배, 국가부담의 주요한 사회주의노동제도의 원칙은 와해되고, 해고로 인한 실업발생, 능력에 따른 차등분배, 기업과 개인의 부담급증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은 외자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투자의 유치와 생산성 제고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사례로는 1980년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을 시작으로 1986년 ‘외국투자기업의 고용규정’ 제정, 1989년 ‘임금규정’ 등의 준비를 통하여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중국의 외국 투자관련법령의 노동조합결성,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관련규정들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과 자세를 보여주는 법령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이들 법령에서의

⁴⁹ 선한승 외,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연구』, pp. 54-55.

자본주의적 노동관련규정의 마련과 전반적인 노동개혁의 내용은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발흥에 결정적인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외국투자기업은 중국과 외국의 출자자 또는 중국과 외국의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기업형태를 말하는데, 기업의 생산활동의 전반을 통하여 국적을 달리 하는 출자자와 근로자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의 중국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처우와 복리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업의 경영관리 기구와 협의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본질적으로 외국투자기업에서 중국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외국 자본기업의 경영 활동의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를 외국투자 기업 법제에 반영하고 있다.⁵⁰

결국 기업과 노동조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보장을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중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다. 재중 외국인 취업과 사회보장문제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따른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와 함께 외국 근로자의 중국내 기업 내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된 중국의 노동관련법제도는 중국내 외국인 취업의 보호와 노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재중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에 외국인 취업보호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다.

⁵⁰ 합영조례 제13장, 합작기업법 제14조, 외자기업법 제13조 등.

(1) 외국인 취업에 관한 규정

현재 실행중인 재중 외국인 취업에 관한 규정은 “재중외국인 취업 관리규정”이 있다. 이는 1996년 1월 22일 중국의 5개 정부부처(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무역협작부 등)에서 연합으로 발표한 행정 규정으로서 총 6장 37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취직기업 측에서 당지 노동 행정부문(노동국)에 노동부에서 작성한 <중화인민 공화국 외국인취업허가증서>와 <외국인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외국정부간, 국제조직간 협의나 협정, 그리고 중외협작 교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측에서 요청한 외국인, 외국기업재중대표기관의 수석대표와 대표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주체는 개체경제조직이나 공민 개인은 제외되며, 외국인을 채용하는 직위는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직위여야 하며 동시에 국가관련 직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영업성 문예공연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된다. 다만, 문화부 심사비준을 거친 <임시영업 공연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외국인도 채용이 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연령은 18세(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신체상황이 건강하여야 한다.

둘째, 해당 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 기능과 상당한 근무경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셋째,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넷째, 확정적인 채용기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유효한 여권(Passport)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취직비자로 입국해야 하며(상호 간 비자를 면하도록 한

협이는 협의에 근거하여 처리), 입국 한 뒤에는 《외국인 취업증》(취업증으로 간략)과 외국인 거류증서를 신청받아야 한다.

규정에 근거하면 거류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즉 F, L, C, G 비자 소유자, 재중유학생, 외국인 실습생 및 직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가족은 중국에서 취업하지 못한다.

취직한 외국인과 해당 채용기업측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노동계약 기한을 정해야 하며 취직기한은 최대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한 만기 뒤에는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채용한 외국인 급여는 당지 최저급여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외국인 직원은 채용기업과의 노동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원 채용기업 측에서 반드시 즉시 노동, 공안부문에 이 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외국인의 취업증과 거주증을 반납하고 공안부문에 가서 출국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사회보험관련 규정

상기 규정의 제23조항에 의하면, “중국에서 취직한 외국인의 근무 시간, 휴식과 휴가, 노동안전 위생 및 사회보험은 응당 국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식과 휴가, 노동안전, 위생제도는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 완전히 적용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면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원인으로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독일 등 극소수 국가와 같이 중국과 특별계약을 제정한 나라⁵¹를 제외하고는 기타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양로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중국의 사회보험에 관한 주요법률은 1999년 중국국무원에서 공포

⁵¹ 한국 등 소수 국가의 국민은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 중국공민과 거의 동등한 사회보험제도를 향유할 수 있다. 이 국가 국민들을 채용한 기업 측에서는 반드시 소재한 성, 시 사회보험센터에 신청을 제기하여 외국인직원의 사회보험 계좌를 개설 해야 한다. 신청시 응당 해당 외국인 직원의 Passport와 〈외국인취업증〉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 “사회보험비용납부 임시조례”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란 기본 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세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사회보험 비용은 채용기업의 전체 직원들의 급여총액을 기준 수로 한다. 국가 통계국 규정에 따르면, 급여총액이란 각 기업들에서 일정한 시기 내에 전체 직원들에 직접 지급하는 노동보수의 총액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6개부분을 포함한다.⁵²

정규직원은 일반적으로 그 전체 본인 월 평균급여를 개인이 지급해야 할 사회보험 기준 수로 한다. 국무원에서는 기본 양로금, 기본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지급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급원칙을 규정하였다. 기본양로보험에서 채용기업측 지급비율은 일반적으로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직원 개인의 지급비율은 8%로 높였고 기본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채용측에서 6% 좌우, 직원개인이 2%; 실업보험은 채용 측에서 2%, 직원개인이 1%로 규정하였다. 작업도중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 대한 보험 비율과 출산 보험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하며 보험비용은 기업측 지급 비율은 2%초과 하지 않으며 직원개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현재 많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규정에 의하면, 기업측에서 지급하는 기본 양로보험 비율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20%이내의 요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중국사회보험에 참여해야 할 경우 반드시 각지의 사회보장부문과 연락하여 구체상황과 보험비율에 대해 요해 해야 한다.

현재 중국상황으로부터 볼 때, 사회보험제도가 중국에서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독일 등 국가 이외의 공민이 중국에서 취직할 경우에는 채용기업 측에 의료, 의외사고 등에 관련한 상업보험에 참가하도록 요구하거나 스스로 가입하여야 한다.

⁵² 1) 시간급여, 2) 성과급, 3) 보너스, 4) 수당과 보조금, 5) 초과근무 급여, 6) 특수 상황에 근거하여 지불한 급여 등을 말한다.

6. 국제법적 문제

가. 중국국적의 취득·상실 및 변경

국적문제와 관련된 법률은 ‘국적법’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집행에 관한 의견”(시험적 실시)(이하 ‘의견’이라고 약칭함)을 포함하는데 자연인 국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단일 국적원칙”을 견지한다, 즉 한 국민은 하나의 국적만 소유하며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한다.

둘째, 중국인의 이중 국적 상황을 승인하지 않으며 국적의 취득과 회복은 혈통에 근거한 원칙과 출생지 원칙을 결합하여 결정한다.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부모쌍방이나 일방이 중국공민인 경우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도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공민이지만 외국에서 정착하여 본인이 출생한 즉시로 외국 국적을 소유한 상황은 중국국적을 갖지 못한다. 동법 제8조에 의하면, 국외에 정착한 중국국민이 자원원칙에 근거하여 외국국적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국국적을 잃게 된다.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일찍 중국국적에 가입하였던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국국적 회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 중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외국국적을 보존하지 못한다.”

다국적에 가입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 제182조에 의하면, “이중 혹은 다중국적을 소유한 외국인은 그가 거처한 국가나 그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기본 법률로 한다.”

셋째, 외국인이 중국국적 취득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자가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일 경우나 혹은 중국에 정착하거나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국국적이입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적이입신청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중국 국적을 향유할 수 있다. 국적을 소유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하여, 부모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불명하지만 본국에 정착하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외국인이나 혹은 국적이 없는 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비준을 거친 뒤 중국 국적에 가입할 수 있다.

넷째, 중국국적의 상실, 이런 상황은 외국국적에 가입하여 중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와 본인이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혹은 외국에 정착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경우에는 중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군인과 국가 공무원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나. 국제혼인 관련규정

현재 중국 법률 중 국제혼인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983년 8월17일 발표한 “중국공민과 외국인 결혼 수속과 관련한 몇가지 규정” 1983년11월28일에 발표한 “외국주재 중국영사관에서 화교 혼인 문제를 처리할 데 관한 몇가지 규정” 1983년12월9일 “혼인수속중 국제혼인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데 관한 비준” 및 1986년 “민법 통칙”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법률은 국제혼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인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결혼, 쌍방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중국에서 결혼, 중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 쌍방이 중국인인 경우 외국에서 결혼, 쌍방이 외국인이며 또 외국에서 결혼한 상황을 중국측에서 승인할 것을 요구한 경우 등이다.

‘민법통칙’ 제147조에 의하면, 중국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婚嫁地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혼인의 실질 요건과 형식요건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저 실질요건과 형식요건에 모두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혼인신고에서 국제혼인과 관여한 몇가지 처리 방

법에 대한 비준'에 의하면, 쌍방이 모두 중국에 와서 근무하거나 혹은 일방이 중국에서 근무하고 기타 일방은 임시 중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혼인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들이 '중국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수속 관련 몇가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구비하면 중국 혼인법에 부합되므로 혼인수속을 할 수 있다. 국제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 소속 국가의 기본법률이 국외 혼인수속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 당사자는 종교 의식대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혼인수속을 책임진 부문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국가간 조약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동등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쌍방이 본국의 중국주재 영사관에서 거친 혼인수속은 중국에서도 유효하다고 승인한다.

국제이혼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통칙'인데, 이 법의 제147조에 의하면, 이혼은 이혼건을 접수한 법원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1993년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외국적에 가입한 중국인 포함)이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거치고 중국 내에서 중국국민과 결혼하고자 할 때 이전 혼인관계에 대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인민 법원에서 승인한 후에 다시 혼인수속을 거칠 수 있다. 외국법원에서 거친 이혼 판결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은 별도의 시간 제한이 없다.

다. 외국인 출입국관리

외국인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법률로는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방법”과 “구체실행방법” 및 2000년도에 발효된 “외국인 입국비자 및 거주수속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려면 중국의 외교부 대표기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지정한 기타 관계기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는 국무원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은 중국정부에서 지정

한 기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한 특수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측에서 임시로 급히 전시회에 요청한 경우,

둘째, 중국 측 요청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정식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셋째, 계약에 근거하여 출입국 상품검사나 계약 검수에 참가하는 경우,

넷째, 요청에 근거하여 설비 가설이나 공사를 서둘러 수리해야 하는 경우,

다섯째, 중국측 요청에 근거하여 클레임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여섯째, 중국측 요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컨설턴트(consultant)를 제공하는 경우,

일곱째, 중국측 요청에 근거하여 비자신청이 비준된 후 중국측 동의를 거쳐 임시로 비자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

여덟째, 환자의 병세가 위급하거나 후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아홉째, 직접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인원이 불가항력 원인으로 24시간 내에 원 비행기로 출국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기타 교통공구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열째, 요청받은 인원이 시간이 촉박하여 외국주재 중국기구에 가서 비자 신청할 사이가 없고 또한 항구에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관련 부서의 편지나 전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비자신청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입국한 뒤 호텔이나 친구택에 머물 때 반드시 숙박등록 수속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이 영빈관, 호텔이나 여관, 및 기타 숙박시설 혹은 학교 등 기업과 비영리 부문과 기타 중국기구내에 주숙할 경우 반드시

유효 여권 혹은 거류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임시 숙박수속을 거쳐야 한다. (비개방지역에서는 여행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의 자택에서 거주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이 도착하여 24시간 이내에 중국공민이나 본인이 숙박자의 여권, 증명서류와 숙박자의 호구부를 가지고 당지 공안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임시숙박수속을 거쳐야 한다. 농촌일 경우 72시간 이내에 당지 파출소나 호적사무실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이 중국주재 외국기구나 혹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 주택에 머무는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숙박자의 유효여권이나 거주 증명서류를 가지고 당지 공안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임시주숙수속을 거쳐야 한다.

넷째, 중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택을 떠나 임시 기타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숙등록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5분 외국인이 이동성 주숙공구내에서 임시 거주할 경우 반드시 24시간 내에 당지 공안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이동성 주숙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기구나 개인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당지 공안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기타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은 위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경고, 벌금, 구류, 거류자격 취소, 거주기한 단축, 정한 시일 내에 출국 혹은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구류로 대체할 수 있다. 불가항력 원인에 근거하여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기타 세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음의 처벌규정에 관한 것이다.

첫째, 비법으로 출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민폐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제정한 기일내에 출국, 혹은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엄

중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구성되면 형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둘째, 비법거주자는 경고처분 혹은 매 비법거주일마다 500원을 벌금하며 벌금액수는 최고로 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혹은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거류처분을 추궁한다.

셋째, 비법(불법)취직과 비법고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① 비법으로 취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직을 중지시키고 동시에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추궁하며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시일 내에 출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사로이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 고용 관계를 중지시키며 동시에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추궁하며 고용했던 외국인을 송환하는데 필요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도록 한다.
- ③ 비준을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 개방하지 않은 지구에 여행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나 인민폐 500원 이하의 벌금을 추궁할 수 있으며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시일 내에 출국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주숙 등록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나 혹은 50원 이상 500원이하 의 벌금을 추궁할 수 있다.
- ⑤ 증서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나 500원 이하의 벌금을 추궁하며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시일 내에 출국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위조 혹은 글자를 지우고 고쳐쓰거나 양도 혹은 증진이나 비자를 비법적으로 매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민폐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추궁하거나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추궁하거나 제정한 시일 내에 출국하게 하거나 엄중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⑦ 비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비법으로 거주하는 자 혹은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거류심사를 할 수 있다.
- ⑧ 상기 각종 벌금과 구류처분은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방법을 위반하도록 협조 혹은 조성한 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처분 혹은 구류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범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다음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① 증언 청취: 6,000원 이상의 벌금을 당한 자는 증언청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재심: 처분받은 자가 벌금이나 혹은 구류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처분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 결재기관이나 혹은 한급 높은 공안기관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급 높은 공안기관은 상고를 접수한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최종결재를 해야 하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에 상고하지 못한다.
- ③ 소송: 처분받은 자가 벌금이나 혹은 구류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처분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종교설교관련

중국에서 종교관련 규정을 보면, 2004년 7월 7일 국무원에서 통과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종교사무조례’에 의하여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종교에 대한 제약의 요소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 종교단체의 설립과 운영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과 취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종교단체 관련규정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종교단체는 국가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종교내부출판물을 인쇄할 수 있으며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출판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조건이 부합되면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

(2) 종교관리원

종교관리원은 종교단체의 인증을 거쳐 현급이상 인민정부종교 사무부문에 등록수속을 거친 뒤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의 주요관리직을 담당하거나 이임할 경우 본 종교의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친 뒤 현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서의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3) 종교활동장소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종교활동장소의 설립 목적이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당지 교민들이 늘 집체적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요가 있어야 한다.

셋째, 종교활동을 책임지고 집행할 종교관리원 혹은 본 종교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인원들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장소의 질서가 합리하고 주변지역의 기타 실체나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는 당연히 민주관리를 실행해야 하며, 종교관습에 근거하여 공민들의 기부를 접수할 수 있으나 강박적으로나 균등하게 할당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비종교단체나 비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며 종교적인 기부도 접수하지 못한다. 종교활동장소내에서는 종교 용품, 종교예술품과 종교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로 등록되어 있는 사원, 도교의 사원, 이슬람교 사원, 교회당 등에서는 국가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종교내부출판물을 인쇄할 수 있다. 종교단체, 사원이나 교회당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은 대형로천 종교조상을 건조하지 못한다.

(4) 종교재산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합법적으로 소유하였거나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기타 합법재산, 수익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소유한 건축과 사용하는 토지는 응당 법대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토지관리부문에 신청 등록하고 소유권과 사용권증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재산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수속을 거쳐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외 조직이나 개인의 기증을 받게될 경우에는 기증을 반드시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종지와 부합되는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건축과 거기에 소속되는 종교관리원들의 생활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저당잡히거나 투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난민(難民) 인정

난민에 대한 인정 표준은 주로 ‘난민에 관한 조약’⁵³ 및 1967년 ‘난

⁵³ 중국 정부는 1982년 9월 24일에 가입서를 교부하여 동년 12월 23일부터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공약 가입시 제14조항 뒤 부분에 법원에 출석하는 권리방면에서 상주국 국민의 대우를 향유할 수 있

민지위 의정서⁵⁴에 체현되어 있다. 1951년 ‘난민지위 조약’과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의 규정에 의하면, 난민은 두 부분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부분은 국제연맹 주최하에 체결된 각종 협의, 공약, 의정서 및 국제난민조직에 의하여 인정된 난민이며, 다른 한 부분은 종족, 종교, 국적 혹은 어떤 사회단체 소속으로 된 자, 모종 사회·정치적 견해 등 원인으로 박해를 받아 국외로 망명 혹은 상주 거주국외로 망명하여 본국 혹은 상주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난민 중에서 전자에 속하는 자는 난민의 지위를 계속 보유한다. 후자에 속하는 자는 새롭게 난민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되 반드시 조약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박해를 두려워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국 혹은 상주국 외에 거주하는 자되 돌아갈수 없거나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규정에 대하여 중국의 국내법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7. 財產權 保護

가. 不動產(土地·建物)賣買

(1) 外國人에 對한 保護問題

국가간의 교류가 긴밀하게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보호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 경제 통상분야의 발전과 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노력에 따라 이 분야에 관계되는 외국인의 활동 및 왕래가 주요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

다고 제출하고, 동조약 제16조 제3항, 즉 예술권리와 공업재산 방면에서 상주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고 제출하였다.

⁵⁴ 중국은 난민조약의 난민정의를 수정하여 가입하였다.

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통일적인 법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그에 대한 국제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이란 내국인이 아닌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내국인이란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주권과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속에서 국가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법적지위를 확정할 경우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요소는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제조약의 의무 사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둘째, 국제법의 기본원칙 및 이와 관련한 국제관례를 준수해야하고, 셋째, 당시의 국제관계와 본국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각국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문제 중에서 외국인의 지위문제는 주로 외국인보호의 최저기준문제가 일반적인 공통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보호의 최저기준문제란 외국인을 대우하는데 있어서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 기준문제이다. 각 국가마다 발전정도가 다르고 체제가 다른데다가 일부지역에서는 정치 변혁이 빈번하여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 기준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가 있다. 내국민대우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으로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⁵⁵

외국인의 지위문제는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출입국문제, 동산·부동산 소유문제, 자본이동문제, 국제노동 이동문제,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장문제, 외국인의 대우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상기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관련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⁵⁵ 柳炳華 외, 『국제법 I·II』 (법문사, 2002), pp. 622-624.

(2) 中國에서의 土地賣買

중국의 소유권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란, “민법통칙”(民法通則)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가 법률에 기초하여 자기의 재산을 점유·사용·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즉, 소유권을 물건에 대한 포괄적 지배권으로 파악하고 소유권의 주체에 따라 국가소유권, 집단소유권, 개인 소유권으로 나눈다.

중국의 “헌법” 제6조, 제13조에서는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 소유인 국가소유와 집단소유에 속하고, 개인소유는 합법적 소득, 저축, 가옥 및 그 밖의 합법적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민법통칙” 제5장 제1절에서는 소유권 및 소유권에 관계되는 재산권을 경영권, 사용권, 도급경영권, 채광권, 상린권 등의 물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중국의 토지소유권(사용권)에 관하여 중국 “헌법”과 “토지 관리법”(土地管理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종류에는全民所有制(全民所有制)와 농민집체소유제(農民集體所有制) 토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 市區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농민들의 집체소유일 뿐만 아니라 택지·자류지·자류산도 농민들의 집체소유에 속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토지소유권을 국가에 한정하여 귀속시키고 있으며,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분류하여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와 저당권 설정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헌법과 “민법통칙”(民法通則)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 임대, 저당 또는 그 밖의 형식에 의한 일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거래는 없고 단지 토지사용권의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또한 토지의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등기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공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헌법수정안 제10조 제4항에서는 “토지사용권을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년에 제정한 “성(省)진(鎭)국유토지사용권매출과 양도에 관한 잠행규정”(中和人民共和國省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讓渡暫行規定)에서도 “국유토지사용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토지관리법에서는 “토지사용권은 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유상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국은 이념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은 부인하고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를 취하지만 토지사용권 설정, 유상토지사용권 실시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또한, 중국법률에서는 “房地不可分離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불가분리원칙을 말한다. 즉, 토지의 저당·임대·양도시 그 지상물도 함께 저당·임대·양도되고, 가옥을 저당·임대·양도할 경우에는 그 가옥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도 함께 저당·임대·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의 토지사용권은 반드시 유상형식을 취하여야 토지 취득 방법에 따라 그 주체와 내용을 3종류로 규정해 놓고 있다. 첫째, 국가의 관리기관인가 또는 토지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둘째, 토지사용권설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토지사용권을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중국에서의 토지사용권 설정은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일정기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그 대가로 국가에 토지사용권 설정금을 납부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계약에 의해 체결한다.

토지사용권을 설정할 기획, 용도, 기간, 기타 조건은 성(省)·진(鎭)의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문이 도시계획 및 건설관리부문 및 가옥 재산관리 부문과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입안(立案)하고, 공무원이 정한 허가권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토지관리부문이 실시한다.

토지사용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각 토지소재지의 인민정부의 토

지관리부문이 토지사용자와 체결하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중국내외 회사(회사),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이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중국에 상무대표부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사용권의 피설정자가 될 수 없다는 제한과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합자·합작·독자부동산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부동산회사를 설립할 경우 우선 해당 부동산의 항목설정(立項)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즉, 먼저 투자항목을 정하고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절차와 순서는 자치구 및 직할 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가 북경에 있을 경우 북경시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공업·농업·교통, 관광·상업·금융·오락·체육, 고급주택·사무실 영역의 부동산개발과 경영에 종사할 수 있는 투자영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면 ‘補交地價’라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중외 합작·중외합자기업이 토지사용권 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때 또는 내수 상품기업을 외국인에게 넘기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토지사용권 내정가격은 토지수용비, 철거이주보상비, 7통(通) 1평비(平費)⁵⁶, 시정관련비용, 당해 토지의 예상 순이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설정자의 발언권이 강하여 특히 설정금 산정 시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토지의 사용자는 토지사용 설정금을 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불한 후 법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고 토지사용증을 받아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만약, 토지사용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의 동의 및 토지 관

⁵⁶ 7통(通)은 도로·전기·가스·용수·통신·난방 등 사회부하시설, 1평은 정지(整地)된 상태를 말한다.

리부문과 도시계획부문의 허가를 받고,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 설정금을 다시 조정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유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취득권자는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증여·임대·저당설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양도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다시 이전하는 행위이며 매각·교환 및 증여를 포함한다.

토지사용권 설정기간은 각 토지의 용도에 따라 최고관리기간을 달리하는데 주택용지는 70년, 공업용토지는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 종합적이거나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50년으로 하며, 일부 지역은 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이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 지방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한을 의도적으로 늘려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이 중국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의 토지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토지사용연한은 기존의 토지사용권출양(出讓) 계약중에 정한 사용연한에서 양도자가 이미 사용한 연안을 공제한 후의 남은 연한이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토지사용권을 매매하는 방법 외에 임차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임차방식에는 단기임차방식과 장기임차방식이 있다.

단기사용 또는 임시건물 건축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단기임차방식을 취하고 단기연한은 중국실정상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면 위의 건축물, 구축물을 건축한 후 장기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임차방식을 취하고 구체적인 임차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단, 장기임차인 경우 최장임차기한은 동일한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최고 출양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약정한 임대료를 완납하고 개발과 건설을 완성한 후 토지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약정에 따라 잉여기한 내에 임차한 토지사용권을 재임대·재양도 또는 저당할 수 있다.

또한, 토지사용권 임차기한이 만료된 후 임차인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중국정부가 당해 토지를 회수할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관리부문은 가급적 연장신청을 허가하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연장신청을 하였지만 불허한 경우 임차한 토지사용권은 중국정부가 무상으로 회수하는데 이때 지면 위의 건축물, 구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3) 사유건물(私有房屋)에 對한 賣買

중국에서도 사유건물(私有房屋)에 대한 매매와 임대가 허용된다. 단, 여기에서의 매매대상은 토지매매와 마찬가지로 사유건물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이에 대한 매매와 임대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에서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분류하여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와 저당권 설정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물소유권과 건물이 소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 주체가 동일하지 않아 건물소유권과 토지소유권도 원칙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소유권에 대한 권리설정방식을 서로 달리 하고 있고 또한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과 독립된 하나의 물권으로 설정하고 있어 건물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관계에서는 건물소유권만을 가진다. 그러나 ‘房地不可分離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건물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주체는 동일하다.

중국의 “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產管理法)과 “도시사유건물 관리조례”(城市私有房屋管理條例)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사유건물(私有房屋)에 대한 매매는 관련 법률과 국가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서면형식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 계약서는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와 房屋매매계약서를 포함하고 있으

며, 계약체결 후 반드시 房屋관리부문에 등록을 한 후에만 당사자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토지와 房屋사용권에 대한 등록은 중국의 현행제도에서는 토지와 房屋관리부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만약, 중국에서 사유건물(私有房屋)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신규 아파트의 분양은 원칙적으로 토지사용권 매입 후 총 공정의 30% 이후 진행시점에서 시정부에 분양허가를 신청하여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개발업자와 완성·인도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대금의 결제가 해당 부동산의 완성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구매자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제가 종료되기 때문에 건설회사, 개발업자의 인도 리스크를 구매자 및 은행이 지게 된다.

중국에서 건축중인 아파트를 전매 받는 경우 건축중인 아파트 개발업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건축중인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동산 등기기관에 ‘예고등기’(한국에서의 ‘가등기’에 상당함)를 해야 하고 이 초기의 예고등기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기관은 전매에 대한 예고등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매에 대한 예고등기가 안 된다면 아파트 완성 후에 구분소유권 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전매를 받을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확인하고 전매에 대한 예고등기를 잊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가 완성된 후에는 양수인은 이 예고등시를 본등기로 변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은 명확한 구분소유권자로서 등기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도 양도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채무가 완료되어 저당권이 말소된다든가 轉按揭⁵⁷가 되지 않으면 소

⁵⁷ 轉按揭란, 은행의 승낙을 전제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대출채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轉按揭의 경우 판매자는 자기 자금을 이용해서 사전에 저당채무를 소멸시킬 필요는 없고 이 저당채무를 구매자가 인계함으로써 구매자는 은행으로부터 용자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자 명의의 이전등기 절차를 수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사유건물에 대한 사용권의 매매와 함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產管理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임대의 방식으로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시 서면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임차 기한, 임차 용도, 임차가격, 관리책임,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소재지 부동산관리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서면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차기한에 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적절한 기한 내에 건물을 회수할 수 있다.⁵⁸

건물의 임차기한은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토지사용권출양계약”, “토지임대차 계약”중에 정한 토지사용연한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또는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된다. 또한 건물임대료 약정 시에는 가격에 토지사용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不動產 紛爭과 解決方法

중국에서 부동산(토지·사유건물에 대한 분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방법으로는 협상·조정·행정조치·중재·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이다.

중국법원은 2심 종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모두 부동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하며, 부동산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기층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할 수 있으나, 섭외 부동산 분

⁵⁸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제215조.

쟁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자체에 섭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분쟁 목적물의 규모가 비교적 크며 사건관계가 국내부동산 분쟁보다 복잡함에 따라 대부분 중급인민법원이 그 1심을 담당하게 한다.

토지분쟁은 토지법률 관계당사자가 토지관리법이 규정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하며, 분쟁의 내용에 따라 토지분쟁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토지권리 확인분쟁, 둘째 토지권리 침해분쟁, 셋째 토지행정쟁의가 있다.

3가지 유형의 토지분쟁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있는데, 첫째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귀속 또는 경계 등의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권리 확인분쟁으로서 당해 분쟁은 “토지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민정부가 당해 분쟁을 처리한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처리결정을 받은 때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재결(行政裁決)을 한다. 둘째 토지권리 침해분쟁으로서 타인이 법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침해자와 권리자 사이에 생기는 분쟁이다. 토지권리 침해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행정주관 부문에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행정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셋째 토지행정쟁의로서 상대방이 토지행정주무기관 또는 인민 정부가 한 행정처벌 등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생기는 분쟁이다. 이 경우 일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사유건물에 대한 분쟁은 주로 사유건물에 대한 소유권(사용권)양도 및 임대와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다. 사건당사자간의 건물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주로 건물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증여·유산 등이 있고, 사유건물임대로 인한 분쟁에는 임대계약효력·임대

금과 관련한 분쟁 등이 있으며, 상기 분쟁은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관련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나. 財産의 登記·登録

중국의 등기제도는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에서 토지의 등기에 관한 규정과 “도시의 사유건물관리조례”(城市私有房屋管理條例)에서 도시 사유주택의 등기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등기제도는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시행된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르다.

“토지관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집단소유토지에 대해서는 현(縣)급 인민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소유권 증서를 교부하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가 법에 따라 비농업건설용지에 사용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사용권증서를 교부하며, 임지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은 삼림법과 초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토지의 권리귀속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변경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등기 또는 소유권증서 발급이 필요 없고, 사용권 등기 또는 사용권 증서의 발급이 이루어지며 집단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등기와 소유권증서의 발급이 이루어진다.

“도시의 사유건물관리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사유건물”이란 개인소유, 수인공유의 스스로 거주하거나 임대한 주택과 비 거주용 건물을 의미한다. 사유건물은 소유자의 수에 따라 개인소유, 수인공유로 분류하고 그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사유건물은 개인 또는 수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비주거용사유건물은 주거용 이외의 사유 건물을 의미하

며 영업용 사유건물, 창고용 사유건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의 사유건물관리조례”의 제2장에 의하면 직할시·시·진(鎭) 및 진(鎭)이 설치되지 않은 현의 읍과 공업, 광업지구 내의 모든 사유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건물소재지 부동산관리기관에 가서 소유권등기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조사를 거쳐 건물소유권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건물의 현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銀行預金·貸出

(1) 中國銀行의 種類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형식의 신용활동 및 신용에 기초하여 조직된 화폐유통을 말하며, 생산, 교환, 분배와 소비의 각 영역을 연결하고, 사회생산과 재생산경제활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국개혁개방 이전의 금융체제는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금융체제를 표방하는 중국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은행제를 실시하다가 1972년 중국농업은행을 재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개혁을 시행하면서 단일은행체제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현재의 금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은행을 살펴보면,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중앙은행으로서 그 기능은 화폐공급과 신용대부자금총량을 조절하고 화폐가치를 안정 시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있다.⁵⁹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은행·중국인민건설은행은 상업성 기능을 갖는 상업 은행이며, 전문항목의 대부금실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응당 부양할 지구·분야 또는 개발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은행은 국가개발은행·중국수출입은행·중국농업개발은행이다.

⁵⁹ 한대원 외,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2), p. 462.

이외에 중신실업은행, 중국교통은행, 중국투자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중국국제신탁투자은행, 중국인민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 기구, 말하자면 각종 신탁은행, 용자임대회사, 재무회사, 이험투자 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다.

은행의 신용대부는 상품매매 가운데서의 연체지불 또는 화폐의 대부행위를 말한다. 예금은 사회조직과 개인이 화폐자금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예치하는 신용활동방식이다. 예금은 규정에 따라 구좌를 설정하고 예금을 받아들이고 내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예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예금자는 자주적으로 그 예금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에서 공무를 집행할 때 예금자의 예금을 조회·조사·동결하고 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절차와 조건에 의하여 처리한다.

대부는 국가의 대출정책과 은행의 신용대부제도에 의거하여 은행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차주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활동 형식이다. 은행대부에는 공업대부·상업대부·기본건설대부·외화 대부 등이 있다. 원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부는 상응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 중에는 차주의 생산경영상태·신용 상태·상환능력 등의 조건이다.

(2) 銀行預金

은행의 주업무인 예금업무와 대출업무가 있으며 그 중 예금업무는 은행이 일반대중·기업·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보관·예탁을 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상관없이 여권을 제시하면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은행예금은 외화 현금을 반입해서 예금을 하는 경우와 위안화 예금이 있다. 외화를 대상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외화현금예금구좌”를 개설해서 예금을 해야 하

며 국가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1982년에 공포하고 1993년에 개정한 “중국은행 외환저축정관(甲種)과 ‘중국은행 외환 저축 정관(乙種)’수정에 관한 발송통지”(中國銀行關於發送新修訂的‘中國銀行外幣存款章程(甲種)’和‘中國銀行外幣存款章程(乙種)’的通知) (이하 “통지”라고 칭함)의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통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예금주는 단위(單位)와 개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甲種과 乙種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본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외화예금업무는 중국 국내 각급 중국은행에서 담당하고, 甲種 외화예금의 예금주는 주로 각국의 대사관·영사관, 상무기구, 국제기구와 민간기구, 중국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세구역에 설립한 중외투자기업, 중국은행이 비준한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사영기업 등이며, 乙種의 외화 예금주는 중국 국내 혹은 홍콩·마카오·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동포,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화교, 단기체류 여행자, 중국 국내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상무기구·국제기구와 민간기구의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기자, 학자, 유학생 등이다.

예금의 종류에 甲種은 정기·협의·통화예금과 보통예금 4종류가 있으며, 乙種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2종류로 나뉜다. 또한 예금종류에 따라 최저예금액과 예금기간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甲種의 정기예금은 최저예금액이 인민폐 1만위안에 상당한 외화이고 예금기간은 1개월·3개월·6개월·1년·2년이 있으며, 정기예금 정액지급이고, 乙種의 정기예금은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금 기간은 1개월·3개월·6개월·1년·2년이며, 인민폐 500위안에 상당하는 외화이다.

중국에서 예금을 할 수 있는 외국화폐는 甲種과 乙種 모두 미 달러, 영국의 파운드, 독일 마르크, 프랑, 일본의 엔과 홍콩 달러로 6종류가 있으며, 중국은행에서 외국인이 은행구좌를 개설할 경우에 구좌 개설 신청서, 예금주가 서명한 사인 및 은행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

들을 제출해야 하며, “통지”에서는 또한 상기 6종류의 외화예금에 대한 임시이율을 규정해서 두고 있다.

중국 위안화 예금에는 정기, 통화, 보통예금이 있으며, 외국이라도 여권만 소지하면 간단하게 예금구좌를 열 수가 있으며, 위안화 수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原資로서 국외로부터 외화를 송금하든지 외화현금을 반입해서 위안화로 태환하는 것이 된다.

(3) 銀行貸出

중국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상관없이 여권을 제시하면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법률이 규정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담보 물건과 외화차입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행은 무담보의 부동산용자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어 “저당권 설정등기”나 “보증회사로부터의 보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용자를 실행할 수 없다.

은행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용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건의 평가액의 최대 70%까지 차입할 수 있으며, 이 범위는 담보물건의 위치, 차입한 사람의 자산상황 등 차입을 행하는 은행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기간은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다르지만 차입인의 연령은 최고 70세이고, 건축연수는 30년이며 이중 짧은 쪽이 상환 기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환기간은 30년을 한계로 한다.

중국의 “담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저당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기타 토지 정착물, 기계, 교통기관 및 운송용구, 기타 재산, 저당권설정자가 처분권을 가진 국유 토지사용권, 건물 및 기타 토지 정착물, 국유기계, 교통기관 및 운송용구, 기타 재산, 저당권설정자가 경영수탁 받은 황무지의 토지 사용권으로 경영위탁자가 저당권설정에 동의한 것, 저당권설정이 법에 의해 인정되는 기타 재산이 있다. 한편,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으로는 토지소유권, 집단소유토지사용권,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명

확하거나 다툼이 있는 재산, 법에 의해 압류된 재산 등이 있다.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화차입도 가능하다. 단 원칙적으로 중국내 은행은 외화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외자계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외화차입의 변제도 당연히 외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변제에 필요한 외화를 준비해야하며, 만약, 건물임대수입 등 일정 수입이 위안화인 경우 이것을 외화로 교환하려면 중국에서 매월 세금을 내고 그 납세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현지의 사무 대행인이 필요하다.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수입증명서, 은행과의 저당권설정계약서, 용자계약서, 이외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이며, 만약 피대출자가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여권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재산(채무포함)을 취득하면 명의 여하를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인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계약을 대행할 경우 피대출자 국가의 공증사무소와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내에서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은 기존에는 월 수입액의 70% 까지 해주었으나 2004년 5월부터는 신용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 대출금액의 상환액은 월 수입액의 50%이하의 경우가 많다.

라. 中國法院에서의 民事訴訟 提起

(1) 中國人民法院의 特徵과 權限

중국“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권력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 대회를 통해서 그 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국인민 대표대회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등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감독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의 행정기관은 인민정부를, 재판기관은 인민법원(人民法院)을, 검찰기관은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을 각각 말하는 것이며 이들 3기관은 상호 대등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헌법 제126조에서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 및 집행당인 공산당과의 관계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중국법원은 심급 및 관할하는 사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의 4급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외에 군사법원 등과 같은 전문인민법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심급 제도는 한국의 3심제와는 달리 민사, 형사재판을 불문하고 2심 종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법원에서의 재판절차는 크게 기소→입안→개정심리→법원조정→판결→상소→집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⁶⁰

중국재판부는 합의정과 단독판사(獨任審判)로 나뉘어져 있으며, 합의정이란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하는 제도로서 인민법원이 제1심 민사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판하며, 제2심의 경우에는 언제나 합의정에서 재판한다. 단독판사라 함은 1인의 법관이 사건을 단독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하며,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법관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소송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합의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⁶¹ 이 점은 단독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부재판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다른 점이다.

⁶⁰ 譚兵, 『民事訴訟法』(法律出版社, 2001), p. 343.

⁶¹ 위의 책, p. 393.

또한, 중국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위원회(審判委員會)라는 제도이다. 중국의 법원조직법에서는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중국의 모든 법원에는 재판위원회가 상설되어 원장의 제청으로 중대한 사건이나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본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처리한다. 재판위원회는 법원의 행정기구가 아니고 일종의 재판기구로서 합의정이나 독임법관과 같이 순수한 재판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를 통해 평결에는 다수결원칙을 적용하는 혼합적 기능을 가진 독특한 기관으로서 직접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에 따라 합의정 등 재판부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점에서 제소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상설자문 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涉外事件에 對한 處理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는涉外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涉外민사소송이란 중국영역 내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으로서涉外민사법률관계 요소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⁶²

“涉外민사법률관계”란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민사법률관계에 있는 일방 혹은 쌍방의 당사자가 외국인·무국적자·외국 법인의 경우, 민사법률관계의 목적물이 외국의 영토에 있는 경우, 민사권리·의무관계의 발생·변경 혹은 소멸의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⁶³ 즉, 중국에서 외국인·외국법인 및 무국적자가 중국 법원에 소송(민사)을 제기할 경우涉外민사법률 요소를 지닌涉外민사사건이라 하고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절차를涉外 민사소송절차라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취한다.

⁶² 위의 책, p. 492.

⁶³ “민법통칙” 제142조.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중국은 4급2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개의 섭외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중급인민법원이 1심법원이 되지만 섭외사건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큰 도시에서는 지방인민법원이 1심 법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의 심리기한에 있어서는 국내사건의 경우 1심의 심리기한은 6개월이며 법원장의 비준으로 6개월 연기할 수 있고 2심은 3개월 내에 심리를 종결해야 하나 섭외사건의 경우에는 상기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국에서 외국인의 소송지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⁶⁴ 외국인이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능력을 갖춘 외국인이어야 한다. 외국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중국법률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중국영토에서 행한 민사활동은 만약 그의 본국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 능력이 없으나, 중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 이 사람은 민사행위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이 중국영토 내에서 민사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중국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⁶⁵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42조에서는 외국인의 소송지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무국적자·외국기업과 조직이 인민법원에 기소·응소를 할 때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무국적자·외국기업과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혹은 기타 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탁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이외로부터 우송되었거나 위탁하여 보낸 수권위탁서는 소재국의 공정기관의 증명을 거치고, 또한 그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 인민공화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혹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당해 소재국 사이에 체

⁶⁴ 중국“민사소송법” 제8장 제142조~150조.

⁶⁵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의 약간의 문제를 시행 관철함에 있어서 의견(시행)” 제179조~제181조, 제184조.

결한 관련조약 중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지닌다.

섭외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확정방법은 “민사소송법” 제4편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국내민사사건 관할권 확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섭외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한다.

중국“민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섭외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주소 혹은 상거소가 중국일 경우, 피고의 국적이 상관없이, 피고 주소지 혹은 상거소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중국민사소송법에서는 지역관할을 섭외민사사건의 일반관할로 확정하고 지역 관할의 확정 기준을 일반적으로 피고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피고인인 섭외민사사건에서 피고소재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피고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상거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피고인섭외민사사건에서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중국“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서는 계약 또는 재산권과 관련된 섭외사건의 당사자는 합의 선택 및 분쟁과 실제로 관련된 지역의 법원이 사건을 관할 심리할 수 있게 서면 형식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중국법원을 선택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의 전속관할 관련규정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하나의 법원을 선택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관할권 선택에 관한 협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법원 관할권을 선택한 경우, 선택 관할권의 협의는 무효가 된다.⁶⁶

“소송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섭외민사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응소하는 동시에 답변을 하며,

⁶⁶ 1992년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약간의 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시행) 제 24조.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쌍방 당사자가 관련 분쟁사건에 대해 중국법원의 관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섭외사건일 경우, 부동산이 중국경내에 있으면 중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지며, 재산상속분쟁과 관련한 섭외 사건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주소지 혹은 주요 유산이 중국 경내에 있을 경우 중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중국경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중외합작자연자원개발 탐사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은 중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섭외 도메인 네임 분쟁관련사건은 사법해석에서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해 사법해석에 따르면, 섭외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권리침해 사건의 권리침해 행위지가 중국일 경우 중국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또한 7종류의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송달영수인 소재지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또는 공동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한다. ②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달한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송달영수인에 대하여 송달영수인 소재지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한다. ④ 송달 영수인이 위탁으로 대신 송달을 받을 권한이 있는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⑤ 송달영수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구 혹은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기구의 분점, 업무 대행인에게 송달한다. ⑥ 송달영수인의 국가 법률이 우편송달을 허용할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송달한 날로부터 만 6개월 동안 송달수령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단 각종 정황으로 보아 이미 송달된 것으로 인정할 때에 한하여 기간만료일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상술한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하며, 공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중국인민법원이 내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의 집행에 관해서 인민법원이 한 법률적효력이 발생한 판결, 製定의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집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그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에 그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8. 知的財産權의 保護

가. 中國의 知的財産權保護에 關한 概觀

지적재산권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분야에서 그가 창조한 정신적 성과물에 관하여 법에 의해 향유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지적재산권의 객체인 지적성과물은 과학·기술·문학·예술 등 분야에서 창조된 지적활동의 결과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공업설계·실용신안·상표 및 문학예술의 성과와 저작 등을 포함한다.⁶⁷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산권’(知識產權)이라 칭하며, “사람의 지적창조물과 공상업적 표지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유형은 저작권(인접권 포함)·특허권(공업품 의장보호 포함)·상표권·발명권·상업비밀권·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식물신품종권·상호권(공장명칭)·원산지명칭권(지리표지)·특수표지권·상품특유명칭권·상업외관권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지적재산권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⁶⁷ 한대원 외,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2), p. 265.

로는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중국도 이에 관한 국가간 또는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국제공약·조약 및 협정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독점성·배타성을 가진다. 둘째, 한 국가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그 국가의 국경 내에서만 효력을 지니며 다른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면 국제조약 및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 취득 절차를 거치거나 타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역성을 가진다. 셋째,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⁶⁸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의 근거가 되는 1982년 “헌법” 제20조·제22조과 일반법으로는 “민법 통칙”이 있다. “민법통칙” 제5장 제3절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유형을 저작권·특허권·상표권·발견권·발명권·기타 과학 성과권 등 6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의장특허는 특허권에 속하고, 과학기술진보, 합리화 건의와 기술개선은 기타 과학 성과권에 포함된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프랑스와 같이 통합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상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 저작권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의장특허를 특허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 및 그 주무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행정법규, 부문규장,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司法解釋)이 있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 조례”,

⁶⁸ 張乃根, 『中國知識產權法』(法律出版社, 1999), pp. 2-4.

“식물의 신품종보호조례”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법 이외에 국제협력력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WTO의 “TRIPS” 포함된 15개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상태에 있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를 통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대부분 사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벌금부과 조치와 같은 행정적 처벌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개별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관리하며 상표 등록은 상표권을 관리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국에서 담당한다.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가저작권국’에서는 권리침해의 정지 명령, 위법소득의 몰수, 권리침해에 관계한 상품 및 도구의 몰수, 벌금 등의 처벌수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는 사법경로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국은 각급 법원에 전담부를 설치해서 관련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일부 성·직할시의 인민법원,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경제특구 중급법원의 지적재산권 심판정(審判庭) 또는 유관 심판정에서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정을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사법적 보호의 범위는 특허·저작권·저작권 인접권 및 부정경쟁방지의 권리 등 지적성과물과 관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권과 인격 권리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심판정은 기술양도·기술합작 등 각종 기술 계약분쟁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나. 中國의 外國人 知的財産權에 對한 保護

(1) 中國의 外國人 知的財産權에 對한 立法的 保護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과정을 통해 민사 주체가 지적재산에 대해 향유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법률로는 “상표법”(商標法), “특허법”(專利法)과 “저작권법”(著作權法)이 있다. “상표법”은 1982년 제정된 후 1993년 1차 개정을 거쳐 2001년 10월 27일에 2차 개정 후 시행되고 있으며, “특허법”은 1984년 제정되어 1992년 1차 개정에 이어 2000년 8월 25일 개정·시행하고 있고,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10년 만인 2001년 10월 27일 개정·시행되고 있다. “상표법”,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개정된 주요원인은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WTO의 정식회원국이 되면서 3개의 법률규정이 WTO의 “TRIPs”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 시킨 것이다.

중국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을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의장특허를 통합하여 특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유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고 있다.

중국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이란 중국내에 항구적 거주지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말하며, “특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 상주 혹은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혹은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당해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 혹은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혹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의 조직이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가입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칭함)에 따라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은 항구적 거주지 또는 영업 장소의 유무를 불구하고 특허권의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중국특허법에서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의 조직이 특허 출원을 신청할 경우 ‘국내우선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파리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 중의 ‘국제우선권’을 적용한 것으로 만약 특허출원인이 어떤 체약국에서 첫 출원한 후 규정한 시간 내에 기타 체약국에 출원하면 출원인은 첫 출원 신청일을 상기 출원일로 요구할 수 있다. 즉, 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심사시에 첫 출원일을 신규성과 창조성을 판단하는 시간기준으로 하는 것이다.⁶⁹

중국에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당국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의장은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특허행정기관에 동일 주제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해당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출원할 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3개월 이내에 첫 출원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국“특허법” 제19조에서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의 조직에 대한 중국에서의 특허출원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에 상주 혹은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는 국무원 특허행정기관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즉, 중국에 주소지 또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중국 지식산업권 내의 특허국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인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 관련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이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⁶⁹ 張乃根, 『中國知識產權法』(法律出版社, 1999), p. 29.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무원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반드시 위임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상표 등록에 관해 “상표법” 제17조에서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 상표를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의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대등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과 한국이 모두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한국인·한국기업은 상표등록의 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상표의 등록신청도 본 규정에 의거해 가능하다. 특히 외국 상표의 등록은 “파리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신청할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과 같이 국가가 인가한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즉 상표관리기관인 공상행정관리부문 상표국에서 지정한 상표대리 기구에 위임하여야 한다. 상표권 등록 신청시 당사자가 위임한 대리기구가 상표등록 또는 기타사항을 처리할 경우 대리기구는 대리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의 국적을 기재해야 하며, 동시에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 및 기타 문서는 반드시 공정·인증수속·대조 등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저작권보호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2001

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구법에 비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하나로 보고 과거 외국인 저작권 보호수준이 국내저작권 보호 수준을 능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저작권 취득에 있어 “외국인·무국적인 작품인 경우 그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거주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향유하는 저작권은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새로이 추가 규정하였다.⁷⁰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무국적인의 작품을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경우 중국의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며 작품 최초 출판일부터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 이외의 곳에서 먼저 출판한 후 30일 내에 다시 중국에서 출판될 경우 해당 작품이 중국에서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또는 공동으로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최초로 출판되었을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동시에 출판될 경우도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문학예술작품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이하 “베른조약”이라 칭함)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중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외국의 저작물의 범위를 베른조약과 “세계저작권조약”(이하, “UCC”라 칭함)의 체약국을 포함·확대한 것이다.

이외에, 2001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에서도 외국인·무국적인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취득과 법적보호에 대해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가 맨 먼저 중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자 소속국 또는 상주국 중국과 체결한 협약

⁷⁰ “저작권법” 제2조.

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향유하는 저작권도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중국에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등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는 국가저작권국으로 당해 기관은 중국저작권보호센터를 소프트웨어 등록기구로 인가하며,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국가저작권국의 기준을 거쳐 지방에 등록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中國의 外國人 知的財産權에 대한 行政的 保護

지적재산권의 행정보호는 중국지적재산권보호의 특색으로 국가 행정기관이 중대한 지적재산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이에 대해 가하여지는 행정처벌 또는 권리자에게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행정 행위이다. 중국의 외국인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는 여러 주무기관에서 분야별로 분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저작권국’, ‘세관총서’ 및 각 지역의 세관, ‘국가품질기술감독총국’ 등이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 업무, 컴퓨터직접회로의 배치설계관리업무와 섭외지적재산권 업무를 거시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특허국은 특허법에 근거하여 중국특허출원의 심사비준업무를 담당하며, PCT관련 특허 국제출원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각 지역의 각급 지적재산권국은 당해 행정구역의 특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특허권의 침해에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있다. 직접침해는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간접침해는 제3자의 일정행위가 특정발명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유도·방조하는 행위를 말한다.⁷¹

중국에서의 직접침해는 특허법과 실시세칙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

⁷¹ “특허법” 제11조.

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특허(발명·실용신안 및 의장특허)를 생산경영목적으로 그 특허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허락·판매·수입하거나 당해 특허방법을 사용 또는 그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 허락·판매·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반면, 중국에서는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의 관철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중의 “타인의 침해행위의 실시를 교사·방조한 자는 공동 침해자로 하고 연대민사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서는 특허사무관리 부서는 직·간접특허권리 침해행위의 당사자에게 민사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침해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인민폐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청구에 기초해 특허권침해 배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특허권의 침해자가 특허관리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국에서 상표의 등록관리와 유명상표의 보호업무, 상표분쟁업무의 처리, 상업비밀침해행위와 상표위조, 불법복제 등의 관련 업무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부정경쟁 관련 업무의 감독, 기업명칭 및 상호의 등록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의 상표국은 상표·유명상표와 관련한 업무를 특별히 주관하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분쟁업무를 책임지고, 공평교역국은 상업비밀침해행위와 상표위조, 불법복제 등 기타 부정경쟁행위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기업등록국과 외상기업 등록국은 국내외 기업의 등록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중국의 각성·자치국·직할시행정공상관리국, 현급 행정공상관리국 및 파견사무소 등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상표보호 관련 업무를 각각 관리한다.

중국 “상표법” 제52조에서는 상표권침해 유형은 첫째, 상표 등록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상표 또는 유사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경우. 둘째,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셋째,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장을 위조 또는 허가 없이 제공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 없이 제조한 상표의 표장을 판매할 경우. 넷째, 등록상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상표를 변경함과 동시에 그 변경한 상표관련 상품을 다시 시장에 투입할 경우. 다섯째,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끼친 경우로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현금 이상의 국가공상행정관리 국에 그 침해행위에 대한 심사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 관리국은 침해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및 등록상표 표장위조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공구를 몰수·폐기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상응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조정권한을 갖고 있다.⁷² 즉, 현금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상표국은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종래 상표 침해사건에 관하여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을 새로 개정된 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국은 상표침해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건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상표침해상품과 이를 전문적으로 제조·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몰수·소각폐기할 수 있고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불법영업액의 50% 이하 혹은 불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또한 공상행정관리국이 행정처벌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의 책임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⁷³

⁷² “상표법” 제54조~제55조.

중국정부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국무원의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으로 국가저작권국을 설립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포함한 전국의 저작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성·시급에만 저작권국 혹은 저작권처를 설치하여 당해 행정구역 내의 저작권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관리와 지방관리로 분류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저작권국은 저작권관련 법률·법규를 시행하고 저작권 행정 관리 관련방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저작권 불법침해행위 사건을 조사하며, 섭외대리기구의 설립을 비준하고 그 업무를 감독·지도하고, 저작권 섭외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의 저작권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지방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 설립한 저작권국 혹은 저작권처는 지방의 행정구역내에서 저작권법률·법규의 실시·집행을 책임지고 해당 지역내의 저작권행정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며, 해당 지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관련 권리를 침해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내에 저작권 거래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의 “저작권법” 제47조와 “저작권법실시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상황에 따라 침해를 중지하고 악영향을 제거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민사상의 불법 행위와 공공이익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권리 침해 행위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은 불법소득의 인민폐 3배 이하로 처할 수 있고, 불법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민폐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에는 위와 같은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이 침해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⁷³ “상표법” 제53조.

이외에, 약품관련지적재산권의 행정보호와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품질기술감독총국 등이 있다.

(3) 中國의 外國人 知的財産權에 對한 司法的 保護

(가) 特許權의 경우

중국에서의 외국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는 “TRIP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상표권·특허권·상업비밀·직접회로설계·식물신품종·부당경쟁 등이다. 특허권은 발명·의장 및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도 포함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에 의해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침해정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은 침해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중지는 제품의 제조·사용·판매를 중단하거나 또는 특허방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과 그 특허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의 사용·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⁷⁴

특허권 침해중지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관리기관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이고, 특허관리기관이 침해중지명령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서 수령 일로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지명령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침해중지 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⁷⁵

⁷⁴ “특허법” 제57조.

⁷⁵ “특허법” 제62조.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손해는 특허권자의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또는 불법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특허관리기관은 분쟁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손해입증이 곤란하여 사법 해석의 규장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특허권 침해자가 특허권을 침해하여 얻은 전부의 이익, 특허실시 허가에 부족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가액 중에 선택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허법의 규정은 손해액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확정하고 손실확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허사용료의 2배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⁷⁶

지적재산권소송은 민사소송에서의 특수한 유형으로 중국에서는 특정법원에서만 접수된다.

특허권침해에 대한 분쟁의 1심 법원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정부 소재지의 중국법원, 각 경제특구의 중급인민법원 및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비교적 큰 도시의 중급인민법원이다. 기층인민법원과 기타 중급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또한,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이 필요에 따라 법원에 침해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본소를 제기해야 하고, 만약 15일 이내에 본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전처분을 해제한다.⁷⁷

이외에, 특허를 도용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죄질이 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관제(管制)형,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특허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공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이나 인민폐 5만원 이

⁷⁶ “특허법” 제60조.

⁷⁷ “특허법” 제61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제3항.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허제품이나 특허방법을 사칭한 경우 특허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⁷⁸

(나) 商標權의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특허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상표권법에서는 법원에 제소하거나 상표국의 행정조치와 조정절차에 의한 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표출원 기각에 대한 재심 청구 및 소송에서는 출원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이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상표출원인은 이 같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 결정 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만약 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⁷⁹

상표이의 신청은 예비판정에 난 상표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상표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심사·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 및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심단계에 있는 상대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토록 통지해야 한다.⁸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침해제품의 생산·판매·정지, 등록

⁷⁸ “형법” 제216조, “특허법” 제58조.

⁷⁹ “상표법” 제27·제28조, 제32·제33조.

⁸⁰ “상표법” 제33조.

상표의 제조·판매정지,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의 사용금지 등에 대한 침해정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즉시중지, 손해배상의 명령, 당해 범법행위에 사용된 재산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반환, 벌금부과 등을 결정한다. 만일 당사자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권은 특별히 소송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경제심판정이 사건을 처리한다.⁸¹

당사자가 상표권의 침해중지명령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침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로 인한 침해의 경우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침해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배상면제조항을 상표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⁸² 또한 형법에서는 침해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먼저 당사자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또는 서면의 중재합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합의가 없거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을 경우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제소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저작권법” 제46조의 규정에서는 저작권침해 행위유형을 11

⁸¹ “상표법” 제53조.

⁸² “상표법” 제56조.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책임형식의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실제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불법소득을 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배상금액에는 권리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도 포함된다. 만약 저작권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권리침해행위의 내용, 경위들을 고려하여 인민폐 50만원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⁸³ 이외에, 저작권자의 침해행위가 있거나 침해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중지와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⁸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에서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위법소득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벌금만을 부과하며, 위법소득 규모가 현저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형법 제217조 규정의 저작권침해 복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로서 그 위법소득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⁸³ “저작권법” 제48조.

⁸⁴ “저작권법” 제49조 제1항.

9. 文物保護法

가. 概 觀

중국(대륙)은 1982년에 처음으로 《문물보호법》을 반포했다. 이 법은 제5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중국(대륙) 최초의 문물보호 문제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두 8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대륙)에서 처음으로 문물보호법이 반포된 지 20년 후인 2002년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새로운 《문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새 문물보호법은 모두 8장 80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의 수가 구법에 비해 47조나 늘어났다. 2003년에 국무원은 《문물보호법 시행 조례》를 공포하여 행정 법규의 형식으로 문물보호법의 적용에 대해 더욱 자세한 규정을 했다. 이 시행조례는 모두 8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새 《문물보호법》 및 그 시행조례가 중국(대륙)의 문물보호법 영역 중의 기본 법률 규범을 구성한다. 최근 들어 중국(대륙) 각지의 입법기관과 정부도 각각 그 지역에 적합한 《문물보호법 실시방법》, 《문물보호조례》, 《문물시장 관리방법》 등 지방성 법규들을 제정하여 문물보호 기본 법률의 보충으로 삼고 있다.

나. 外國 所在 文物의 返還

중국은 역사가 유구한 문명고국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문물 재산을 누적시켜왔다. 중국이 근대에 당시 세계의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당했었기 때문에 피침략 과정에서 문물의 유실은 불가피했으며, 또 최근에 와서 중국(대륙)의 문물 도굴, 밀수 문제가 아주 심각하여 많은 진귀한 문물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국 소재 문물의 반환에 관한 법률은 중국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중국(대륙) 현행의 유효한 문물보호 법률은 외국 소재 문물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 방면의 법률규범과 관련해서 중국(대륙)은 자신이 가입한 관련 국제 공약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가입한 외국 소재 문물의 반환에 관한 국제공약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970년 11월 14일 파리에서 통과시킨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그 소유권의 불법 양도 금지 및 방지 방법에 관한 공약》(중국 정부는 1989년 9월 25일 이 공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 통일협회가 1995년 5월에 로마에서 통과시킨 《피도굴 혹은 불법 반출 문물에 관한 공약》(중국은 1996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97년 3월 7일에 정식으로 이 공약에 가입했다)이다. 상술한 두 공약에 가입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는 페루 정부와 공약에 근거하여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공약을 관철하는 조치로 삼아 양자간 문물의 불법 반출·입을 금지 및 방지하기로 했다.

1970년의 공약의 규정에 의하면 “본 공약에 열거한 규정을 위반하고 문화재를 반출·입 혹은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속한다”, “한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타국에 의해 점령을 당해 강제적으로 문화재를 반출 혹은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마땅히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공약의 문물의 불법 반출·입에 대한 원칙적 규정으로, 문물 반환의 법리적 근거를 확립했다. 이어서, 1970년의 공약은 또 외국문물 반환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했다. ① 체약국은 반드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문화재의 소유권 양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② 본국의 주무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그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조속히 귀환되도록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③ 합법적인 소유자 혹은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유실 혹은 도난당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수리해야 한다. ④ 본 공약의 체약국은 취소할 수 없는 권리규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일부 문물은 양여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수출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만약 이 부류의 문물이 이미 수출되었다면 반드시 이 부류의 문물을 관련 국가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995년의 공약은 1970년의 공약에 비해 더욱 상세해졌다. 이 공약이 적용되는 국제적 청구에는 피도굴 문물의 반환, 체약국이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문물 수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 나라의 영토에서 반출된 문물의 반환이 포함되었다. 1995년의 공약을 주로 피도굴 문물의 반환 문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공약은 명백하게 “피도굴 문물의 보유자는 마땅히 그 피도굴 문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피도굴 문물인가에 대해서 이 공약은 “무릇 불법적으로 발굴되었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발굴되었으나 불법 보유한 문물은 마땅히 도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만 부합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도굴 문물의 반환 청구권의 시효에 대해서 중국(대륙)은 공약이 규정한 일반 소송시효인 3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피도굴 문물의 반환청구권의 최장 보호기간에 관해서 중국 정부는 이 공약에 가입할 때 75년간 보호를 해 줄 것을 성명했으며 일반적인 50년이 아니었다.

중국(대륙)이 이미 상술한 두 공약에 가입한 이상, 당연히 공약이 부여한 권리를 누리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의무도 져야 한다. 국제 공약에 근거하여 문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대륙)의 법률 중에는 상술한 국제 공약에 대해 필요한 지침을 삽입하지 않았다. 즉 문물보호법 및 그 부대규정 중에 문물의 불법 반출·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어떤 규칙을 참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의 문물보호관련 조직과 개인으로 하여금 법률 지침의 결여로 인해 관련 국제공약의 내용을 몰라서 문물의 반환 업무에 곤란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995년의 공약이 청구 국가에 대해 반드시 그 경내로부터 반출된 그 나라의 문화

보호 상의 일부 중대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혹은 이 문물이 청구 국가에 대해 특별한 문화 방면의 중요성을 가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청구 국가가 사실 혹은 법률 등을 포함 혹은 부대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문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국내의 관련 조직과 요원이 국제 공약의 규정을 몰라서 문물 반환 청구 경로의 착오 혹은 주요 증거자료의 멸실 등을 초래하여 원래 반환이 가능했던 문물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다. 文物의 國際 去來

중국(대륙)의 문물보호법은 문물의 국제 거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었다. 《문물보호법》은 제2장과 제5장에서 각각 개괄적으로 이동 불가능한 문물과 개인 소장문물의 국제 거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동이 불가능한 문물에 관해 이 법의 제24조는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양도하거나 저당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 할 수 없음도 포함된다. 제25조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비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대륙)의 법률 하에서는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국제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민간 소장 문물에 관해 이 법의 제 52조 제3항은 “국가에서 반출을 금지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양도, 임대하거나 저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대륙)의 법률이 민간 소장 문물의 국제 거래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가가 반출을 금지한 문물을 국제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어떤 문물들이 국가가 반출을 금지하는 문물일까? 이 법의 제60조의 규정을 결합하면 아래의 문물들이 반출을 금지하는 문물에 속한다.

- ① 국가 소유의 문물. 여기서 국가 소유의 문물이라 함은 이동 가능한 문물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출토된 문물을 가리키며, 국가 소유 문물 수장 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부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이 수장하고 보관하는 문물, 국가가 거두어 모으거나 구매한 문물,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물 등은 모두 국가 소유 문물에 속한다. 이러한 문물들은 국가가 외교, 문화교류 등의 수요로 인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제조직, 우호국가, 외국단체, 해외 화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의 동포에게 증여 또는 판매하거나 국가 법률의 특별 규정에 부합하여 수출을 할 수 있는 문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제 거래에 사용될 수 없다.
- ② 비 국가 소유의 문물 중 진귀한 문물. 이들 진귀한 문물은 주로 집체 소유 혹은 개인 소유의 진귀한 이동 가능한 문물을 가리키며 일급 문물, 이급 문물 및 삼급 문물이 포함된다.
- ③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한 기타 문물. 이 부류의 문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는 문화부가 반포한 《문물 수출 감정 참고규정》, 《문물 수출 감정의 표준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건국 후 이미 작고한 저명화가 작품의 반출 제한에 대한 감정 표준》 등 세 건의 규범성 문건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세 문건 중에는 어떤 문물이 수출에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문물이 수출에 사용될 수 없는 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중국(대륙) 문물의 국제 거래를 지도하는 중요한 실용적 규범이다. 지면 관계상 이 세 가지 문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무릇 법에 의해 반출이 허용된 문물은 반출 전에 모두 국가 박물관이 지정하는 문물 반출입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또 국가 박물관에서 반출 허가증을 교부받아 국가박물관이 지정한 항구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국가문화유산의 《문화유산의 감정기구와 단체의 자격 심사결정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현재 국가문화유산이 지정한 문화유산 반출입 심사결정 기구는 모두 17개로, 17개의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다. 이 17개 심사결정 기구의 소재지 항구는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유산의 반출이 허가된 항구이기도 하다.

중국(대륙)의 문화유산의 국제 거래에 대한 제한은 문화유산 거래 시장에 대한 제한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문화유산은 1981년의 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문화유산 수출의 방향은 마땅히 대외 도매로부터 국내시장에서의 소매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⁸⁵ 다시 말해 중국 문화유산의 국제 매매는 마땅히 국내 시장에서 소매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대륙)의 문화유산 거래 시장에서 외자의 진입은 여전히 장애가 존재한다. 《문화유산보호법》 제55조 제3항에서는 “중외합자, 중 외합작, 외상독자 등의 형식으로 문화유산상점 혹은 문화유산의 경매를 경영하는 경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WTO의 《1947년 관세와 무역 총협정》 제20조 “일반예외” 조항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이다.

불법적인 문화유산의 국제 거래행위에 타격을 주기 위해 법률은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국가가 반출을 금지한 진귀한 문화유산을 불법적으로 외국인에게 팔거나 증여하는 것 혹은 문화유산을 밀수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비 국가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잡히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유산 주관 부문이 개정 명령을 내리고 법률을 위반한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거래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는 또 위법 거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거래액이 1만 위안이 안 되는 경우는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⁸⁵ 1981년 10월 30일, 당시의 국가 문화유산관리국이 국무원에 제출한 『문화유산 관리의 강화에 관한 지시요청 보고서』.

라. 文物의 暗市場 去來에 對한 規制

소위 文物의 암시장이라 함은 법률이 승인하는 합법적인 거래시장 외에서 文物 거래를 진행하는 장소 혹은 합법적인 文物 거래형식 이외의 기타 형식으로 文物을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국(대륙)의 법률은 지금까지 줄곧 합법적인 경로와 형식을 통해 文物거래를 할 것을 강조하고, 文物의 암시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타격을 가하고 단속을 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1980년 5월 17일 국무원의 《역사문물의 보호업무를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에서는 “모든 역사문물은 암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981년 국가 文物국이 국무원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암시장 단속 정책을 거듭 천명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중국 정부가 암시장에 타격을 가한다는 주도적 사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다른 점은 단지 文物 거래시장과 거래형식이 발전하고 변화하여 암시장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지가 오늘날의 중국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개설한 文物 상점만이 文物을 취급할 수 있었다. 개인이 자신이 소장한 역사 文物을 팔 때는 모두 文物 상점이 가격을 협의하여 수매했다. 文物상점은 文物국에서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국가의 독점 경영을 시행했다. 文物상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文物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처럼 단일한 文物 거래시장은 20세기 90년대 이후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사건이 文物 경매제도의 도입과 文物 감독·관리 대상물품 시장의 설립이다. 文物의 경매는 文物 거래의 경로를 확장시켰고 文物 거래의 방식도 풍부하게 하여 사회 대중의 文物 수장과 유통 방식의 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했다. 한편 文物 감독·관리 대상물품 시장은 완전한 文物 취급 시장은 아니며 주로 1011년에서 1949년까지 사이의 일부 물품을 취급한다. 소위 “文物 감독·관리 대상물품”이라는 것도 역시 文物과 비文物 사이에 끼인 일부 물품들

이다. 정확히 말해 문물 감독·관리 대상물품 시장은 문물의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의 《문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문물 거래 경로에는 문물 상점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문물의 경매를 취급하는 경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혹은 공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물을 상호 교환 또는 법에 따라 양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문물 거래 경로들 중에서 논쟁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공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물의 법에 따른 양도이다.

공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물을 법에 따라 양도하는 형식과 효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한다. 한 가지 의견은 소위 “법에 따른 양도”를 마땅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지 《문물 보호법》 제53조, 54조와 55조의 규정만 가리키는 것으로 여긴다. 상술한 세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에 의해 설립된 문물 상점과 문물 경매기업만이 문물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공민이 문물을 양도하는 것도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한 “법에 따른 양도”는 공민이 자신이 소유한 문물을 경매기업에 위탁 경매하는 방식을 통해 기타 공민에게 양도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공민이 암시장에서 문물을 팔거나 사적으로 문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으로 문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그 권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⁸⁶

다른 한 가지 의견은 “법에 따른 양도”는 마땅히 넓게 해석하여 공민에게 더 큰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여긴다. 법률이 문물의 거래에 관한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문물 상점과 문물 경매기업에 부여하긴 했지만 공민이 문물을 거래하는 민사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공민이 문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소장할 목적으로 기타 공민으로부터 문물을 구매하기만

⁸⁶ 范敬直 등 주편, 『문물보호법률 지침서』 (중국: 성시출판사, 2003), p. 215 참조.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양도에 속한다. 이 관점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는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가 2002년 4월 18일에 제출한 “문물보호법에 관한 개정 의견” 중에서 초안 제48조 제3항의 “문물 매매 취급단위와 문물의 경매를 취급하는 경매기업 이외의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임의로 문물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 한다”는 규정을 “비준을 받은 문물 상점, 문물 경매를 취급하는 경매기업을 제외하고는 기타 단위나 개인은 문물의 상업적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고치자는 건의를 했던 것이다. 이 수정의견은 후에 법률에 채택되어 입법자가 문물 거래에 관한 상사행위와 민사행위를 구별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듯 했다.

상술한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암시장을 확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의견에 따르면 무릇 공민이 임의로 하는 문물 거래는 모두 암시장이고 모두 법률의 규제 대상에 속한다. 두 번째 의견에 따르면 문물의 상업적 거래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단위 혹은 개인이 문물의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것만이 비로소 암시장이 되는 것이다.

암시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행 법률은 더 명확한 구획을 하지 않았다. 각 학파의 학설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의견이 주류이고, 또한 더 권위성을 갖는 듯하다. 다시 말해 중국(대륙)에서는 현재 민간의 문물 거래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개방(더 이상 국가의 독점 경영에 국한하지 않음)을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큰 제한규정을 보류했다. 이러한 제한은 확실히 문물을 보호하고 문물의 유실을 방지한다는 고려에서 나왔지만 객관적으로는 또 민간의 물물 수장과 거래의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게다가 경매기업에 위탁하여 문물을 경매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높아서 일부 소규모 문물 수장가 등이 불법 암시장으로 전향하여 오히려 암시장의 거래가 발전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성숙되고 발달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고자 힘쓰는 목표와 결합하기에는 문물의 사적 거래에 대해 덮어 놓고 제한을 하는 것

은 이미 시의적절하지 않다. 문물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의 관리감독에도 편리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문물의 거래에 대해 부동산의 거래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즉, 등기를 문물의 물권 변동의 법정 절차로 삼는 것이다. 법률은 일정 등급 이상 혹은 일정 연대 이전의 문물의 양도는 반드시 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도가 무효이며, 이들을 제외한 문물의 양도는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문물의 양도에 대한 등기는 국가 문물행정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문물 양도의 등기제도를 통해 국가는 민간의 문물 수장의 기본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문물의 불법 거래를 통제할 수 있으며 진귀한 문물에 대해 더 유력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10. 文化事業保護法

가. 概 觀

중국(대륙)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원래의 저작권법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을 진행하여 지금은 이미 비교적 완비되고 국제 수준과 접목할 수 있는 저작권 법률제도를 건립했다. 1991년 6월 1일 공포한 《저작권법》은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24차 회의의 개정을 거쳐 다시 공포, 시행되었다. 뒤를 이어 국무원은 2002년 8월 2일 《저작권법 실시조례》를 공포했다. 상술한 두 법률은 중국(대륙)의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를 조정하는 기본 법률을 구성한다.

국제교류가 날로 빈번해 짐에 따라 발생한 외국인 저작권의 보호 문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모두 원칙적인 규정을 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

품은 그 저자의 소속 국가 혹은 일상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제조약 혹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저작권을 향유하고 중국 법률의 승인과 보호를 받으며, 또한 《베른공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 법률이 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해 제공하는 보호는 본국의 같은 종류의 저작권이 보호받는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국민대우의 원칙). 그러나 이런 종류의 저작권은 외국의 저작권으로, 그 내용과 효력은 모두 외국 법률 혹은 국제 공약에 의거하여 확정하고 중국 법률은 승인만 할 뿐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을 중국 경내에서 가장 먼저 출판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가 중국 저작권을 취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작품을 중국 경내에서 가장 먼저 출판하기만 하면 중국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효력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의 작품을 중국 외에서 가장 먼저 출판한 후, 30일 이내에 중국 경내에서 재차 출판하면 동시에 중국 경내에서 가장 먼저 출판한 것으로 보아 역시 중국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4항은 또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 무국적자의 작품을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회원국에서 제일 먼저 출판하였을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출판하였을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도 여전히 저자가 외국의 저작권을 획득하고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일종의 특수한 상황을 규정했다.

나. 外國인이 中國(大陸)에서 書籍과 定期刊行物を 出版하는 것의 法律問題

비록 중국(대륙)의 법률이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해 국제적 수준을 갖춘 보호를 제공하지만 법률 정책상의 고려에 근거하여 중국(대륙)은 출판 영역 내에서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법률 규범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대륙)의 전체 출판 관련 법률 및 관리체계를 놓고 말하더라도 세계의 주요 선진국가들 보다 훨씬 엄격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출판관련 법률은 출판활동이 마땅히 사회적 효과를 일순위에 두어야 하고,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⁸⁷ 이 조례는 또 출판물(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음반 영상제품, 전자 출판물 등을 포함)은 출판 단위에서만 출판할 수 있고 공민과 법인은 자체적으로 출판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⁸ 그리고 출판 단위의 설립은 엄격한 심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⁸⁹ 국가는 출판단위의 출판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 및 심의를 할 권한이 있다.⁹⁰

외국인이 중국(대륙)에서 서적과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외국에서 이미 출판한 서적과 간행물을 중국(대륙)에 수입해 와서 발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저술 혹은 편집한 간행물을 중국(대륙)에서 출판, 발행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의 법률적 성격과 법률 적용은 모두 차이가 있다.

(1) 外國 出版物의 收入 問題

소위 출판물의 수입은 이미 외국에서 출판되고 발행된 출판물을 중

⁸⁷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2001년 12월 12일 국무원 제50차 상무회의에서 채택), 제4조.

⁸⁸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 제9조.

⁸⁹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 제11, 12조.

⁹⁰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 제20, 21조.

국(대륙)에 수입하여 발행,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의 제5장은 전문적으로 외국 출판물의 수입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41조는 외국 출판물의 수입은 법에 따라 설립된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취급하고 그 중 신문과 정간물의 수입 업무를 경영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무원 출판 행정 부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대륙)에서 전문적으로 출판물의 수출입 경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는 주로 중국 국제 도서무역 총공사이다.

이 조례의 제44조에는 출판물의 수출입에 대한 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출판물의 수입을 경영하는 단위는 수입하는 출판물에 대해 내용 검사의 진행을 책임진다. 성급 이상의 인민 정부의 출판행정 부문은 출판물을 수입하는 경영단위가 수입한 출판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내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외국 출판물 중에 이 조례의 제26조, 27조가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수입을 할 수 없다.⁹¹

외국의 출판물이 합법적인 수입 경로를 통해 중국(대륙)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외국 법률 혹은 국제 공약에 의해 향유하는 저작권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 외국 출판물의 저작권이 중국(대

⁹¹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의 제26조는 어떤 출판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국의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 (2) 중국의 국가통일과 주권 및 영토의 완정을 해하는 것, (3) 중국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중국의 국가 안전을 해하거나 중국의 국가 영예나 이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 (4) 중국 민족의 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거나 혹은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는 것, (5)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것, (6) 중국의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 (7) 음란, 도박 및 폭력을 부추기고 범죄를 교사하는 것, (8) 타인을 모욕 혹은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중국의 사회도덕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것. 이 조례의 제 27조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은 미성년자에게 사회도덕에 위반하는 행위와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내포해서는 안 되고 공포, 잔혹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내용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륙)에서 침해(중국대륙이 수입한 저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출판물도 포함)를 받으면 저작권자는 중국의 《저작권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법원에 기소할 권리가 있고 중국 국가 판권국에 그 저작권에 대해 보호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外國 著述의 中國에서의 出版에 關한 問題

소위 외국 저술의 중국에서의 출판은 외국 저자의 작품이 중국의 출판기구에서 출판되고 또한 중국에서 발행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외국 저술의 중국에서 출판되는 것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외국의 저술이 중국에서 처음 출판되거나 혹은 중국에서 처음 출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의 저술이 이미 외국에서 출판된 후에 중국에서 출판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저자가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저자가 처음으로 출판한 국가 혹은 지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지만 이 권리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만약 출판 과정에서 번역, 개편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대륙)에서 모든 출판물의 출판은 모두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출판단위가 책임진다. 이들 출판단위에는 신문사, 정간물 출판사, 도서출판사, 음향 영상 출판사 및 전자 출판물 출판사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도서를 출판하는 것도 합법적인 출판단위와의 출판 계약을 통해 권한을 위임하여 출판해야 한다.

국가 판권국이 1995년 1월 15일에 내놓은 《외국 도서의 출판에 대한 계약 등기 진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무릇 도서출판 단위가 외국 도서를 출판(번역출판과 재판 인쇄를 포함)할 때는 마땅히 외국 작품의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이 계약을 국가 판

관국에 보고하여 등기를 해야만 한다.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판권국은 그 지역의 판권 등기 업무를 책임진다. 도서 출판 단위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권국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도서를 출판할 때도 국가 판권국이 1999년 3월 3일에 공포한 《도서출판계약 표준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작품의 저작권자의 중국(대륙)에서의 출판 사무는 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섭외 대리기구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 섭외대리기구의 설립은 국가 판권국의 심의비준을 거쳐야만 한다. 1988년 국가판권국은 첫 번째의 저작권 섭외 대리기구인 중화판권 대리총공사를 설립했다. 그 후 다시 유사한 판권대리기구를 10여 개 설립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 작품의 저작권자가 일단 중국의 도서 출판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면 출판자가 이 도서에 대한 독점 출판권을 갖게 된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저작권자는 타인이 당해 작품을 재출판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출판자의 독점 출판권은 재계약 유효기간과 계약 약정의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 문자의 원판과 수정 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독점권리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판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반드시 출판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도서출판자가 작품을 재인쇄 또는 재판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도서가 품질된 후 도서출판자가 재인쇄 또는 재판을 거절할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종지할 권한이 있다.⁹²

외국인이 중국에서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은 어려움이 극히 클 뿐 아니라 선례도 드물다. 중국(대륙)의 신문,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대한 규제는 도서에 비해 더욱 엄격하다. 신문출판서가

⁹² 《저작권법 실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서가 품질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작권자가 도서 출판자에게 우송한 두 부의 주 문서가 6개월 내에 이행될 수 없었을 때 도서가 품질된 것으로 본다.

1990년 12월 20일에 공포한 《신문관리 임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무릇 신문출판서의 심사 기준을 거쳐 등기 등록 수속을 이행하고 ‘신문 잡지 등기증’을 수령하여 ‘국내 통일 출간번호’에 편입된 신문만이 비로소 ‘정식 신문’으로, 출판 발행을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또 신문을 설립하려면 이 규정의 제10조에 따라 확실하고 영도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 주최단위와 주관부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기 간행물과 신문이 다른 점은 법률이 중외 공동 주관의 정기 간행물을 허용한다는 데 있다. 1988년 11월 24일에 공포된 《정기 간행물 관리 임시 조례》의 제 12조에 따르면, 중국의 단위와 외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만약 사회 과학에 속하면 신문출판서에 보고하여 심의 기준을 받고 자연과학에 속하면 국가 과학위원회의 기준을 거쳐 신문출판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 外國인이 中國(大陸)에서 公演, 演出을 하는 것에 關한 法律問題

여기에서는 공연과 연출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법률문제로 본다. 즉, 공연은 모 작품에 대해 언어와 신체로 해석, 연역하는 행위 및 상술한 공연의 전파활동이며 저작권의 보호 문제에 관련된다. 한편 연출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어떻게 공연을 진행하는지, 즉 공연의 심의 기준 절차와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 등 행정관리상의 법률문제에 관련된다.⁹³

(1) 外國인의 中國(大陸)에서의 公演

《저작권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권자의

⁹³ 중국(대륙)의 《저작권법》과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점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의미상에서 공연과 연출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두 단어를 나누어 해석했다.

인신권리의 하나에 속하고 저작권자는 그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작품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 법률은 여기서의 공연은 작품에 대한 연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상술한 공연에 대한 공개 전파도 포함하고 저작권자 자신이 공연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공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외국인은 외국 법률 혹은 국제 공약에 의해서건 중국의 법률에 의해서건 중국에서 자신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작품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 이런 종류의 공연행위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원칙은 본 논문의 서두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외국인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작품이 타인(중국 혹은 외국의 개인과 조직을 포함)에 의해 중국에서 공연될 경우 공연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공연자는 그 합법적인 공연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자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⁹⁴ 외국인이 중국에서 타인의 작품을 공연할 때에도 상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상술한 권리를 향유한다. 공연자 권리의 보호 기한은 50년이다.

(2) 外國人의 中國(大陸)에서의 演出

중국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연출은 영업성 연출과 공익성 연출로 나뉜다.⁹⁵

1997년 8월 11일에 국무원이 공포한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취득한 문예 단체, 공연 장소, 연출 기획기구 및 개별 연기자만이 영업성 공연 활

⁹⁴ 공연자의 권리는 모두 여섯 가지이다. 각각 신분을 명시할 권리,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타인에게 생방송 또는 중계방송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타인에게 녹음, 녹화를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타인에게 복제, 발행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타인에게 정보망을 통해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등이다.

⁹⁵ 문화부가 2002년 7월 26일 공포한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 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성 연출은 매표를 하거나 전세를 낸 것, 연출 기관이나 개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 광고 선전 혹은 상품 세일즈를 하는 것, 찬조 혹은 기부가 있는 것 등을 포함한다.

동에 중사할 수 있다. 또 이 조례의 제 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자가 경영하는 문예단체, 공연 장소, 연출 기획기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혹은 외국의 문예단체는 중국(대륙)에서 자체적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할 수가 없다.

외국의 문예 공연단체 혹은 연기자 개인은 중국의 섭외 연출 기획기구의 초청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중국(대륙)에 가서 문예 공연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초청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성립되고 섭외 연출 기획의 직능을 갖는 중개기구여야 한다.⁹⁶ 초청자는 반드시 공연 30일 전에 소재지의 문화청(국) 혹은 중앙국가기관의 부, 위원회, 해방군 계통 또는 전국적 인민단체를 통하여 공연계획을 문화부에 보고하여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외국의 공연단체 혹은 연기와 정식 공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997년 6월 27일에 문화부가 공포한 《섭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람 관리규정》의 제44조에 의하면 연출자의 중국에서의 연출에서 발생한 공연계약과 관련한 법률쟁의는 중국의 법률에 따라 해결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중국(대륙)에서 공익성 공연을 진행할 경우에는 2002년 7월26일에 문화부가 공포한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시행 세칙》 제 31조의 특수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내용은 섭외 영업성 공연의 법률 규정을 참조한다.

라. 外國인이 中國(大陸)의 媒體 上에 映像을 放映하는데 關한 法律問題

위에서 말한 공연권과 공연자권은 모두 매체 수단을 빌어 공연에 대해 전파를 진행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혹은 공연자로서의 외국인은 모두 중국(대륙)의 매체 상에 그 공

⁹⁶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 시행세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섭외 연출 기획사의 자격은 반드시 문화부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연과 관련된 영상을 방영할 권리가 있다. 비록 저작권자 혹은 연기자가 자신이 아닐지라도 저작권자 혹은 연기자의 위임을 거치면 외국인은 역시 중국(대륙)의 매체 상에 그 공연과 관련된 영상을 방영할 권리가 있다.

공연권 외에도 《저작권법》 제10조는 방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는 경우는 당연히 상술한 방식으로 그 작품을 전파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전파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이 외국의 법률 혹은 국제 조약에 의거하여 취득한 저작권에 상술한 전파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중국 법률의 승인과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파의 문제는 반드시 특별 법률로 규정한다.

외국인이 매체 상에서 영상을 전파할 때 만약 영상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향유하지 않을 시는 반드시 영상의 매개체, 즉 영상을 수록하는 녹음 혹은 녹화제품에 대해 저작권을 향유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4부분에서 전적으로 서술하고 여기서는 부연하지 않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42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음향 영상제품이 미발표 작품일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자의 작품이 이미 발표한 작품(중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발표한 경우를 막론하고)일 경우에는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방영할 수 있지만 보수는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저작권법》 제45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TV 방송국이 타인의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영상제품을 방송할 경우에는 제작인 또는 영상제작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타인이 제작한 영상제품을 방송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매체 상에 영상을 방영할 때 상응하는 매체도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규정은 《저작권법》 제44조에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들과 저작권자의 권리는 상충하지 않는다.

비록 중국(대륙)의 법률이 외국인이 매체 상에 영상을 방영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외국인이 중국(대륙)에서 마음대로 영상을 방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중국(대륙)의 매체도 역시 마음대로 외국의 영상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는 없다. 1997년 8월11일 국무원이 공포한 《라디오 TV조례》의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에 사용되는 외국 영화, 드라마는 반드시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 혹은 그 위임 기구의 심의 기준을 거쳐야만 한다. 외국 드라마의 수입은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이 지정하는 기구에서만 할 수 있다.

무릇 심의 기준을 거쳐 중국(대륙)에서의 방영권을 획득하지 못한 외국 드라마, 중외합작 드라마, 기타 TV 프로그램, 출판사에서 출판한 해외 영상제품, 위성 수신 설비를 통해 직접 획득한 프로그램 등은 모두 TV 방송국에서의 방영을 금지한다.⁹⁷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은 또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시간대와 프로그램 방영의 총 시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한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표준은 외국 드라마가 TV 드라마 총 방영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황금시간대, 즉 18시부터 22시 사이에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의 비율은 15% 이내로 통제하고 그 중 19시에서 21시 30분까지는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이 정하고 발행된 허가증 상에 이미 방영 허가를 명기한 외국 드라마 외에는 배정할 수 없다.⁹⁸

⁹⁷ 1994년 2월 3일 당시의 라디오, 영화, TV 부가 공포한 《국의 TV 프로그램 도입, 방영의 관리규정》 제10조.

⁹⁸ 《국의 TV 프로그램 도입, 방영의 관리규정》 제9조.

마. 外國 音響 映像製品의 收入과 中國에서의 發行 및 流通 問題

여기서 말하는 음향 영상제품이란 2002년 4월 17일에 문화부와 세관총국이 공동으로 공포한 《음향 영상제품 수입 관리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 음반, CD, VCD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음향 영상제품의 수입은 두 가지 차원의 합의를 내포한다. 하나는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의 완제품을 중국(대륙)에 수입하여 직접 발행에 투입하는 것, 다른 하나는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중국(대륙)에서 출판, 발행하는 것이다.

외국 음향 영상제품의 수입은 문화부와 지방의 각급 문화 행정 부문에서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중국(대륙)은 음향 영상제품의 수입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12월 25일 국무원이 공포한 《음향 영상제품 관리 조례》의 제28조와 《음향 영상제품 수입 관리방법》의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출판에 사용되는 음향 영상제품의 수입 및 도매, 소매 및 대여 등 용도의 음향 영상제품 완제품의 수입은 반드시 문화부에 신고하여 그 내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음향 영상제품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심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문화부는 심사 후 3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⁹⁹

만약 수입한 음향 영상제품이 영화인 경우는 반드시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이 지정하는 영화취급 단위가 취급하고 동시에 영화 심의기구에 신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영화를 심사에 회부하기 전에는 영화수입 취급단위가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이 발부한 임시 수입비준 문건을 가지고 세관에 가서 임시수입수속을 밟는다. 심사에

⁹⁹ 《음향 영상제품 관리조례》 제28조 제2항.

회부한 당해 영화가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이 발부하는 《영화 상영 허가증》과 수입 비준 문건을 획득한 후에야 비로소 세관에 가서 정식 수입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의 완제품이 상술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중국(대륙)에 수입된 후에는 문화부에서 지정한 음향 영상제품의 취급 단위가 당해 수입 음향 영상제품의 완제품을 유통경로에 투입할 수 있다. 중국(대륙)의 음향 영상제품의 유통경로는 합법적인 취급 자격을 획득한 도매, 소매, 대여 단위 혹은 개인으로 구성된다.¹⁰⁰ 합법적인 유통경로에 진입한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의 완제품은 기타 중국의 음향 영상제품과 동일한 법률 지위를 갖는다.

만약 수입한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을 중국(대륙)에서 출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완제품의 수입과 동일한 수입 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을 중국(대륙)에서 출판하는 데 관한 특별 규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출판기구는 반드시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을 출판할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비준을 획득한 업무범위 내에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의 출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¹⁰¹ 다음으로,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을 출판할 때는 반드시 상품의 겉포장에 수입비준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¹⁰² 셋째, 비준을 거쳐 수입 출판한 음향 영상제품의 판권 유효기한 내에 수입 경영단위는 당해 음향 영상제품의 완제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의도는 매우 명확하며, 무릇 중국 출판기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음향 영상제품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언어 문자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즉, 비준을 거친 중국어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어 프로그램일지라도 음향 영상제품 및 표면 포장 상에 중문과 외국어의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

¹⁰⁰ 2002년 3월 28일 문화부가 공포한 《음향 영상제품의 도매, 소매 대여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경영허가를 취득한 단위와 개인.

¹⁰¹ 《음향 영상제품 수입관리방법》 제10조.

¹⁰² 《음향 영상제품 관리조례》 제12조.

IV

日本法制的 理解와 課題

1. 出入國管理과 涉外私法

가. 國籍取得과 拋棄

日本에 있어서는 外國人の 出入國管理는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以下, 『入管法』이라 한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外國人 (=日本의 國籍을 보유하지 않는 者 [入管法24條2號])에 대해서는 入國에서 出國까지의 在留管理가 同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 日本의 制度는 移民資格에 대해서 아무런 規定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在留資格에 따라 期限付로 入國하여 在留한 후 永住權을 取得할 必要가 있다. 國籍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그 후에 歸化절차가 必要하다.

(1) 永住者 및 그 家族

(가) 永住者

永住權을 獲得하기 위해서는 在留中에 在留資格을 永住로 變更하는 절차에 따라 永住許可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入管法22條1項·2項). 條件으로서는 ①素行이 善良할 것, ②獨立된 生計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資産 또는 技能을 가지고 있을 것(다만, 難民認定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要件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永住를 許可할 수 있다), 그밖에 法務大臣이 『永住가 日本國의 利益에 合致한다』고 하는 인정 이 必要하다.

(나) 特別永住者

그리고, 日本에는 通常의 永住權獲得者 이외에 特別永住者(=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에 근거해서 日本의 國籍을 離脱한 者等の 出入國管理에 關한 特例法 [以下, 『入管特例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特別永住者』)가 존재한다. 特別永住者는 日本國과의 平和 條約의 發効

에 따라 日本國籍에서 離脫하게 된 者이지만, 戰爭終結 前부터 계속 해서 日本에 在留하고 있는 者 및 그 子孫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入管法의 特例를 정해서(入管特例法1條·2條)새롭게 許可 申請을 할 必要 없이 自動적으로 特別永住者로 보고 있다(入管法 3條). 다만, 特別永住者이던 永住者이던 外國人이라는 점에서 參政權의 制限이 있는 점등에 대해서 國民과 비교해서 不平等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 점은 東아시아의 國籍者뿐만 아니라 永住者 全般에 대해서 今後, 改善해야 할 課題이다.

(다) 配偶者·子

『配偶者』란 현재 婚姻中인 者를 말한다. 상대방 配偶者가 死亡한 자 또는 離婚한 者는 포함되지 않으며, 內緣의 配偶者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法律上 有效한 婚姻이 存在하는 것 뿐 아니라, 判例는 同居, 協力, 扶助(民法752條)를 中核으로 한 社會通念上의 配偶者로서의 活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日本人의 配偶者 또는 永住者 (特別永住者를 포함한다)의 配偶者에 대해서는 3年, 1年 또는 6月の 在留期間이 인정된다.

子에 대해서는 日本人의 子로서 出生한 者 또는 民法817條의2에 근거한 特別養子에게는 配偶者와 같이 3年, 1年 또는 6月の 在留 期間이 인정된다. 『子로서 出生한 者』라면 嫡出子, 非嫡出子를 불문한다. 다만, 出生시에 父 또는 母의 어느 한쪽이 日本國籍을 가지고 있는 場合, 또는 本人의 出生前에 父가 死亡하고 동시에 그의 父 또는 母의 死亡시에 日本國籍을 가지고 있던 場合가 아니면 안되지만, 本人의 出生後 父 또는 母가 國籍을 離脫하더라도 상관없다. 永住者의 子로서 日本에서 出生한 후 계속해서 日本에 在留하고 있는 자도 같은 在留期間이 인정된다. 다만 養子は 포함되지 않는다.

國際法上, 外國人の 入國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 各國의 國內法에 따른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二國間 또는 多數國間 條約을 締結해서 出

入國에 關한 各國의 裁量權을 制限, 撤廢하고, 相互 外國人의 出入國을 保障하는 경우가 있으며, 日本도 미국과의 友好通商條約 等 에 따라 一定한 者에 對해서 入國, 在留를 絶對的으로 保障하고 있다.

今後, 東아시아의 交流에 있어서도 이러한 條約締結의 可能性도 생각해야 할 것이지만, 日本의 外國人에 對한 勞働政策等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안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2) 歸化

國籍法 4條 1項에 근거해서 外國人에게는 原則的으로 歸化만이 出生後에 日本國籍을 取得할 수 있는 方法이다. 歸化에는 普通歸化(國籍法 5條 1項), 特別歸化, 大歸化(國籍法 9條)가 있다. 普通歸化에는 ① 繼續해서 5年 以上 日本에 住所를 가지고 있을 것, ② 20歲 以上일 것, ③ 素行이 善良할 것, ④ 自己 또는 生計를 같이 하는 配偶者 그밖의 親族의 資産 또는 技能에 의해서 生計를 영위할 수 있을 것, ⑤ 國籍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日本國籍의 取得에 따라서 그 國籍을 상실해야 할 것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特別歸化에는 特定한 場合에 上記의 條件이 緩和된다. 예를 들면, 日本國民의 配偶者인 場合, 婚姻後 3年을 經過하였다면 居住期間은 1年으로 緩和된다. 또 大歸化라는 制度도 있으며, 동 제도는 『日本에 特別한 功勞가 있는 外國人』에 對해서 法務大臣이 國會의 承認을 얻어서 歸化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普通歸化의 要件에 대해서는 歸化者가 離脫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原國籍을 喪失하지 않는 國家가 있기 때문에 二重國籍이 發生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場合에 對해서 國籍法 5條 2項에서 本人의 意思에 관계없이, 原國籍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日本國民과의 親族關係 또는 境遇에 따라서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要件을 갖추지 않더라도 歸化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歸化한 者의 國籍은 歸化가 無効로 되지 않는 한 本人의 意思에 따르지 않고 剝奪할 수 없다.

(3) 國籍拋棄

憲法22條2項에 따라 個人의 自由意思로 國籍을 離脫할 自由가 인정된다. 國籍法11條1項은 『日本國民은 自己의 志望에 따라서 外國 國籍을 取得한 때는 日本國籍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二重國籍을 가질 自由나 無國籍이 되는 自由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럽에서 스트라스부르條約을 改定해서 締約國間의 二重 國籍이 인정하고 있는 점과 比較한다면 今後, 問題가 될 可能性이 있다.

나. 難民認定

日本은 『難民의地位에關한條約』 및 『難民의地位에關한議定書』에 근거해서 1981년에 難民認定制度를 創設하고, 入管法에 難民認定에 대해서도 規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後의 國際情勢의 變化가운데 日本에서도 難民認定申請者가 增加하고 出身國·地域의 多樣化, 申請 內容의 複雜化가 두드러지게 되고, 나아가 2002年 5월에 中國 瀋陽의 日本國總領事館에 탈북자들이 난입한 事件을 계기로 難民認定 制度는 社會의 注目을 모으게 되기에 이르러 難民의 適切하면서 迅速한 庇護를 위한 개선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背景에서 2004년에 入管法이 改正되었다.

지금까지 難民認定절차와 退去強制절차는 別個의 절차로서 平行해서 進行되었기 때문에 不法滯在者가 難民認定申請을 한 場合, 法的으로는 身柄을 收容한 후 退去強制절차도 進行되었지만 改正 後에는 一定한 要件을 갖춘 場合에는 假滯在를 許可해서 退去強制 절차를 停止시키고 難民認定절차를 先行하도록 하였다.

假滯在許可는 在留資格未取得外國人이 難民認定申請을 한 場合에

以下の 어느 하나에도 該當하지 않는 場合に 인정된다.

- ① 假上陸許可 등 入管法の 特別規定에 근거해서 日本에 在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② 一定한 上陸諾否事由가 있는 경우
 - ③ 一定한 退去強制事由가 있는 경우
 - ④ 日本에 上陸한 날로부터 6個月을 經過한 後에 難民認定申請을 한 경우
 - ⑤ 迫害의 우려가 있던 領域에서 直接 日本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경우
 - ⑥ 日本入國後에 一定한 犯罪을 犯해서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해진 경우
 - ⑦ 退去強制命令書의 發付를 받은 경우
 - ⑧ 逃亡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
- 假滞在許可가 許可되면 難民認定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一時的으로 退去強制절차가 停止되고, 許可後 假滞在期間이 경과할 때 까지는 適法하게 日本에 滞在할 수 있다. 假滞在가 許可되지 못한 者에 대해서는 改正前과 같이 難民認定절차와 退去強制절차를 並行해서 진행하지만 難民認定申請中에는 送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難民으로 認定된 者에 대한 定住者 資格의 부여에 있어서는 나아가서

- ① 日本에 上陸後 6月 以内に 難民認定申請을 했을 것
- ② 迫害國等으로부터 直接 日本에 入國했을 것
- ③ 24條3號 또는 4號 ホ에서 크의 어느 하나에도 該當하지 않을 것
- ④ 절도죄 등의 一定한 범죄에 의해서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해진 자가 아닐 것

의 모든 要件에 適合할 것이 必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難民不認定處分等에 대한 不服申請制度에 대해서는 절차의 公正性·中立性·透明性を 높이기 위해서 『難民審査參與員制度』를 두어서 法務大臣이 異議申請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學識經驗者 중에서 選任된 難民審査專門委員의 意見を 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6個月 以內的 申請이나 直接 日本에 入國해야 한다고 하는 要件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하는 指摘이 있는 외에 假滞在許可가 인정되기까지 申請者는 收容所에 收容되며 이 收容施設의 劣惡함이 오늘날 커다란 人權問題가 되고 있다. 나아가 收容된 場合, 外部와의 連絡을 취하는 것이 困難하게 된다. 특히, 難民申請을 내기 전에 不法入國者로서 收容되어 버리면, 辯護士等과의 連絡을 취하기 어렵고 申請절차 그 자체를 進行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 入管法이 2005年6월에 再改正되어서 6個月 以內的 申請에 대해서는 『다만 부득이한 場合は 제외한다』고 하는 緩和條件을 명시했다.

다. 外國人と 內國人の 婚姻·離婚

法律13條2項은 婚姻의 方式에 대해서 婚姻舉行地의 方式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同條3項은 婚姻當事者의 一方의 本國法에 따른 方式도 原則적으로 有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日本에서 婚姻하는 경우

法律13條3項 但書에 의해서 日本人이 婚姻當事者의 一方으로 日本에서 婚姻을 舉行한 場合, 日本法의 方式에 따르고 있지 않다면 有効한 것으로 看做되지 않는다. 市區町村사무소에 所定の 婚姻신고서를 提出함으로써 婚姻이 成立한다. 日本에서의 신고에 있어서는 ① 婚姻 신고서에 當事者雙方 및 成人인 證人(外國人也 可能함) 二人以上이 署名할 것, ② 夫婦가 同一한 姓을 사용할 것(民法9條2項, 戶籍法74條), ③ 外國人인 場合, 國籍證明書を 첨부할 것(戶籍法施行 規則56條), ④ 日本人에 대해서는 戶籍謄本, 外國人에 대해서는 『婚姻要件具備證明書』, 여권, 外國人登錄證明書, 진술서가 필요하다. 婚姻要件具備證明書는 婚姻適齡에 達하고 있을 것(남자는 滿18歲 以上, 여자는

16歲以上일 것, 다만 未成年에 대해서는 부모의 同意가 必要 하다.), 近親婚이 아닐 것(直系血族 또는三親等內的 傍系血族이 아닐 것), 重婚이 아닐 것 등의 日本法상의 婚姻의 要件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證明이며, 通常 大使館 등에서 發行하지만 아무리해도 證明書를 발급받지 못하는 場合에는 本人의 宣誓書, 여권等으로 대신한다.

(2) 外國에서 婚姻하는 경우

婚姻成立의 要件에 대해서는 法律13條1項에서 日本人에 대해서는 日本民法이, 外國人에 대해서는 本國法이 適用된다. 다만 日本의 方式으로 婚姻한 場合와 外國의 方式으로 婚姻한 場合은 각각 다르다. 日本의 方式으로 婚姻한 場合에는 日本人의 本籍地에 신고서를 제출(郵送도 가능하다)할 것이 필요하다. 外國의 方式(婚姻舉行地 또는 外國人配偶者의 本國法)으로 婚姻한 場合, 그 나라의 方式에 따라서 作成된 婚姻에 關한 證書의 謄本과 翻譯者을 명시한 翻譯文을 添付해서 3개월 以內에 婚姻舉行地國家에 駐在하는 日本의 大使 혹은 本籍地의 市區町村長에게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3개월을 지나서 신고하는 場合 3萬円 以下の 과태료에 처해진다(戶籍法120條).

(3) 婚姻의 效果

(가) 國籍

外國人과의 婚姻에 있어서는 當該 外國人의 本國의 國籍法의 規定에 따라서 婚姻으로 인해서 二重國籍狀態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日本은 二重國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國籍을 選擇하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人과의 婚姻의 場合에는 婚姻에 의해서 韓國國籍을 取得하지만 婚姻後 6개월을 經過했으나 日本國籍을 離脫하지 않는 場合, 韓國國籍法 3條1號에 따라서 韓國國籍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場合에도, 本人이 韓國國籍을 希望하는 때에는 大韓民國法務部長官의 許可

을 얻어서 韓國國籍을 回復할 수 있고(大韓民國國籍法14條 1項), 國籍法11條1項에 따라서 自動적으로 日本國籍을 상실한다. 다만 日本國籍에 대해서는 國籍喪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戶籍法103條).

(나) 戶籍·姓氏

外國人と 婚姻한 日本人에 대해서는 새로운 戶籍이 編製된다. 상대방인 外國人에 대해서는 日本人의 戶籍가운데 『身分事項欄』에 婚姻한 事實이 記載된다. 戶籍上의 姓氏는 바뀌지 않는다. 外國人 配偶者가 사용하는 姓氏로 變更하고 싶은 때는 婚姻後 6개월以內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戶籍法107條2項).

그리고 日本人에 대해서는 住民基本臺帳에 근거해서 住民票가 작성되지만 外國人에 대해서는 外國人登錄法에 따라서 外國人登錄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다만, 實質的으로 世帶主가 外國人配偶者인 것 같은 場合, 그것이 住民票에 記載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초래하는 場合이 있기 때문에 欄外에 實際 世帶主를 記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 扶養

夫婦間에는 結婚生活上의 共同費用의 分擔과 扶養에 대해서는 『扶養의 準據法에 關한 法律』2條에 따라서 扶養權利者의 居所 地法에 따른다고 하는 規定이 있다. 親族間에는 日本民法은 三親等 內의 姻族까지의 扶養義務를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民法977條, 725條) 日本에 있는 扶養義務者는 扶養權利者의 居所에도 불구하고 『特別한 事情』이 있는 場合, 扶養義務를 가진다(民法877條2項).

(라) 離婚

法律 제16條는 夫婦의 한쪽이 日本에 항상 居所를 가지는 日本人인

경우, 日本의 法律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日本民法은 協議離婚과 裁判離婚의 두가지 方式을 규정하고 있다.

外國에서 離婚한 경우, 日本人에 대해서는 그 뜻을 日本의 在外 公館에 신고해서 日本의 戶籍사무소에 連絡이 가도록 함으로써 離婚이 成立한다. 다만 外國에서 裁判에 의한 離婚이 된 경우 그 判決의 無効確認等の 소송이 日本의 裁判所に 提起될 可能性이 있다.

離婚後의 子の 親權者, 監護權者의 決定에 대해서 法律은 準據法을 明示하고 있지 않다. 또 『國際的인 子の 奪取의 民事面에 關한 條約』(1980年)도 日本은 批准하고 있지 않다.

『扶養義務의 準據法에 關한 法律』4條1項은, 離婚한 當事者間의 扶養義務는 離婚에 대해서 適用된 法律에 따른다고 한다. 離婚에 수반하는 慰謝料는 日本에서는 不法行爲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한다. 日本法에서는 慰謝料나 財産分割의 請求에 대해서는 우선 家庭裁判所に 調停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場合에는 裁判所に 訴訟을 提起한다. 裁判所에서는 國際私法上 外國法이 適用되는 경우 그것이 考慮되도록 하고 있다.

離婚後의 姓氏에 대해서 民法767條1項은 婚姻前의 姓氏로 돌아가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데, 3개월 以內에 신고를 하면 婚姻中의 姓氏를 사용할 수 있다. 또 日本國籍은 離婚에 의해서 變更되는 경우는 없다.

(5) 그 밖의 問題

特別永住者간의 婚姻의 경우, 婚姻舉行地法인 日本法에 따르게 된다고 보여진다. 第二次世界大戰前에 韓半島, 臺灣의 男性과 婚姻한 日本人 女性에 대해서는 對日平和條約에 따라 當該國家의 國籍을 取得하고 日本 國籍을 상실하게 된다. 또 아시아國家들에서 日本人 男性과 當該國家의 女性사이에서 태어난 子が 認知되지 않고, 그 扶養의 問題가 발생하거나 非嫡出子에 의한 日本國籍 取得의 申請이 있거나 하는 問題도 발생하고 있다.

2. 集團會合

가. 國際會議의 開催

日本에서 國際會議을 開催함에 있어서는 招聘하는 外國人에게 日本에 入國하기 위한 在留資格이 인정될 必要가 있다. 入管法 別表 第1의 1에서는 日本에서 就勞活動을 할 것이 豫定되는 在留資格 가운데, 基準省수에 규정된 上陸審査基準이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公用』이 있는데, 『國際機關이 主催하는 會議等に 參加하는 者』 및 그 者와 同一한 世帯에 屬하는 家族의 構成員이 여기에 該當한다. 다만 이 場合 公用의 在留資格에 對應하는 在留期間은 公用活動에 從事하는 期間으로 제한된다.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關이 發行한 身分 및 用務를 證明하는 文書가 必要하다.

通常의 國際會議에서는 入管法 別表 第1의 3의 『短期滞在』의 在留資格에 의해서 外國人을 招聘하면 된다. 이 場合 『就勞活動』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報酬를 받을 수 없지만, 入管法 19條 1項 괄호의 표현에 따라서 職業으로 하는 行위가 아닌 講演에 대한 謝禮金, 日常生活에 수반되는 臨時 報酬, 그 밖의 法務省수에서 정한 報酬를 수반하는 活動을 하는 것은 禁止되어 있지 않다. 在留資格의 立證 資料로는 ① 日本에서 出國하기 위한 航空機等の 티켓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運送業者가 發行하는 保證書, ② 日本 以外の 나라에 入國할 수 있는 當該 外國人의 有効한 旅券, ③ 在留中の 一切의 經費의 支拂能力을 명확하게 하는 資料가 必要하게 된다. 短期滞在의 在留 資格에 근거한 在留期間은 90日, 30日 또는 15日이다.

日本에 入國하기 위해서는 在留資格이 있다는 점과는 별도로 通常 査證(VISA)을 받은 여권을 所持하고 있을 것이 必要하다.(國交가 없는 北韓, 臺灣에서의 入國에는 査證대신 渡航證明書가 필요하다). 査證은 日本國政府가 外國政府에 대해서 行한 通告에 의해서 査證을 必

要로 하지 않는 國家의 國民인 場合이나 再入國의 許可를 받은 場合 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通常 領事館 等に 申請해서 이것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查證取得을 위한 書類 및 절차에 걸리는 日數를 充分히 考慮해 두지 않으면 會議出席전에 사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긴다. 이것은 日本人이 他國의 國際會議에 出席하는 場合도 같다. 日本에서 韓國에 가는 場合, 現在 觀光의 場合에는 사증은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에서의 國際會議에 出席하기 위해서는 通常 觀光目的이라고 하는 形式으로 入國하는 方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現狀이다.

그밖에 日本에는 『國際會議等の 誘致 및 開催의 円滑化等에 따른 國際觀光의 振興에 관한 法律』 및 『同施行規則』이 있다.

이 법에서는 『대략 50人 以上の 外國人이 參加する회의』로 『開催에 필요한 經費가대략 2500萬円 以上인 것』을 對象으로 해서 이러한 國際會議의 會議場施設等の 基準을명시하고 基準에 合致하는 市町村을 國土交通大臣이 申請을 받아서 『國際會議觀光都市』로 認定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 『獨立行政法人國際觀光振興機構』를 설치하여 同機構가 『國際會議觀光都市에서 開催되는 國土交通 省舍이 정하는 國際會議等の 開催의 円滑함을 위해서 寄附金を 募集하고 當該 國際會議等を 主催하는 者로서 그 開催를 위해서 당해 회의의 開催에 要하는 資金의 援助를 必要로 하는 자에 對해서 交付金を 交付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또 國際會議觀光都市以外的 都市에서의 開催에 있어서도 『交付金の 交付 그 밖의 措置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同 法律 및 施行規則은 國際會議의 誘致를 獎勵 하기 위한 것이지만 海外로부터 觀光客을 불러들이는 것과 그것에 따라서 外國人觀光客과 國民과의 交流의 促進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國際會議 自體를 위한 法律은 아니다.

나. 國際競技開催

國際競技에의 參加에 대해서도 外國의 參加者는 『國際會議』의 場合와 같이 『短期滞在』의 在留資格으로 參加하게 되며, 入國·在留에 있어서의 問題點은 國際會議의 場合와 같다. 스포츠에 대해서는 在留資格으로서 『興行』(=特定施設에 있어서 公衆에 대해서 映畫, 演劇, 音樂, 스포츠, 演藝 또는 물건을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에 해당하는 場合이 생각되지만, 『興行』의 場合에는 『興行』에 의하여 相當額의 報酬를 받는 것이 前提가 되며, 提出해야할 資料도 興行 施設의 概要의 多樣하게 要求된다.

그리고 日本에서 開催되는, 銃砲 또는 刀劍類를 使用하는 國際 競技에 參加하기 위해서 入國하는 外國人은 『當該 國際競技에 사용할 銃砲 또는 刀劍類의 所持에 대해서 出入國港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都道府縣公案委員會의 許可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銃砲刀劍類 所持 等 取締法6條).

스포츠 全般에 關해서는 『스포츠振興法』이 國家의 스포츠施策의 基本的 指針을 규정하고, 『日本獨立行政法人스포츠振興센터法』이 스포츠振興 및 靑少年의 健康保持增進을 目的으로 한 『國際的인 競技會의 開催』나 『國際的으로 卓越한 스포츠活動을 할 計畫을 가진 者가 行하는 活動에 대해서 資金의 支給 그 밖의 援助를 함』(15條)을 同센터의 業務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에는 國際競技에 대한 詳細한 規定이 없고, 過去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國際競技에 대해서는 特別法을 制定해왔다.

3. 教育和學歷

가. 義務教育

日本에서는 義務教育으로서 9年間の 普通教育을 받아야 하는 義務

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教育基本法4條1項). 具體적으로는 滿6歲에 達한 날의 翌日以降 最初の 學年의 시작부터 滿12歲에 達한 날이 屬한 學年의 마지막까지 小學校, 盲·聾學校 혹은 養護學校의 小學部, 同過程終了後 똑같이 滿15歲에 達한 날이 屬한 學年의 마지막까지 中學校, 盲·聾學校 혹은 養護學校의 中學部에 就學한다. 外國人子弟에 대해서는 日本의 法律에 의한 就學의 義務는 없다고 하는 것이 從來의 文部省의 見解이다. 다만, 國際人權規約 A規約 13條나 兒童의 權利條約28條의 規定趣旨를 생각한다면 오늘날에서는 就學義務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日本의 學校教育法上의 學校 以外の 教育을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學校教育法23條의 『부득이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就學義務를 免除하는 것으로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學說의 見解이다.

市區町村의 教育委員會는 學齡에 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不法滯在者의 場合이라 하더라도 外國人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入學期日의 通知, 學校의 指定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義務教育의 無償이 外國人兒童에게도 適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議論의 여지가 있는 바이지만, 事實上 外國人兒童에게도 適用되어 왔다.

다만 外國人이 學校教育法上의 學校에서 教育을 받기 위해서는 實際上 前提로서 日本語教育이나 適應教育이 必要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각 敎員의 擴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充分하지는 않다.

나. 外國人의 入學·修業

日本의 高等學校나 職業教育을 행하는 專修學校 등에 相當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兒童의 權利 條約28條1項(b), 國際人權規約 A規約 13條2項(b)에 근거해서 모든 어린이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 要請된다. 學校教育法47條는 中學校 또는 이것에 準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것과 同等 以上の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해서

入學資格을 인정하고, 同法施行規則63條가 상세한 基準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에 따르면 外國에서 9년의 學校教育過程을 修了한 者, 혹은 中學校를 卒業한 者와 同等 以上の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入學資格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具體的으로는 教育委員會로부터 別段의 指示가 없는 한 本人이 入學을 위한 當該學校의 判斷에 따른다.

實際로는 日本의 高等學校에서는 日本人에 대해서도 入學試驗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特히, 公立學校의 場合 外國人에 대해서 特別한 入學試驗制度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入學은 困難하다. 이 점에 비추어 私立高校가 外國人을 받아들여줄 것으로 期待되지만 私立高校에서는 授業料가 비싸다고 하는 問題가 있다. 그래서 定員에 餘裕가 있는 定時制公立高校에의 外國人 入學이 많아지고 있다.

그 밖에 日本에는 日本에 滞在하는 外國人用의 外國人學校가 많이 存在한다. 外國人學校의 경우에, 敎員은 日本의 學校教育法上 必要한 免許를 가질 것이 요청되지 않고 日本의 學習指導要領에 근거해서 指導할 必要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外國人學校에서 배운 者가 日本의 上級學校에 進學할 때는 入學資格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은 高等學校에의 入學은 上記의 學校教育法 47條의 規定趣旨에 근거해서 各 都道府縣教育委員會의 判斷으로 外國人學校 中等部卒業生의 高校에의 入學을 인정하고 있다. 大學의 入學資格에 대해서는 學校教育法56條, 同施行規則69條가 12년의 學校教育을 修了하고,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와 同等 以上の 學力이 있는 자로서 大學이 이것을 인정해서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이 基準에 근거해서 外國에서 教育을 받은 者, 外國人學校를 卒業한 者에게 受験을 인정하는 大學이 늘고 있다. 過去의 事例에서는 中國에 있어서 大學入學 以前의 學校教育年限이 11년이기 때문에 問題가 된 예가 있지만 日本에 있어서 日本語教育年限을 1年分の 普通教育으로서 換算해서 入學資格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特別永住者が 다니는 外國人學校의 卒業生の 國立大學受験資格이 오랫동안 인정되어 오지 못해서 커다란 社會 問題가 되어 왔다. 通常, 高等學校卒業과 同等하다는 認定을 받을 수 없는 場合, 大學受験에는 『大學檢定試驗』을 받을 必要가 있다. 그러나 이 『大學檢定試驗』에는 日本의 中學校를 卒業했을 것이 條件이 되기 때문에 初等教育도 外國人學校에서 받은 者は 이것을 받을 資格이 없게 된다. 日本에 있는 外國人學校 가운데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朝鮮人學校(北韓系)인데 그 生도의 대부분이 初等 教育부터 朝鮮人學校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差別이라는 批判이 강하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國立大學教員들에서도 『是正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國立大學의 獨立法人화와 더불어 改善方向性이 제시되고 있는 중이다.

學校教育法上の 大學, 大學院, 短期大學과 같은 高等教育機關에의 入學에는 『能力에 따라서』라고 하는 限定이 있기 때문에 留學生에게도 入學試驗이 부과된다. 現在에는 대부분의 大學이 留學生을 위한 特別한 入試制度를 두고 있다.

授業料에 대해서는 日本育英會法에 근거해서 經濟的 理由에 따라 就學困難한 뛰어난 學生·生徒에 대한 學資金貸與制度가 있지만, 이것은 原則적으로 學資金을 返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永住權保有者 혹은 이것에 준하는 外國人에게만 인정된다. 一般의 外國人留學生에 대해서는 國費留學生制度, 그 밖의 獎學金制度가 있지만 留學生數에 비해서 充分하지는 않다. 그 밖에 오늘날 各 大學이 튜터 制度를 두는 등, 外國人學生의 修學을 도와주기 위한 制度整備를 하고 있다.

外國에서 中等教育을 받기 위해서 日本에 入國하는 경우에는 『就學』의 在留資格, 高等教育을 받기 위해서 入國하는 場合에는 『留學』의 在留資格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資料로서는 入學 許可書, 在留中の 一切의 經費의 支拂能力을 證明하는 文書(就學의 場合에는 最終學歷에 대한 卒業證明書 및 經歷證明書도 必要)가 必要하다.

다. 外國學歷의 國內 認定

外國學歷의 認定이 問題가 되는 것은 一定한 資格을 必要로 하는 職에 就業하는 場合, 혹은 一定한 資格試驗을 보는 場合이다.

各種學校 또는 이것에 준하는 教育機關에서 教育活動을 하는 場合에는 大學(短期大學을 포함한다)을 卒業하거나 이것과 同等 以上の 教育을 받고, 또는 하고자 하는 教育에 관련된 免許를 가지고 있을 것이 在留資格을 얻기 위해서 必要하다. 이 경우 短期大學과 同等 以上の 教育이라면 靚찮은 경우부터 高等專門學校의 4年次, 5年次에서 받은 教育도 포함될 수 있다. 또 『免許』는 日本에서 받은 것 이외에 外國에서 받은 것이라도 關係없다.

自然科學分野에 屬하는 技術 또는 知識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을 日本의 公私의 機關과의 契約에 근거해서 하는 場合에도 마찬가지로 從事하고자 하는 業務에 대해서 이것에 必要한 技術 혹은 知識과 相關된 科目을 專攻해서 大學(短期大學을 포함한다)을 卒業하였는가 혹은 이것과 同等 以上の 教育을 받거나 또는 10年 以上の 實 務經驗에 의해서 當該技術 혹은 知識을 습득하고 있을 것이 必要하다.

다만 以上은 在留資格上的 問題이며, 資格認定 그 자체의 問題는 아니다. 따라서 上記의 教育活動의 場合에도 在留期間內에 日本에서 教育活動을 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지나지 않고 日本에서 敎員免許를 取得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醫療關係, 法律關係等 資格을 要する職業에 대해서는 學歷認定問題보다도 오히려 外國의 資格이 日本에서 認定되는가의 問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各種 資格試驗에 대해서는 學歷에 따라서 一次試驗免除等の 措置가 취해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試驗이 免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外國人の 場合, 日本語로 試驗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困難함이 있다.

라. 教科書檢定

教科書란 『小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中等教育學校 및 이것들에 준하는 學校에서 教科課程의 構成에 따라서 組織排列된 教科의 주된 教材로서 教授用으로 제공된 兒童 또는 生徒用 圖書』이다. 學校 教育法 第21條에서는 小學校에서는 文部科學大臣의 檢定을 거친 教科用 圖書(文部科學省檢定濟教科書) 또는 文部科學省이 著作의 名義를 가지는 教科用圖書(文部科學省著作教科書)를 使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規定은 中學校, 高等學校, 中等 教育 學校等 에도 적용되고 있다. 高等學校, 中等教育學校의 後期課程 및 特殊教育諸學校等에서 適切な 教科書가 없는 등 特別한 場合에는 그 밖의 圖書의 使用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通常의 學校는 檢定濟 教科書를 使用하고 있다.

教科書의 檢定이란 民間에서 著作·編集된 圖書에 대해서 文部科學大臣이 教科書로서 適切한가 아닌가를 審査하고, 여기에 合格한 것을 教科書로서 使用할 것을 인정한 것으로 『小·中·高等學校의 學校教育에서는 國民의 教育을 받을 權利를 實質的으로 保障하기 위해서 全國的인 教育水準의 維持 및 向上, 教育의 機會均等の 保障, 適正한 教育內容의 維持, 教育의 中立性的의 確保 등이 要請되고 있기 때문에 文部科學省에서는 이와 같은 要請에 대응하기 위해서 小·中·高等學校 등의 教育課程의 基準으로서 學習指導要領을 定함과 더불어 教科의 주된 教材로서 重要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 教科書에 대해서 檢定을 實施하고 있다』고 說明되고 있다(文部科學省홈 페이지). 檢定은 대개 4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檢定の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檢定申請이 있으면 文部科學大臣은 教科書調査官에게 당해 圖書의 調査를 명하고 教科用圖書檢定調査審議會에 教科書로서 適切한가의 諮問을 요청한다. 審議會에서는 檢定基準에 근거해서 適正하면서 公正하게 審査가 이루어지고 教科書로서 適切한가의 여부를 判定하고

이것을 文部科學大臣에게 자문결과를 보고한다. 文部科學大臣은 이 자문결과에 근거해서 승인의 決定을 하고 그 뜻을 申請者에게 通知한다. 다만 審議會에서 必要한 修正을 한 뒤에 다시 한번 審査를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場合에는 승인의 決定을 留保하고 檢定意見を 通知하게 된다.

檢定意見의 通知를 받은 申請者는 檢定意見에 따라서 修正한 內容을 『修正表』로 작성해서 提出한다. 文部科學大臣은 修正이 이루어진 申請圖書에 대해서 다시 한번 審議會의 審査에 부쳐서 그 자문결과에 근거해서 승인의 決定을 하고, 이것으로 檢定절차는 終了된다. 그리고 文部科學大臣은 檢定審査不合格의 決定을 한 場合에는 事前에 그 理由를 通知하고, 申請者에게 反論할 機會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 檢定意見에 대해서 異議가 있는 場合에도 申請者는 意見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檢定이 끝난 教科書라 하더라도 實際로 學校에서 使用되지 않는다면 教科書로서의 實質的인 意味는 없다. 實際로 어떤 教科書를 쓸 것인가의 採擇方法은 義務教育인 小學校, 中學校, 中等教育學校의 前期課程 및 盲·聾·養護學校의 小·中學部の 教科書에 대해서는 『義務教育諸學校의 教科用 圖書의 無償措置에 관한 法律』에 규정되어 있다.

高等學校의 教科書의 採擇方法에 대해서는 法令上 具體的인 규정은 없지만, 各學校의 實態에 입각해서 公立高等學校에 대해서는 採擇權限을 가지는 所管 教育委員會가 採擇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韓國, 中國과의 關係에서 歷史·公民의 教科書檢定이 간간히 問題가 되어 왔지만 現行制度로는 文部科學省의 修正指示 그대로 修正된 教科書는 合格시킬 수 밖에 없다. 다만 지금까지 問題로 지적되어 왔던 檢定이 끝난 教科書의 採擇率은 1% 未滿에 그치고 있다.

4. 就業·勤勞

가. 敎員·研究員의 就業

小學校, 中學校, 盲學校, 聾學校, 養護學校 또는 專修學校의 敎員이 되기 위해서는 敎育職員免許法等에 따라서 一定한 免許, 資格을 가지는 者가 아니면 안된다. 또 大學에 대해서는 1982년에 外國人 敎員任用法이 成立해서 國公立大學에서도 外國人敎員을 任用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公立의 小·中·高校교감에 대해서는 國籍條項이 있으며, 外國人은 敎員으로서 任用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特別永住者도 敎員으로서 採用될 수 없다고 하는 問題가 발생하고 있다. 1984년에는 長野縣에서 敎員採用試驗에 合格한 在日 韓國人에 관해서 文部省이 『外國人の 正式採用은 法理上 있을 수 없다』고 하는 指導를 長野縣敎育委員會에 대해서 행하고, 그 結果 교감으로서는 採用되지 못한事例가 있다. 이 事例는 當時 國會에서도 거론되어져 논쟁이 되었지만 文部省은 『法理에 抵觸하지 않는 형태로 採用하고 安定된 身分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法的 檢討를하고 있다』고 答辯해서 結局, 常勤講師의 地位로 長野縣에 採用되기에 이르렀다.

學習指導要領에 拘束되는 初等·中等敎育에서는 免許를 必要로 하지 않는 大學敎員과 마찬가지로 外國人을 任用하는데는 困難한 側面이 있지만, 採用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해서 國籍 때문에 日本人과 同等의 職階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는 問題가 남겨져 있다.

研究員에 관해서는 入管法이 在留資格으로서 『研究』의 범주를 두고 있으며, 日本의 公私의 機關과의 契約에 근거해서 研究를 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敎授』活動을 제외한다)을 하는 場合에 在留 資格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短期大學을 제외한다)을 卒業하거나 이것과 同等以上の 敎育을 받은 後에 從事하고자 하는 研究分野에서 석사學位 혹은 3年以上의 經驗(大學院에서의 研究 機關을

포함한다)을 가지거나 또는 從事하고자 하는 研究分野에서 10年以上의 研究經驗(大學의 研究機關을 포함)을 가지고 있을 것』과 『日本人이 從事하는 場合に 받는 報酬와 同等額 以上の 報酬를 받을 것』이 필요하다. 在留期間은 3年 또는 1年이다. 그리고, 『教授』의 在留資格은 『日本の 大學 혹은 이것에 준하는 機關 또는 高等專門 學校에서 研究, 研究의 指導 또는 教育을 하는 活動』에 『研究』의 場合과 같은 在留期間으로 인정되며, 受入 機關이 발행하는 『活動의 內容, 期間, 地位 및 報酬를 證明하는』文書가 필요하다.

나. 外國人留學生의 勤勞

日本에서는 外國人の 不法就勞가 社會的인 問題가 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는 留學生·就學生의 問題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留學生』이란 大學, 短期大學等에서 學生, 生徒, 聽講生等으로서 教育을 받는 者를 말하며, 『就學生』이란 日本語學校等の 各種 學校나 高等 學校等에서 教育을 받는 者를 말한다. 그들의 在留目的은 勉學이기 때문에 本來 就勞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留學』, 『就學』으로 在留資格을 받기 위해서는 在留中の 一切의 經費의 支拂能力을 證明하는 文書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勉學에 支障이 되지 않는 範圍에서의 法律(法務省의 內規에서는 學生의 立場에 적합하지 않는 일이라면 原則적으로 하루 4時間, 特別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資格外活動의 許可를 받는 다면 就勞할 수 있게 되어 있다. 日本의 높은 物價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生活하기 어렵다고 하는 問題가 있지만, 現實적으로는 許可基準을 大幅적으로 超過해서 일하고 있는 자, 『勉學』이 아니라 『就勞』를 事實上的 目的으로 入國하는 경우도 많아서 不法就勞外國人法律者와 마찬가지로의 問題點이 있다.

또 최근에는 새롭게 『研修生』이나 『技能實習生』의 問題가 발생하고 있다. 『研修生』이란 技術, 技能, 知識의 習得을 위해서 公私의 機

關에 받아들여진 者를 말하며, 『技能實習生』은 研修生이 一定 期間(通常9~12개월)의 研修를 받은 後 『研修成果』 등의 評價를 받아서 一定한 水準에 이르렀다는 등의 要件을 충족시킨 場合に 雇用關係 아래에서 技術·技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 滞在 期間은 研修生期間을 합해서 3年以內이다. 本來는 『開發 途上國의 人材養成, 技術移轉等에 의한 經濟發展에 대한 協力』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 研修生制度이다. 그러나 이 制度를 利用해서 深刻한 노동력不足으로 고민하는 中小企業이 『研修生』, 『技能實習生』의 이름 아래 單純 法律者를 고용하는 問題가 발생 되어 왔다. 金錢的으로는 通常 法律을 위한 入國이 아니기 때문에 『賃金』으로서의 支拂은 불가능한 점에서 低額의 『研修手當』等 만을 支給하면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問題도 있다.

다. 外國取得資格·技能의 國內的 認定

外國에서 取得한 資格·技能에 대해서는 入管法上 인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資格·技能에 근거한 業務를 할 수 없다. 入管法은 다음과 같은 在留資格에서의 活動을 인정하고 있다.

(1) 『技能』의 在留資格

다음의 者에 대해서는 日本人인 從事하는 場合に 받는 報酬와 同等額 以上の 報酬을 받는 場合에는 『技能』의 在留資格을 받아서 日本에서 活動할 수 있다.

- ① 料理의 調理 또는 食品의 製造와 관련된 技能으로 外國에서 考案된 우리나라에 있어서 特殊한 것에 대해서 10年 以上の 實務經驗(外國의 教育機關에서 當該料理의 調理 또는 食品의 製造와 관련된 科目을 專攻한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 當該 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자
- ② 外國에 特有한 建築 또는 土木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 10年(當該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10年 以上の 實務經驗을 가진 外國人

의 指揮監督을 받아서 從事한 者의 場合에는 5年) 以上の 實務 經驗 (外國의 教育機關에서 當該建築 또는 土木에 관련되는 科目을 專攻한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 當該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

- ③ 外國에 特有한 製品의 製造 또는 修理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 10年以上의 實務經驗(外國의 教育機關에서 當該 製品의 製造 또는 修理에 관련되는 科目을 專攻한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진 者로 當該 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
- ④ 寶石, 貴金屬 또는 毛皮의 加工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는 10 年以上의 實務經驗(外國의 教育機關에서 當該加工에 관련되는 科目을 專攻한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진 者로 當該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
- ⑤ 動物의 調教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 10年以上의 實務經驗 (外國의 教育機關에서 動物의 調教에 관련되는 科目을 專攻한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者로 當該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
- ⑥ 石油探査를 위한 海底掘削, 地熱開發을 위한 掘削 또는 海底鑛物 探査를 위한 海底地質調査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 10年以上의 實務經驗(外國의 教育機關에서 石油探査를 위한 海底掘削, 地熱 開發을 위한 掘削 또는 海底鑛物探査를 위한 海底地質調査에 관련 되는 科目을 專攻한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者로 當該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
- ⑦ 航空機의 操縱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 2500時間以上の 飛行 經歷을 가지는 자로 航空法(1952年法律第231號)第24條에서 規定 하는 定期運送用操縱士의 技能證明을 가진 者가 아니면 機長 으로서 操縱을 할 수 없는 同法第2條第16項에서 規定하는 航空 運送事業用으로 사용되는 航空機에 乘組해서 操縱者로서의 業務에 從事하는 者
- ⑧ 스포츠의 指導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 3年以上의 實務經驗 (外國의 教育機關에서當該 스포츠의 指導에 관련되는 科目을 專

攻한 期間 및 報酬을 받아서 當該 스포츠에 從事했던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자로 當該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자 또는 스포츠의 選手로서 올림픽대회, 世界選手權大會 그 밖의 國際的인 競技會에 出場한 경험이 있는 자로 當該 스포츠의 指導에 관련된 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자

- ⑨ 포도주의 品質의 鑑定, 評價 및 유지 그리고 포도주의 提供 (以下 『와인鑑定等』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技能에 대해서 5年以上의 實務經驗(外國의 教育機關에서 와인鑑定等に 관련되는 科目을 專攻 한 期間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자로 當該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자
 - ㉠ 와인鑑定等に 관련되는 技能에 관한 國際的인 規模로 開催된 競技會(以下 『國際소무리에콩쿨』이라 한다)에서 優秀한 成績을 거둔 적이 있는 자
 - ㉡ 國際소무리에콩쿨(出場者가 한 나라에 한 명으로 制限된 경우에 한한다)에 出場한 경험이 있는 자
 - ㉢ 와인鑑定等に 관련되는 技能에 관해서 國家(外國을 포함한다) 혹은 地方公共團體(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이것에 준하는 公私의 機關이 認定하는 資格으로 法務大臣이 告示로 정한 것을 가지는 자

(2) 『技術』의 在留資格

情報處理에 관한 技術 또는 知識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고자 하는 場合으로 法務大臣이 告示로 정하는 情報處理技術에 관한 試驗에 合格하거나 또는 法務大臣이 告示로 정하는 情報處理技術에 관한 資格을 가지고 있는 때로 日本人이 從事하는 경우에 받는 報酬와 同等以上の 報酬를 받는 場合에 『技術』의 在留資格으로 이러한 活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자가 그 資格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從事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必要的인 技術 혹은 知識에 관련되는 科目을 專攻해서 大學을 卒業하거나 혹은 이것과 同等以

상의 教育을 받거나 또는 10年以上의 實務經驗(大學, 高等專門學校, 高等學校, 中等教育學校의 後期課程 또는 專修學校의 專門課程에서 當該技術 또는 知識에 관련되는 科目을 專攻한 期間을 포함한다)에 의해서 當該技術 혹은 知識을 습득하고 있는 場合에는 資格이 없더라도 免狀다).

① 情報處理技術者試驗의 區分等を 定하는 省令(1997年通商産業省 令第47號)의 表의 上欄에 있는 試驗 가운데 다음의 것

- 가 시스템 애널리스트試驗
- 나 프로젝트 매니저試驗
- 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試驗
- 라 소프트웨어開發技術者試驗
- 마 테크니칼 엔지니어(네트워크)試驗
- 바 테크니칼 엔지니어(데이터베이스)試驗
- 사 테크니칼 엔지니어(시스템管理)試驗
- 아 테크니칼 엔지니어(엔베딧도시스템)試驗
- 자 情報세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터試驗
- 차 上級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試驗
- 카 시스템監査技術者試驗
- 타 基本情報技術者試驗

② 2000年10月15日 以前에 通商産業大臣이 實施한 情報處理技術者 試驗에서 다음에 열거한 것

- 가 第一種情報處理技術者試驗
- 나 第二種情報處理技術者試驗
- 다 特種情報處理技術者試驗
- 라 情報處理시스템監査技術者試驗
- 마 온라인情報處理技術者試驗
- 바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試驗
- 사 시스템運用管理엔지니어試驗

- ㉠ 프로젝트엔지니어시험
- ㉡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시험
- ㉢ 마이콘應用시스템엔지니어시험
- ③ 1996年10月20日 以前에 通商産業大臣이 實施한 情報處理技術者 시험에서 다음에 열거한 것
 - ㉠ 第一種情報處理技術者認定시험
 - ㉡ 第二種情報處理技術者認定시험
 - ㉢ 시스템 애널리스트시험
 - ㉣ 시스템監査技術者시험
 - ㉤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시험
 - ㉥ 프로젝트매니저시험
 - ㉦ 上級시스템어플리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시험
- ④ 싱가포르 컴퓨터소사이어티(SCS)가 認定하는 인증·IT·프로젝트·매니저(CITPM)
- ⑤ 韓國産業人力公團이 認定하는 資格 가운데 다음에 열거하는 것
 - ㉠ 情報處理技師(엔지니어·인포메이션·프로세싱)
 - ㉡ 情報處理産業技師(인다스트리얼·엔지니어·인포메이션·프로세싱)
- ⑥ 中國信息産業部電子教育中心이 實施하는 시험 가운데 다음에 열거하는 것
 - ㉠ 系統分析員(시스템 애널리스트)
 - ㉡ 高級程序員(소프트웨어·엔지니어)
 - ㉢ 程序員(프로그래머)
- ⑦ 필리핀·日本情報技術標準試験財團(JITSE Phil)이 實施하는 基本 情報技術者(펀더멘탈·인포메이션·테크놀러지·엔지니어)시험 (2003年05月30日法務省告示291號에서 追加)
- ⑧ 베트남情報技術試驗訓練센터(VITEC)가 實施하는 基本情報技術者(펀더멘탈·인포메이션·테크놀러지·엔지니어)시험(2003年05月30日法務省告示291號에서 추가)

- ⑨ 미얀마컴퓨터連盟(MCF)이 實施하는 基本情報技術者(핀더멘탈·인포메이션·테크놀러지·엔지니어)試驗(2004年08月27日法務省告示263號에서 追加)
- ⑩ 財團法人資訊工業策進會(Ⅲ)가 實施하는 軟體設計專業人員(소프트웨어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IT 엑스퍼트)試驗(2004年08月27日法務省告示363號에서 追加)

(3) 醫療

日本에서 醫療關係資格을 必要로 하는 醫師, 齒科醫師, 藥劑師, 保健師, 助産師, 看護師, 准看護師, 齒科衛生士, 診療放射線技師, 理學療法士, 作業療法士, 視能訓練士, 臨床工學技士, 義肢裝具士에 대해서는 一定한 招聘機關에서 日本人이 그 業務에 從事하는 場合에 받는 報酬와 同等額以上の 報酬를 받으면서 從事하는 場合에는 『醫療』資格의 在留가 인정된다.

(4) 法律·會計業務

日本の 法律·會計關係의 資格을 가져야만 되는 職業 가운데 辯護士, 司法書士, 土地家屋調査士, 外國法事務辯護士, 公認會計士, 稅理士, 社會保險勞務士, 辯理士, 海事代理士, 行政書士에 대해서는 그 資格을 가짐을 證明하는 文書와 日本에서의 活動內容·期間·地位 및 報酬를 證明하는 文書를 提出하면, 『法律·會計事務』의 在留資格으로 그러한 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 例를 들면 外國에서 취득한 辯護士資格의 場合, 別途로 『外國辯護士에 의한 法律事務의 取扱에 關한 特別措置法』에서 資格取得後 3年以上 그 職에 취임했다는 것이 必要하며, 또 法務大臣은 그 者가 業務를 하는 것을 承認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日本辯護士連合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외에 業務內容은 당해 資格을 取得한 國家의 法을 다루는 外國法事務辯護士로서의 業務이어야 한다는 條件이 붙어 있다.

5. 社會的·文化的人權의 保障

가. 布教·信仰·參拜의 自由

憲法20條1項은 信教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근거 해서 信仰의 自由·宗教的 行爲의 自由·宗教的 結社의 自由가 保障 되며, 그 保障은 外國人에게도 미친다.

外國의 宗教團體에 의해서 日本에 派遣된 外國人宗教家가 행하는 布教, 그 밖의 宗教上의 活動에 대해서는 入管法이 『宗教』의 在留 資格을 設定하고 있다. 宣教을 위한 語學教育, 醫療, 社會事業等의 活動을 하는 場合이라 하더라도 이상의 活動이 所屬宗教團體의 指示에 따라서 宣教活動等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無報酬로 이루어지는 場合은 宗教上의 活動의 一環으로서 인정되지만 報酬를 받아서 하는 場合에는 資格外活動의 許可를 要한다. 『宗教』에 근거한 在留資格의 決定에 있어서는 當該宗教團體로부터의 派遣 狀等의 사본, 派遣期間 및 受入機關의 概要를 證明하는 資料, 宗教家로서의 地位 및 職歷을 證明하는 文書가 必要하다. 『宗教』의 在留資格의 在留期間은 3年 또는 1年이다.

다만 宗教上의 活動이라 하더라도 그 內容이 國內法에 위반하거나 또는 公共의 福祉에 害하는 場合에는 在留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學習·就業·相續·財産管理上의 男女差別

學習·就業·相續·財産管理上의 男女差別은 法制度上으로는 存在하지 않는다. 相續에 대해서는 嫡出子와 非嫡出子간의 法定相續分에 대해서 民法900條가 차이를 두고 있어서 이 점이 差別이라는 批判이 있다.

學習·相續·財産管理上은 實質의으로도 男女의 差別이 없는 데 대해서 就業에 關해서는 現在도 男女의 差別이 問題가 되고 있다. 1985

年 制定된 男女雇用機會均等法이 1997년에 改正되어서 募集, 採用, 昇進, 配置等の 差別이 禁止되고, 違反한 企業名의 公表 등 實効性を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同改正에 의해서 職場에서의 성희롱을 防止하기 위한 事業主의 配慮義務가 規定되었다.

성희롱(섹슈얼 하러스먼트)에 대해서는 현재 職場뿐만 아니라 學校等 많은 機關에서 防止規程이 制定되어져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對處가 社會的으로 浸透해 왔다.

다. 賣春과 性賣買의 規制

賣春에 대해서는 從來부터 賣春防止法이 있지만 사는 자에 대한 處罰이 없이 거의 有効하게 機能하지 못했다. 한편, 性賣買의 年少化現象에 對應하는 것으로서 1999년에 『兒童買春, 兒童포르노에 관한 行爲等の 處罰 및 兒童의 保護等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어서 兒童買春을 周旋한 者를 處罰할 뿐만 아니라 兒童買春을 한 者에 대해서도 3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萬円以下の 罰金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兒童포르노에 대해서는 輸出入을 한 者에 대해서도 3年以下の 懲役 또는 300百萬円以下の 罰金으로 처벌하고 또 兒童 포르노를 目的으로 外國에 居住하는 兒童을 略取되고, 유괴되거나 또는 賣買된 자를 居住國外로 移送한 日本國民은 2年以上의 有期懲役に 처하는 등의 規定을 두고 있다. 또 이러한 嚴罰規定과 더불어 對象이 된 兒童에 대한 保護規定도 두고 있다.

같은 1999년에 『風俗營業等の 規制 및 業務의 適正化等에 관한 關한 法律』(以下 『風營適正化法』이라 한다)도 改正되었다. 이 법은 風俗營業의 實態나 國民의 意識이 變化해 온 점을 반영해서 合理化를 포함과 동시에 國際化的 進展에 수반하여 外國人女性이關與하는 賣春事犯等이 증가하고 있는 외에 携帶電話나 개인컴퓨터等的 普及에 따라서 無店舖型的 性을 파는 물건으로 하는 營業이 增加하는 이른바 핑크광고가 一般家庭에까지 뿌려지는 등 性風俗에 관한 秩序가 크게

변해왔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여기에 對處하고자 하는 것이다.

同法에서는 새롭게 風俗營業許可의 缺格事由로서 不法就勞助長罪을 犯해서 罰金以上の 刑에 처해지고 나서 5年을 經過하지 않은 者에 대해서 風俗營業의 許可를 하지 않도록 하는 외에, 店舖型性 風俗 特殊營業에 대해서는 廣告·宣傳의 規制를 엄격하게 하고 또 無店舖型性 風俗 特殊營業(사람의 住居 또는 사람의 宿泊用으로 이용되는 施設에서 異性 손님의 性的好奇心에 따라서 그 손님에게 接觸 하는 役務를 提供하는 營業으로 當該役務를 하는 者를, 당해 손님의 依賴를 받아서 派遣함으로써 영업하는 자나 電話等에 의한 고객의 依賴를 받아서 오로지 성인비디오等の 性的好奇心을 불러일으키는 物品을 販賣하거나 대여하는 營業으로 當該物品을 配達하거나 또는 配達시킴으로써 영업하는 자)나 映像送信型性 風俗 特殊營業(오로지 性的好奇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性的인 行爲를 나타내는 場面 또는 衣服을 벗은 人의 姿態의 映像을 보여주는 營業으로 放送이나 有線放送以外の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當該映像을 傳達함으로써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規制도 新設하고, 이러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營業의 本據가 되는 事務所(事務所가 없는 자는 住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公安委員會에 所定の 事項을 記載한 신고서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 喫煙·飲酒

日本에서는 飲酒·喫煙은 法律에서 滿20歲 以上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에 대해서 未成年者喫煙禁止法은 滿2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煙草를 흡입할 수 없고(제1조), 前條에 違反한 者인 때는 行政處分으로 喫煙을 위해서 所持하는 煙草 및 器具를 沒收한다(제2조). 未成年者에 대해서 親權을 행하는 자가 그 정을 알고서 그의 喫煙을 制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에 처한다(제3조제1항). 親權者를 대신하여 未成年者를 監督하는 者 또한 前條에 따라 처단한다(제3조제2

항). 煙草 또는 器具를 販賣하는 者は 滿20歲가 되지 못한 者의 喫煙의 防止에 기여하기 위해서 年齡의 確認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강구하도록 한다(제4조). 滿20세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당해 미성년자 스스로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煙草 또는 器具를 販賣한 者は 50萬円以下の 罰金에 처한다(제5조).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 혹은 사람의 代理人, 使用人 그 외의 從業員이 당해 法人 또는 사람의 業務에 관해서 前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는 行爲者를 처벌하며, 그 밖의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 동조의 형을 부과한다(2000. 11 追加)(제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최근에는 喫煙場所에 대한 制限規定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制定된 健康增進法은 25條에서 『學校, 體育館, 病院, 劇場, 觀覽場, 集會場, 展示場, 百貨店, 事務所, 官公廳施設, 飲食店 그 밖에 多數者가 利用하는 施設을 管理하는 者は 당해시설을 利用하는 者에 대해서 受動喫煙(室內 또는 이것에 준하는 環境에서 他人의 담배연기를 맡도록 하는 行爲를 말한다)을 防止하기 위해서 必要한 措置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鐵道營業法이나 旅客自動車(버스, 택시) 運送事業等運輸規則, 旅客 自動車(버스, 택시) 運送事業等運輸規則이 탈 것에서의 禁煙場所에서의 喫煙을 禁止하고 있다. 勞動安全衛生法은 1992年の 改正에서 추가되어진 71條의2가 『快適한 職場環境을 形成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것을 받아서 『事業者가 취해야 하는 快適한 職場環境의 形成을 위한 措置에 관한 指針』(法律省告示 第59號)가운데에서 『空氣環境에 있어서 담배의 연기나 냄새에 대해서 勞動者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維持管理하도록 하고, 必要에 따라서 作業場內에 喫煙場所를 指定하는 등의 喫煙對策을 강구할 것』등의 內容이 규정되어 있다.

담배事業法은 製造담배의 廣告를 하는 者에 대해서 未成年의 喫煙防止 및 消費와 健康간의 關係에 대한 配慮義務를 부과하고 있으며, 담배포장지에 『지나친 흡연에 주의합시다』를 記載하도록 함과 同時

에 電波媒體에 의한 담배광고에 대해서는 1998年4월부터 自主規制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

술에 대해서는 未成年飲酒禁止法에서 滿2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酒類를 飲用해서는 안된다(제1조제1항). 未成年者에 대해서 親權을 행하는 者 혹은 親權者에 대신해서 監督하는 者가 未成年者의 飲酒를 알게 된 때는 이를 制止해야만 한다(제1조제2항). 營業者 가운데 그 業態上 酒類를 販賣 또는 供与하는 자는 滿20세에 이르지 못한 자의 飲用に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酒類를 販賣 또는 供与해서는 안된다(제1조제3항). 營業者로서 그 業態上 酒類를 販賣 또는 供与하는 자는 滿20세에 이르지 못한 자의 飲酒의 防止에 기여하기 위해서 年齡의 確認 그밖에 必要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조 제4항). 滿20세에 이르지 못한 者가 그의 飲用に 제공할 目的을 가지고 所有 또는 所持하는 酒類 및 그 器具는 行政処分을 통해서 이를 沒收하거나 또는 廢棄 그밖에 必要한 処置를 해야 한다(제2조). 第1条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자는 50万円 以下の 罰金에 처한다(제3조 제1항). 第1条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3조 제2항).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 혹은 사람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者가 그 法人 또는 사람의 業務에 관해서 前条第1項의 違反行為를 한 때는 行為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사람에 대해서 同項의 형을 科할 수 있다(제4조)라고 규정한다.

同法에 근거해서 『未成年者의 飲酒防止에 관한 表示基準』에는 酒類의 容器 또는 包裝에 『未成年者의 飲酒는 法律에서 禁止하고 있다』는 뜻을 原則적으로 6포인트의 活字以上の 크기의 日本文字로 表示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酒類小売販賣場에서는 酒類의 陳列場所중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酒類売場』또는 『酒類の陳列場所』라는 뜻 및 『未成年者의 飲酒는 法律에서 禁止하고 있다』는 뜻을 100포인트의 活字以上の 크기의 日本文字로 표시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飲酒運轉에 의한 事故가 많아지면서 2001年12월에 危險運轉 致死罪(刑法第208條의2)가 신설되어 『알코올 또는 藥物的 影響에 의해서 正常的인 運轉이 困難한 狀態에서 4輪 以上の 自動車를 주행함으로써 사람을 부상시킨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에 처하고, 사람을 死亡시킨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처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罰金刑이 없어지고 懲役刑을 大幅的으로 上향시켰다. 따라서 危險運轉致死罪로 처벌받게 되면 略式罰金이 아니라(執行猶予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필히 懲役의 判決이 이루어지고, 당해 判決이 確定되고, 分限條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다면 失職하게 된다. 또, 2001年 6월에 道路交通法도 개정되어 술기운운전, 취중운전의 罰則이 강화되어서 술기운은 1年 以下の 懲役 또는 30万円 以下の 罰金, 취중운전은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50万円 以下の 罰金이 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2002年2월에 同法施行令이 개정되어 술기운운전의 判定基準이 엄격해짐과 동시에 運轉免許의 停止 혹은 取消의 基準이 되는 違反点数가 상향조정되었다. 즉 지금까지는 呼氣 1리터 중의 알코올濃도가 『0.25mg以上』이 술기운운전이었으나 『0.15mg以上』이 술기운운전이 되었다. 또 『0.15mg 以上 0.25mg未滿』의 술기운違反 点数를 新設해서 6点으로 함으로써 従来の 『0.25mg以上』의 술기운 運轉은 6点에서 13点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취중운전도 15点에서 25点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結果, 1回의 違反이라도 『0.15mg以上 0.25mg 未滿』의 술기운은 免許停止30日, 『0.25mg以上』은 免許 停止90日, 취중運轉은 免許取消 2年이 된다.

마. 兒童虐待

日本에서는 최근 家庭内에서의 兒童虐待가 增加하여 問題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0년에 兒童虐待防止法이 制定되었다. 동 法律에서 虐待란 身體的인 暴行·외설적인 行爲·食事を 주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는 등의 방치·心理的으로 상처를 주는 언동의 4가지를 가리키며, 早期發見에 의한 保護를 도모하기 위해서 ①學校

나 兒童福祉施設, 医療機關의 職員이나 辯護士들에게 早期發見의 努力義務을 부과하고 兒童相談所에 通告하더라도 비밀준수의무위반을 묻지 않고, ②兒童相談所의 職員들은 虐待의 우려가 있는 경우, 兒童의 自宅등을 현장조사하고 警察官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兒童을 保護하더라도 保護者가 『親權』을 내세워 兒童을 도로 데려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保護者의 面會나 通信을 制限할 수 있게 하는 등 親權의 一時停止도 인정하고 있다. 兒童虐待防止法은 3年後의 개정작업을 예정해서 제정되었지만 2004 年에 수정·개정되었다. 改正法은 당시까지의 規定이 兒童 相談所등에 대한 通告義務를 『虐待를 發見한 場合』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証拠가 없더라도 몸의 반점 등 虐待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를 발견한 場合』으로 対象을 擴大하여 早期發見의 徹底를 꾀하고 있다.

厚生労働省은 2004年의 兒童虐待法수정작업과 並行해서 兒童 虐待의 早期發見이나 發生子防등을 目的으로 兒童相談所 등에 의한 相談體制나 兒童養護施設등을 비롯한 施設을 개선할 것을 결정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相談業務나 施設體系등을 규정한 兒童 福祉法改正도 포함해서 施設에서의 治療나 地方自治体の 業務內容 등을 바꿀 方針을 세워서 2004年에 兒童福祉法도 改正되었다. 兒童 福祉法은 본래 1947年에 制定되어서 戰爭으로 兩親을 잃은 어린이들이 保護, 指導의 対象으로 想定되어 있어서 現在의 어린이의 實情 과 맞지 않는 部分도 指摘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施設의 實態를 보면 養護施設, 情緒障害兒短期治療 施設, 兒童自立支援施設의 各各에서 入所兒童의 半數程度가 虐待를 經驗하고 있다. 統計가 없는 乳兒院에서도 상당수가 虐待를 경험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厚生労働省은 『虐待의 早期發見이나 發生 子防을 위해서도 實情에 맞추어서 體制를 갖출 必要가 있다』고 해서 相談體制에 대해서는 地方公共団体の 業務 방향을 重要な 檢討課題로 파악했던 것이었다. 그 結果, 改正兒童福祉法에 근거해서 2005年부터 지금까지 都道 府県の 兒童相談所을 중

심으로 했던 兒童問題에 대한 相談에 市町村도 対応하도록 되었으며, 市町村이 相談을 하고 必要에 따라서 關係機關이 연대해서 対応하도록 되었다.

다만 본래 兒童虐待問題를 地方차원에 맡기고 地方財政으로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地域格差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강한 批判이 있다. 그리고 兒童虐待에 관련해서는 外国人 兒童에 대해서도 取扱의 차이는 없다.

6. 外国人에 對한 社會保障

가. 退職年金

国民年金法에는 원래 国籍条項이 있었지만, 『難民의 地位에 關한 条約』(以下 『難民条約』이라 약칭한다)의 비준과 더불어 同条約 第23条에 公的扶助에 關해서, 또 第24条에 労働法制 및 社會保障에 關해서 『自国民에게 베푸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서 1982년에 国籍条項을 철폐하고 外国人도 国民 年金에 加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2年1月1일에 難民条約發效와 同時에 『關連整備法』(難民의 地位에 關한 条約等에의 加入에 따른 出入国管理令 그 밖의 關係法律의 整備에 關한 法律 <1981년, 法律 86号>)이 施行되어 同法第2条 『国民年金法の一部改正』이 이루어진 것이다.

国民年金은 원칙적으로 日本国内에 住所가 있는 20歲以上 60歲 未滿의 모든 사람이 国籍에 關係없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保險料를 每月 부과하고 老齡·障害·死亡 등의 狀態가 된 때 年金이 支給되는 制度이다.

年金을 받기 위한 條件은 外国人도 日本人도 같으며 原則적으로 20歲 以上 60歲 未滿 동안 『25年(300월)』의 資格期間을 충족시킬 必要가 있다. 이 資格期間을 충족시키면 海外에 居住하고 있더라도 原則

的으로 65歲가 되면 年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合算対象期間, 外国人에 대해서는 1981年 12月 以前에 日本国内에 住所를 가지고 있었던 期間等은 年金을 받기 위한 資格期間에 산입되지만 年金額의 受給額의 計算에는 산입되지 않는 점이 國籍을 가지는 者와의 사이에서의 差別이라는 비판이 있다. 厚生年金에 대해서는 外国人이 加入하더라도 保險料가 中도에 단절되어 버려서 年金給付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加入을 拒否하는 理由가 되고 있었지만 1995年 4月부터 国民年金, 厚生年金 모두 脱退一時金を 받는 制度가 新設되었다. 脱退一時金を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日本國籍을 가지고 있지 않는 者, ②厚生年金保險(또는 国民年金)을 6개월 수납한 자, ③日本에 住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④年金(障害手當金を 포함한다)의 權利를 가진 적이 없는 자라고 하는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한 자이다. 20歲 未滿인 者, 또 国民年金에 加入中으로 支給을 받을 年齡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障害基礎年金(1985年 改正까지는 障害福祉年金이라 했다)이 있다. 1982年の改正前の 国民年金法 第56条는 『疾病에 걸리거나 또는 負傷해서 그 初珍日에 被保險者였던 者로서 初珍日の 前日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지만, 廢疾認定日에 당해 傷病에 의해서 別表에서 정하는 程度의 廢疾의 狀態에 있는 때는 第30条에서 정하는 障害年金의 支給要件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자에게 障害年金을 支給한다. 다만 그 자가 廢疾認定日에 日本國民이 아닌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함으로써 外国人은 障害福祉年金을 支給받을 수 없었다. 이 國籍에 따른 差別도 앞의 国民年金法の 개정과 더불어 없어졌다.

다만 이와 같은 年金法の 改正에는 經過措置가 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1982년1월1日施行의 時点에서

- ① 35歲以上인 자는 老齡年金의 支給要件인 25年間の 抛出期間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더라도 年金이 支給되지 않는다.
- ② 60歲以上은 年金에 加入할 수 없어서 老齡福祉年金이 支給되지

않는다.

③ 20歲以上の 障害者は 障害福祉年金이 支給되지 않는다.

④ 母子·準母子狀態에 있는 사람에게는 母子·準母子福祉年金이 支給 되지 않는다.

(母子福祉年金이란 被保險者の 夫가 死亡하고 18歲 未滿의 子〈障害者は 20歲까지〉를 養育하고 있는 경우, 準母子란 夫 以外の 노동가 능자가 死亡하고 母 以外の 女性과 子女가 남겨진 상태, 祖母와 손자 등)

고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앞의 難民條約에 따른 關連整備法 附則 5 項이 『이 法律에 의한 改正前の 国民年金法에 따른 福祉年金이 支給 되지 않거나 또는 當該 福祉年金의 受給權이 消滅한 事由 중 施行日 前에 발생한 것에 근거한 同法에 의한 福祉年金의 不支給 또는 失權에 대해서는 여전히 從前の 例에 따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以前부터 年金의 受給權이 없었던 在日外国人障害者, 國民年金 発 足時에 日本 国籍이 아닌 자는 障害福祉年金(現在의 障害基礎年金)이 이 개정에 의해서도 『여전히 從前の 例』에 따라서 支給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年金制度의 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해서 自治体차원에서는 特別支給金制度를 두는 곳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医療保險

医療保險에는 健康保險(常時5人 以上の 被用者를 가지는 法人에서 일하는 者 및 그 家族이 対象), 国民健康保險(다른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 共濟組合保險(公務員 등이 加入), 船員保險의 4種類가 있지만 이 가운데 앞의 두가지는 外国人도 加入할 수 있다.

健康保險에 관해서는 国籍條項이 없고 外国人에 대한 區別이 없다. 外国人登錄을 하고 있는 해당하는 外国人労働者 가운데 加入率은 20%程度이다. 그 理由는 첫째, 雇用關係가 『派遣』이나 日本人 從業

員과는 다른 条件에서 契約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強制被保險者로서 加入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둘째, 外国人이 健康保險의 被保險者로서의 절차를 社會保險事務所에서 거치는 場合, 従業員 5人以上の 事業所에서는 同時に 厚生年金에의 加入 절차도 해야만 한다는 問題가 있다. 事業主의 입장에서는 두가지 保險料를 負擔해야만 한다는 負擔이 있으며, 한편 外国人法律者の 입장에서도 日本에서의 就勞期間은 通常 짧아서 厚生年金保險의 老齡年金의 受給要件인 25年간의 加入期間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國民健康保險은 國民年金法과 더불어 1982年 以降, 國籍 條項이 撤廢되었다.(在日韓国人에 대해서는 1965年의 日韓協定 4條에서 永住資格을 가진 在日韓国人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1986年 4月 以降는 滞在資格의 적법여부를 묻지 않고, 또 就勞目的으로 滞在하는 자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 外国人에게 適用되고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가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첫째, 國民健康法 7條는 『當該 市町村의 区域内에 住所를 가지는 날』에 被保險者資格을 取得하게 되었으며, 外国人에 대해서는 外国人登錄을 한 날로부터 1年으로 규정되어 있다(1992年 以降 留學生이나 就學生과 같은 適法한 滞在資格을 가지고 數年間 在留 資格이 인정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登錄後 3개월이 지난날부터 인정 된다). 그 결과 短期滞在者는 保障을 받을 수 없다는 問題가 있다. 다만 많은 지자체는 『一年間の 滞在』를 『一年間の 滞在 子定』으로 解釋해서 條件을 緩和하고 있다. 둘째, 앞의 7條의 『住所를 가진다』고 하는 條件 때문에 많은 不法滞在者가 需給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問題가 있다.

保險에 加入될 수 없는 不法滞在者에 대한 救濟로서 生活保護法 上의 醫療扶助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外国人에 의한 醫療費불지급을 충당한다고 하는 措置가 從來 이루어져 왔지만, 1990年에 厚生省이 方針을 변경해서 現在는 永住者, 日本人의 配偶者等, 永住者의 配偶者, 定住者에게만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法律災害에 관해서는 不法就勞者の 경우에도 使用者에게는 民事責任이 있으며, 勞災保險法에 근거해서 逸失利益, 慰謝料의 賠償이 이루어진다.

V

私權의 基礎로서의
韓·中·日 民法典

1. 社會의 基本的 構成原理

가. 民法의 地位와 機能

일반적으로 민사법학자들은 “기본법”이란 “사회적 기본적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는 이미지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법은 근대사회의 보편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때 그때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존재이다. 프랑스 민법 제200주년을 맞이한 기념 축사에서 시라크(M. J. Chirac) 대통령이 구사한 “프랑스의 진정한 민사헌법인 민법전”(véritable constitution civile de la France)이라는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이 민법의 역할을 대단히 적절하게 대변한다.¹⁰³ 민법은 “기본적인 법률”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개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민법이 어떤 부분의 사회에 있어서는 현실적 역할이 감축되고, 그 대신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현실에 직면한다.¹⁰⁴

나. 民法의 發展과 展望

정보화 및 전산화의 급진전은 계약법 중 특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종래의 面對面 契約締結過程 및 隔地者間의 契約締結過程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전자소비자계약법 분야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작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화의 급진전은 고도정보화사회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민법이 “국내법”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게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변화에 적응

¹⁰³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Message de Monsieur Jacques Chirac, in Le Code civil 1804~2004 : Livre du Bicentenaire*, Dalloz/Litec, 2004, p. 3 et s; 中田裕康, 앞의 주4)논문 『民法の現代語化』, p. 99 참조.

¹⁰⁴ 김민규, “일본민법의 발전과 동향,”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3), pp. 71-74.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세계화의 경향으로서 그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성과가 이른바 UNCITRAL의 국제물품매매 통일조약(CISG)이라 할 수 있다.¹⁰⁵ 불법행위법 유럽위원회는 2004년 10월 15일 “유럽 불법행위법”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을 확정한 바 있다.¹⁰⁶ 아시아 각국에서도 최근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힘입어 자국의 민법전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경험한 경제사정의 변화(금융위기)는 특히 민법상의 담보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담보법에 대한 개정논의 그리고 파산법의 개정이라는 공통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200여년(프랑스) 또는 100여년간(독일 및 일본) 시행하여 온 종래의 민법에 대한 그동안의 판례 및 학설의 발전을 포함한 이른바 민법학의 발전이 법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민법전과 민사 규범에 관한 인식 사이에 乖離現象이 발생하여 民法典의 空洞化 또는 民法典에 대한 불신을 자아낼 수 있다.¹⁰⁷

2. 韓國 民法

가. 近代民法의 胎動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는 원시법에서부터 출발하여 중국의 법제의 영향을 받아 왔으나,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의 민법

¹⁰⁵ 정조근·김민규, “국제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동아법학』 (동아대·법학연구소) 제11호(1990), p. 377 이하 참조.

¹⁰⁶ 신유철, “유럽불법행위법의 통일과 전망,”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 (대법원·한국민사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4. 12. 21), p. 35 이하 참조.

¹⁰⁷ 김민규, “일본민법의 발전과 동향,”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3), p. 51.

제정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하여 한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법의 영향에서 일본의 서구법의 영향이 교차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일제는 조선민사령(1912년)의 시행을 통하여 일본 민법을 직접적으로 조선에 적용하였다. 다만, 조선민사령에 의하면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률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며(제10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제11조).¹⁰⁸ 이를 기초로 일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관습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조선의 관습조사에 착수하였다.¹⁰⁹

한국에 있어서 일본 민법은 미군정에 의하여 1960년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일본 민법의 적용은 현행 민법의 제정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民法典의 編纂과 民法의 特徵

광복 이후 미군정 시대에는 민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법전기초위원회를 설립하여 민법기초요강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후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는 미군정의 민법제정작업을 이어받아 1950년 민법안 편찬요강을 완성하였고,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

¹⁰⁸ 일제의 조선민사령 중 한국 민사관습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1조 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한 물권을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한다.

¹⁰⁹ 일제의 관습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p. 27 이하; 정종휴, 『민법전의 편찬』, p. 565 이하 참조.

되어 약 11회의 부분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118개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은 해방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¹¹⁰라는 말과 같이 한국 민법(이하 ‘민법’이라 한다)은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약 6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친 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¹¹¹

첫째, 민법은 1950년대의 법사상을 수용하여 근대법 초기의 법 원칙을 수정하려는 후기 근대법 또는 현대법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법 제1조에서 조리(條理)의 범규범성을 인정한 점,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규정한 점, 채권법에 다수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민법은 대륙법계의 법전(法典)을 계수하여 제정되었다. 입법자들은 1950년대에 성문화되어 있던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 중국 민법, 만주 민법 등을 참조하고 당시 한국에 적용되고 있던 일본 민법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하였다.

셋째, 민법은 각 부분마다 최상의 입법례를 선택하여 조합을 이룬 것으로 전체적인 체계는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세부적인 제도들은 스위스 민법·프랑스 민법·만주 민법 등에서 도입된 것들도 있다.

다. 韓國民法의 課題

한국의 법적 전통은 고대 및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관습법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인 고대 원시법에서 비롯되어 점차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성문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관습이나 생활양식이 다른 중국법의 적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이질감이

¹¹⁰ 김증한, “한국법학 30년의 개관,” 『법정』 제5권 9호 (1975. 9), p. 71.

¹¹¹ 류창호, “동아시아문화전통과 한국민법의 발전,”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3), p. 133.

노출되었고, 그 결과 중국법을 당시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고유의 법적 전통을 이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전통적인 법문화는 다소 왜곡되면서 서구의 법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서구법의 도입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한국 법제의 현대화 및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기여도 있었으나, 전통적인 법문화의 단절 및 민중의 생활양식과 법률간의 괴리현상을 초래한 부작용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일제에 의한 서구법 수용 과정에서의 오류는 거래관습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하지 못한 연구로 인해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규범의식과 생활양식을 법률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실제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관계가 민법에 다수 규정되어 법규범의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보편적인 관습으로 인정되어온 법률관계가 법제화되지 않아 입법적 공백 또는 기형적 법률관계를 양산한 점도 있다.¹¹²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국은 문화적·역사적 전통에 있어서 차이점과 함께 많은 공통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근대법의 법제사 과정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연결고리에 의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은 서구 또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다는 점에서 근대법의 계수에 있어서도 유사한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일본 등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동일 법계의 구축에 매몰되기보다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법제 및 등기전산화와 같은 법률시스템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¹¹³

¹¹² 위의 글, p. 152.

¹¹³ 위의 글, p. 154.

3. 日本 民法¹¹⁴

가. 情報化(電算化)

1998년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양도특례법』)의 제정과 2004년 『동산 및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약칭 『동산채권양도특례법』)은 정보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의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04년의 이른바 신 『부동산등기법』을 들 수 있다.

나. 國際化

1998년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화의 예이다. 이 법률은 직접적으로는 정보화(전산화)의 요청의 산물이라 할 것이지만, 국제연합의 국제상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채권양도조약”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실제로는 2000년에 제정된 『소비자 계약법』의 경우도 (민법의 개정시기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독일민법 제 355조(소비자계약에 있어서의 철회권)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국제적 경향(국제적 공통의 인식)을 반영한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高齡化

이 예에 해당하는 법제로서는 1999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창설된 “성년후견제도”를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한 1999년의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해 제정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

¹¹⁴ 김민규, “일본민법의 발전과 동향,”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3), pp. 71-74.

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후견등기법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령 사회와 관련된 법률도 결국 그 범주를 넓혀보면 “민법의 현대화” 작업의 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라. 企業의 經濟活動과 消費者保護

“계약체결과정”과 “계약내용”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정보력의 평등화)를 구현하기 위한 2000년의 『소비자계약법』,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03년의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그리고 2004년의 『파산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은 기업의 경제 활동과 소비자보호의 두 측면을 겨냥한 법제정비에 해당한다.

마. 民法典의 現代語化

사회적 변화요인에 대응하는 변화 중에서도 가장 그 비중이 높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은 바로 2004년의 이른바 “민법전의 현대어화”이다. “민법전의 현대어화”가 바로 “민법의 현대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을 표현이나 형식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다’는 목적¹¹⁵에 비추어 본다면, “민법전의 현대어화”가 “민법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그다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¹¹⁶

¹¹⁵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提案理由説明’ (日本第161回国會에 제출된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關係資料’) 參照.

¹¹⁶ 潮見佳男, “民法の『現代語化』と民法の『現代化』,” NBL, No. 800 (2005), p. 67 參照.

4. 中國 民法

가. 民法典 制定推進의 背景과 經過¹¹⁷

중국은 오랜 동안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상품 경제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로 발전해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사회주의민법에서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민법전의 제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과 개방을 하고, 2001년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의 보편적인 규범의 민법전의 제정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포괄적인 상세한 민법전의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포괄적 민법전의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제정이 시급한 부문부터 부문별로 개별입법을 한 후에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민법전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민법통칙(1986년 제정), 담보법(1995년 제정), 계약법(1999년 제정), 혼인법(1980년 제정), 입양법(1991년 제정), 상속법(1985년 제정)은 입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법총칙, 물권법, 인격권법, 권리침해책임법, 지적재산권법, 섭외사법을 추가로 제정한 다음, 이들을 통합하여 중국민법전을 제정할 예정으로 민법전 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민법전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국의 고유제도를 법제화 하면서, 독일을 중심한 대륙민법도 계수하고, 영미법도 계수하고, 과거 사회주의 중주국이었던 구소련의 사회주의민사법의 요소도 계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여러 법계의 서로 다른 법원리와 내용이 混在하여, 아직까지 중국에서 법이론 구성상의 충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입법이 이루어진 부분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多元的 繼受로 인한 법내재적 충돌과 모순을 어떻게 조화롭게

¹¹⁷ 김상용, “중국에서의 민법전 제정작업의 경과와 민법전 초안내용의 검토,”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3), pp. 7-9.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국이 풀어야 할 민사법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은 그 예전부터 세계법 속에서 중국법이 독립한 法系¹¹⁸를 유지하여 왔듯이, 앞으로 제정될 중국 민법전도 역시 중국적 특색이 강하게 표현된 중국민법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법전을 제정해 나감에 있어서 민사법규범에 의한 사회경제의 운용이 人治의인 요소가 많이 개입 되고 또한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私人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고 있다. 이는 특히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餘地를 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¹¹⁹ 이는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의 殘率로 생각된다.

나. 中國民法典의 課題¹²⁰

중국은 대륙법 뿐만 아니라 영미법도 계수하는 소위 다원적 계수로 인하여 양법계간의 이론정립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컨대 계약책임에는 엄격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불법 행위 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며,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의 기준으로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범위결정은 예견가능성설에 의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범위결정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가 과제라 생각된다. 그리고 물권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학설의 적잖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¹¹⁸ 중국의 법학자중에는, 중국의 전통법을 중심으로 한 中國法系를 대륙법계(유럽로마법계), 영미법계, 이슬람법계와 나란히 세계의 4대법계 중의 하나로 분류, 평가하고 있다(Vgl. Yikun Zhu, 『Concise Chinese Law』 (Beijing: Law Press, 2003), p. 3.

¹¹⁹ 구체적으로는 계약법 제38조, 제127조, 민법통칙 제7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¹²⁰ 김상용, “중국에서의 민법전 제정작업의 경과와 민법전 초안내용의 검토,”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3), pp. 43-45.

있지 못한 상태로 이해된다.

중국민법은 그 사상적 기초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므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중국이 계수하고 있는 대륙법이나 영미법은 모두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념하에서 형성, 정립된 법이론에 바탕을 둔 민법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대륙법과 영미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의 중국의 실정에 그대로 맞는 민법이 될 수 없는 점이 많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으로 인하여 행정의 민사법률관계에의 개입가능성이 열려져 있으며, 이는 제도에 의한 민사법률관계의 정립에 人治의 介入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사회사정, 가해자의 경제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액을 결정하도록 한 법규정 역시 人治主義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은 민법에서 인격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인격권법을 민법의 별도의 독립 편으로 편찬하고자 하며, 그리고 중국계약법은 상대방에게 인신손해를 입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도 이를 면책하도록 한 계약상의 약정, 즉 면책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로 물권법에서도 물권법 초안에 대해 見物不見人이라 비판하면서, 물권법을 너무 물적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인법적 성격을 띠게 입법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중국적 특색이 있는 민법전을 만들고자 한다. 고유한 전통 중국법도 현대화하여 이를 입법하고자 하며, 계수된 서양법을 중국의 특색에 맞게 변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도 역시 중국적 특색이 있는 이념이자 체제이다. 물론 중국적 특색이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는 법영역은 물권법과 혼인법이다.

VI

結論 및 提言

1. 韓·中·日 國內法制的 課題

가. 韓國法制的 課題

(1) 教育學術 및 勞動分野

교육기본권은 단순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 초중등학교 편입학 및 대학입학은 학교장의 학칙 및 대학 자체의 전형에 따라서 진행된다.

해외우수학술인력의 초청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현재는 주로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의 확대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공동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각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연구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 허가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해외우수연구인력의 국내고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해외우수인력의 유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령상 근로현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중 1사1제도를 명문화 하였던 것은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폐지하였다.

(2) 文化 및 文化産業 分野

중국인 또는 일본인은 한국에서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설립하고 나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 종류의 활동들에서 모든 외국인들은 한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국서적의 국내출판에 있어서 단행본의 번역출판과 관련하여 문화부에 취해야 할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 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출판물유통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별도

의 규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곧 자유롭고 다양한 양질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저급한 문화상품의 무분별한 수입·수출 및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현재 대중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행태가 순수문화예술, 교육학술, 문화유산 및 출판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법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 및 문화산업 부문에서 교류의 “주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만의 교류를 넘어 학회 및 연구소, 시민단체(NGO) 및 기타 민간으로 주체를 확대시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외국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외국저작물에 있어서 협약이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별이 없다. 그러나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한 ‘해외저작권 보호협의체’가 문화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통으로부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외국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국내 불법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靑少年·體育分野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민간단체의 지원확대 및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간 협정체결 및 양해각서 교환 및 각국의 법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²¹

체육교류에 있어서는 현재도 한·중·일 3개국 프로축구리그 챔피언 결정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간 활발한 교류와 발전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바, 이를 종목별로 다양화하고, 참여 국가도 현재 3개국에서 동북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中國法制的 課題

(1) 文化交流協力

중국법제의 분석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국가영역과 인구의 방대함에 따른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에 따른 중앙집권주의의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통제책이 강점으로 지적되지만, 중국 내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특정한 문화협력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보인다. 그러나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특성화된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점차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문화교류협력관련 법제도를 보면,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당해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일부 나타나는 비밀주의는 중국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어느 특정 문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그 불가사유를 알려면, 그 근거에 대한 비밀주의에 의해 미래적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당 차원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찾아보기란

¹²¹ 윤철경·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연구』 (통일연구원, 2004), p. 197 이하 참조.

쉽지 않다. 이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책결정 및 집행체제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財産權 保護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경제적으로 지속 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은 무역장벽의 제거와 서비스 분야의 개방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로 무역과 외국 자본의 유입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인적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대내적으로 입법의 분산화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입법조정 대상과 지방정부의 입법조정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조문이 서로 다른 법률과 법규 중에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법률적용 대상일지라도 국적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법률이 서로 달라 내국민대우 원칙의 실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법률정책의 통일성과 관련한 문제는 바로 법률의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투명성 원칙’은 WTO에서 추구하는 3대 원칙 중의 하나로서 <TRIMs 협정> 제6조에서는 각 회원국은 1994년 GATT 제10조의 투명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인 중국정부도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입법법>을 제정하여 법률, 법규, 규장의 입법절차와 공포절차를 규정하여 법률의 투명성과 공개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분산화된 입법체계는 입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통일성 원칙과 안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투명성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외국과의 물질·인적 교류를 위하여 먼저 입법체계의 통일화와 함께 투명성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제 통일을 이루어져야 한다.

(3) 教育·勞動

중국은 경제부문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교육체제의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한 중국의 정책적 변화양상은 해당 법령의 변화를 가져왔다. 당연히 중국에서 교육은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큰 변혁의 길을 열게 되었으며, 그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1980년 중반 이후 교육법제의 개혁을 통해 반영되었다.

중국에서 경제개혁과 함께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면서 근로 부문에 대한 개혁과 정비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노동자의 해외진출과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자본국의 노동제도의 도입도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에서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가 정비되고, 노사 쌍방, 특히 근로자의 권리의식의 제고됨에 따라 기업이 노동관계 법을 위반하거나 기본적인 인원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이 노동관계기관에 사건을 신고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기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¹²² 중국 정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중국의 노동관계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 협조적이고 안정된 노동관계의 유지 및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임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교육 및 노동관계분야에서의 대외교류협력제도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관계의 성숙과 밀접한 연장선상에서 발전해왔고, 대내적으로도 중국의 개혁방침과 함께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및 노동분야의 중국법령을 통하여 중국의 당해분야의 대내외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촉진과 제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중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¹²² 문무기, 『중국노동법제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3), pp. 17-18.

교육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전국교육사업 제10차 5개년계획'을 보면,¹²³ 개혁 개방 이후 교육개혁 및 발전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개혁의 추진을 통한 다방면의 발전을 이룩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새로운 21세기에는 국제간의 인적자원의 경쟁의 심화에 따라 인적자원은 국가종합국력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의 교육개혁의 미비성을 극복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문제점은 국민평균교육수준의 저조, 고등교육 규모의 미성숙, 국가 재정교육경비의 부족 등으로 교육개혁과 발전의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표 년도인 2010년의 교육 상황은 실로 중국 정부의 원대한 교육개혁과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著作權 및 文化産業

중국 저작권법의 외국인의 작품에 관한 보호 조항을 종관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베른공약》과 《세계 판권공약》의 관련 규정에 대한 확인이다. 이는 중국(대륙)이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면에 있어서 이미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률 표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중국(대륙)은 문화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행정관리의 방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규제성 행정수단을 위주로 하고 있고, 외국문화산업이 중국(대륙)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장벽을 설치했다. 이러한 행정적 관리규범을 평가해 보면 우리는 그 중 많은 부분이 정책성 조치에 속하고 엄격한 법리적 근거와 기본법(전국 인대가 공포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정책성 조치들은 겨냥성은 비교적 강하지만 안정성이 결여되었고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변경하는 절차와 조건도 역시 필요한 법률규범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게 있어서 이 영역은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충분하다.

¹²³ 『중국교육용 콘텐츠시장 조사보고서』 앞의 책, 참고자료.

다. 日本法制的 課題

(1) 國籍 및 出入國管理

과거의 植民地 支配에 起因하는 國籍問題 및 特別永住者の 問題에 대해서는 個別條約 내지 特別法の 制定에 의한 對處가 必要하다. 그러나 그 밖의 一般的인 國籍이나 入出國關連의 問題는 점차 東 아시 아地域의 文化·經濟交流가 보다 活發하게 된 이후 考慮되어져야만 할 問題이며, 現在の 時點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것과 다른 特別한 對策을 强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2) 國際·社會

國際會議·國際競技의 開催에 대해서 지금도 文化交流에 있어서 특별한 支障은 없다고 보여진다. 이후의 東아시아 國家間의 대규모 행사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올림픽 등의 例와 같은 特別法에 의한 對處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教育

教育關係에서 중요한 問題는 在日朝鮮人學校等の 취급이다. 이런 學校들에서 日本의 大學으로의 入學は 國公立大學이 獨立法人化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보다도 個別的인 改善이 이루어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教科書檢定の 問題는 지금까지 特히 韓國·中國으로부터 많은 批判을 받고 있지만 이 점은 檢定制度의 不備에 起因하는 問題라기보다는 檢定에 있어서 檢定擔當者가 어떤 具體的인 判斷을 할 것인가에 起因하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日本國內에서도 檢定制度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意見이 있지만, 檢定制度을 폐지함으로써 外國에서 批判을 받는 教科書를 採用하는 學校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制度的인 改善에 의해서 問題의 解決을 꾀하는 것은 困難하다고 생각된다. 그 밖

의 문제는 日本의 制度에 固有한 것은 아니다. 개선한다고 하면 東아시아 각국에서 個別的으로 條約을 체결해서 學歷을 쉽게 認定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처가 必要할 것이다.

(4) 就業

현재 가장 문제는 形式的으로는 『勉學』으로 入國했으나 事實上 『就勞』를 目的으로 해서 오는 者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는 入國하는 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日本의 雇用者가 싼 勞動力을 구하고자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制度的인 解決이 困難할 것이다. 特別永住者의 公立下級學校에의 就職等의 문제는 國內的으로 特別法等에 의한 對處가 必要하다.

(5) 社會的·文化的 人權의 保障

일본국 憲法제20條제1項은 信敎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근거해서 信仰의 自由·宗敎的 行爲의 自由·宗敎的 結社의 自由가 보장되며, 그 保障은 外國人에게도 미친다. 學習·就業·相續·財産管理上의 男女差別은 法制度上으로는 存在하지 않는다. 相續에 대해서는 嫡出子와 非嫡出子간의 法定相續分에 대해서 民法 제900조가 차이를 두고 있어서 差別이라는 批判을 받는다.

賣春에 대해서는 從來부터 賣春防止法이 있지만 사는 자에 대한 處罰이 없이 거의 有効하게 機能하지 못했다. 日本에서는 飲酒·喫煙은 法律에서 滿20歲 以上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喫煙場所에 대한 制限規定이 증가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최근 家庭內에서의 兒童虐待가 增加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0년에 兒童虐待防止法이 制定되었다. 본래 兒童虐待問題를 地方차원에 맡기고 地方財政으로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地域格差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강한 批判이 있다. 그리고 兒童虐待에 關係해서는 外國人兒童에 대해

서도 取扱의 차이는 없다.

(6) 社會保障

外國人の 社會保障 以外の 論點에 있어서는 外國人에 對해서 制度的으로 對處해야할 問題는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醫療保險에 對해서 는 實際上 사람수가 많고 또 危險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아서 不法律者의 醫療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커다란 課題이다.

2. 障礙法制的 改善

가. 政治的 努力

문화공동체는 정치상황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한·중·일 3국간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방해한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中·日간의 패권주의, 韓·日간 및 韓·中간의 유서 깊은 영토분쟁, 제2차 세계대전 주동자들을 추모하는 일본 정치가들의 신사참배, 한국인 종군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외면, 동북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검정 교과서 문제 등은 정치문제로 끝나지 않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 간접으로 가로막는다.

작금의 동북아 3국간의 정치적 현안들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더라도, 동북아는 북한의 핵무장 또는 미군의 동북아 주둔 등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갈등과 긴장관계로 접어들 소지가 짙다. 남북한 간의 평화를 향한 교류와 협력의 문제도 예상을 뛰어넘는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여 동북아 국가들은 헌법이 규정 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처럼 사회문화 영역이 정치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안정화” 시스템의 모색이 요청된다.

나. 經濟的 努力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전개되는 한·중·일 3국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경우에 따라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방해한다. 각국의 국내법들이 규정하는 육상에서의 경제자유구역은 각국의 문화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비하여 해양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중간수역 등은 영토주권 차원을 넘어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을 둘러싼 갈등의 요인이 된다. 어업분쟁은 법적 장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자국의 어업인들이 국가간 경제수역에 매달리지 아니할 수 있는 국내적 대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간의 국제 환경분쟁은 경제적 비용부담의 문제로 직결되지만 이를 해소·방지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문화변동 : 환경에 대한 생활양식의 변화]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황사의 월경, 온실가스의 이동 또는 육상기인 폐기물들에 의한 황해와 동해의 오염등은 경제적 해법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한편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될 경우에 역내 국가간의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社會文化的 努力

한·중·일 3국은 각자의 사회를 구성하고 규율하는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다. 중국식 사회주의와 일본식 집단주의 그리고 한국식 자본주의는 경제원리상의 차이에 그치지 아니한다. 시장은 어디에도 존재하며 시장은 사회문화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나 기업 등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문화 질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민법전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차이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은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여성·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교육 및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인력운용,

학술·관광 및 스포츠 교류와 협력에서 그리고 문화산업등을 중심으로 한 공연의 자유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등에서 자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장애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일본보다는 한국이 그리고 한국 보다는 중국이 그 장애정도가 더 심하다. 이러한 장애들은 상대방 국가들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각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간 특례[섭외사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促進法制的 造成

가. 政治經濟的 努力

역내 국가 상호간의 정치적 및 경제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사인식, 영토분쟁, 자원갈등 등에서 국제협약의 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치적 (정상)회담 등의 결과를 각국의 국내법 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핵억제·어업협정·자유무역협정등과 같이 당장의 합의가 곤란한 정치경제적 현안들과 사회 문화적 과제 들을 분리시켜 입법화시킬 수 있는 절충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제주에서 열린 제주평화포럼(제3회)은 2005년 6월 11일 채택된 ‘제주 동북아공동체 선언’에서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촉진과 무역·금융·에너지·물류분야의 교류를 가속화시킬 것을 다짐한다.¹²⁴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선언과 병행하여 쌍무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0일 韓·日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산하에 교과서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동연구 결과를 교과서 편수에 참고하는 방안, 고이즈미 총리가 제안한 한반도 징용

¹²⁴ “동북아 공동체 한 목소리,”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13일자, 참조.

자 유골반환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와 사할린 거주 한국인에 대한 지원등의 방안은 양국의 정치적 노력과 일본의 법제적 노력이 병행될 때 성사가 가능하다.

나. 實定法的 努力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요체를 형성하는 외국인의 각종 학교 입학과 교육 그리고 외국인 연구자등에 대한 임용 또는 고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출입국관리 등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각국의 대화와 협력이 긴요하다. 각국의 국내법에서 이에 관한 특례 규정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피하려는 범죄 등에 대한 역내협력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를 규정하는 실정법의 범주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전에 체결된 문화협정 등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의 등록 및 보호와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을 조사·보존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의 불법반출과 같은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도 필요하다. 아울러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보완되고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간 공공신탁(public trust) 시스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교류와 협력의 수준은 인력개발과 자금지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류와 협력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개발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그리고 이러한 개발과 보장의 동력으로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국내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각국이 상호주의 방식으로 인력개발 및 자금지원을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法律文化的 努力

문화공동체는 문자로 표현된 실정법적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아니한다. 법감정은 법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험적이고 좋고 싫고에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무엇보다도 상대방 국가와 국민들의 법감정이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법의식의 원초적 형태로서의 법감정은 각국의 전통적 법문화를 반영하고 실정법 질서의 정비방향을 시사한다. 한·중·일 국민들의 법감정에 대한 법인류학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나 일반국민들은 실정법전을 보고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을 익힌다. 대중들은 머리 보다는 가슴에 더 많은 법을 담고 있다. 법감정과 법의식이 법률 문화의 내용을 차지한다면, 관행과 관습법은 법률문화의 틀을 결정짓는다. 한·중·일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법제와 단절하고 서구의 법제를 대대적으로 계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질서와 법률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식민지배와 군정지배에 의하여 철저히 타율의 법질서를 계수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조화의 폐단이 크다. 한·중·일의 법률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응용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문무기. 『중국노동법제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3.
- 박경하·홍윤기·김유환.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통일연구원, 2004.
- 박기홍·김대관.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통일연구원, 2004.
- 선한승 외. 『사회주의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양영균·문옥표, 송도영.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통일연구원, 2004.
- 윤철경·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연구』 통일연구원, 2004.
- 한국법제연구원.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중국교육용 콘텐츠 시장 조사 보고서』. 2002.
- 한대원 외.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2.
- 한만길·최영표·이현영.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통일연구원, 2004.
- 함수곤.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02.

-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Message de Monsieur Jacques Chirac, in Le Code civil 1804~2004 : Livre du Bicentenaire*, Dalloz/Litec, 2004.
- Zhu, Yikun. *Concise Chinese Law*, Beijing: Law Press, 2003.
- 譚兵. 『民事訴訟法』. 法律出版社, 2001.
- 東京弁護士会外国人人人権救済センター運営委員会編. 『弁護士による外国人人人権救済実例 第二集』. 明石書店, 1988.
- 柳炳華 외. 『국제법 I·II』. 법문사, 2002.
- 范敬宜 등 주편. 『문물보호법률 지침서』. 중국 성시출판사, 2003.
- 手塚和章. 『外國人と法』 第2版. 有斐閣, 1999.
- 張乃根.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1999.
- 萩野芳夫編. 『外國人と法』. 明石書店, 2000.
- 出入國管理關係法令研究會. 『ひと目でわかる外國人の入國・在留案内』 第9版. 日本加除出版, 2003.
- 行財政總合研究所編. 『外國人労働者の人權』. 大月書店, 1990.
- 『21世紀における社会保障とその周辺領域』編集委員會編, 『21世紀における社会保障とその周辺領域』. 法律文化社, 2003.

2. 논문

- 김민규. “일본민법의 발전과 동향.”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 김상용. “중국에서의 민법전 제정작업의 경과와 민법전 초안내용의 검토.”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 김증한. “한국법학 30년의 개관.” 『법정』 제5권 9호, 1975. 9.
- 류창호. “동아시아문화전통과 한국민법의 발전.”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 신유철. “유럽불법행위법의 통일과 전망.”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 대법원·한국민사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4. 12. 21.

- 정종휴. “민법전의 편찬.”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 법학자 대회 논문집(I)』. 한국 법학교수회, 1988. 12.
- 정조근·김민규. “국제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동아법학』. 제11호, 동아대·법학연구소, 1990.
- 渡邊博顯. “非正規滞在外國人労働者の現状について.” 『季刊 労働法』. 208號, 2005.
-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提案理由説明’(日本第161回国會에 제출된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關係資料’)
- 須網隆夫. “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經濟統合と法制度化.”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13號, 2004.
- 依光正哲·野川忍. “對談 外國人労働者受入の國家戰略に向けて.” 『季刊 労働法』. 208號, 2005.
- 潮見佳男. “民法の『現代語化』と民法の『現代化』.” NBL, No. 800, 2005.
- 青木保. “東アジア共同體の文化的基盤.”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國際問題』 538號, 2005年 1月.
- “特集 外國人労働者.” 『日本労働研究雑誌』 531號, 2004年 10月.
- 對外. 『對港奧臺交流手冊』.

3. 기타자료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211.120.54.153>〉

〈<http://www.kice.re.kr>〉.

〈<http://www.xf.gov.cn/zhuanti/souce/index.html>〉.

〈<http://www.xf.gov.cn/zhuanti/souce/index.html>〉.

參考資料

韓·中·日 文化共同體 關聯 法制現況

1. 한국의 현행 문화교류관련 법제현황

가. 교육·학술분야 : 생략(제1차년도 보고서 참조)

나. 문화분야

◎ 문화관광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문화관광부 종무실)

- ①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②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
- ③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
- ④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 ⑤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의 지원
- ⑥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⑦ 외료종교업무의 처리 및 지원
- ⑧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 (문화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 ①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②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③ 국제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④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⑤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 ⑥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에 관한 사항
- ⑦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⑧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 ⑨ 스포츠외교지원 전문인력의 약성에 관한 사항
- ⑩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⑪ 전문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⑫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⑬ 국가대표의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⑭ 국제산악스포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⑮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다. 문화산업분야

◎ 저작권법

제 3 조 (외국인의 저작물)

-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95·12·6>
- ② 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95·12·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 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 ㉠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 ㉡ 음악저작물
 - ㉢ 연극 및 무용·무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 영상저작물
 -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 청소년·체육분야 : 생략(제1차년도 보고서 참조)

마. 관광·레저분야 : 생략(제1차년도 보고서 참조)

바. 국제·외무분야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7 조

- ②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회의신청서 (별지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회의

의 전담조직의 장 (법 제5조제1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①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 (국제회의의 명칭·목적·기간·장소·참가자수·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
- ②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외국인 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국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허용하고 있는
현행 종교 (D-6)자격의허용 대상범위는

- ①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종교인
- ② 외국인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
- ③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종교인
- ④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수련·연구활동을 하는 종교인
- ⑤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고자하는 종교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12조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 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 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 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 (B-2)	관광·통과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 (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 (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 (C-4)	일시홍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학(D-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 (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연수하는 기관으로 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4.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재(D-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주재사무소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7.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18.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재수입기계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0.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1. 연구(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2. 기술지도(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3.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4.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5의2. 연수취업 (E-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로서 기술자격검정 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25의3. 비전문 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재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25의4. 내향선원 (E-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26. 방문동거 (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재(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7. 거주(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 마.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 동반(F-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8의2.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28의3. 영 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다.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8의4. 영 주 (F-5)	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29. 기타(G-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0.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총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2. 중국의 현행 문화교류관련 법제현황

가. 교육학술분야

◎ 헌 법

제46조

-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들을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키운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과학연구, 문화예술과 기타 문화 활동을 하는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과 기타 문화 사업을 중시하는 국민이 인민에 유익한 창조적 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장려하며 방조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67조

- ① 국가는 교육 대외 교류와 협작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 ② 교육 대외 교류와 협작은 독립자주, 평등호혜, 상호존중을 원칙으로 중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손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중국 국내의 국민의 출국유학, 연구, 학술교류 혹은 교육 담당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9조 중국 국경 이외의 개인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을 부합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에 중국 국내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 들어가서 학습, 연구, 학술교류 혹은 교육 담당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70조 중국은 국경 이외의 교육기구가 수여한 학위증서, 학력증서와 기타 학업증서의 승인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제14조 중국은 학위 수여 단위의 추천을 겪고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비준을 받으면 국내외의 뛰어난 학자 또는 유명한 사회 활동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중국에서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 자업을 종사하는 외국인 학자는 학위 수여 단위에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학위 수여 단위와 국무원 학위 위원회는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연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12조

① 국가는 고등학교 간, 고등학교와 과학연구기구 및 기업 사업 조직 간에 협조를 전개하고 우세의 상호 보충을 실시하여 교육자원의 사용 효율을 제고시킨다.

② 국가는 고등교육사업의 국제 교류와 협작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36조 고등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국경 이외의 고등학교 간의 과학기술 문화교류와 협작을 전개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67조 중국 국경 이외의 조직과 개인은 중국 국내에서 합작의 방식으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 自費로 출국유학 중개서비스에 관리 규정

제1조 자비로 출국유학 당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비로 출국유학 중개 서비스의 관리를 강화시키려고 본 법을 제정한다.

나. 문화예술분야

◎ 헌 법

제22조

- ②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 밖의 중요한 역사 문화 유산을 보호한다.

◎ 전통 공예미술의 보호 조례

제11조

- ② 진품의 수출은 금지된다. 진품이 출국 전람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맡는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 ③ 밀수로 진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해 준다. 범죄가 구성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따진다.

◎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16조

- ① 국가는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으로의 문화 예술 공연 단체, 공연장소, 공연 경영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② 국가는 국경 이외의 자금을 이용하여 영업성 공연 장소를 개축하고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국경 이외의 출자자가 경영과 관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방법은 따로 규정한다.

제29조

- ①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대만지역과 외국 문화 예술 공연 단체 혹은 개인을 초청하여 영업성 공연을 중사하는 경우에는 섭외 공연업무를 부담하는 공연 경영기구가 청부말아야 한다. 청부말은 단위는 공연 날짜 이전의 30일내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다음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 ② 영업성 문화 예술 공연 단체 혹은 개인 연극자가 출국하여 영업성 공연을 중사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공연하거나 허가 없이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대만지역과 외국 문화 예술 공연 단체 혹은 개인을 초청하여 영업성 공연을 중사하는 경우에는 문화 행정부서가 책임을 지도록 공연 활동을 정지시키고 공연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문화행정부서는 조직자에게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사정이 심각하면 원래 증서발급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영업성 공연 허가증” 을 정지시킨다.

◎ 오락 장소 관리 조례

제11조 국가는 외상독자경영으로 설립하는 오락장소를 금지한다.

제24조 외국인과 기타 국경 이외의 인원들이 오락 장소에서 취직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제25조

① 비 국유 이동하지 못 하는 문화재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서를 통해서 국무원에 신청하고 특별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 모든 외국인 혹은 외국 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고고 조사, 탐사, 발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 실시조례

제6장 문화재 출입국에 관한 규정

제45조 문화재를 외국으로 운송, 우편, 휴대할 경우 출국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문화재 출입국 심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 출국 전람 기간이 전람 기한을 초과한 경우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부서가 책임을 지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람기한을 개정시킨다.

다. 문화산업분야

◎ 헌 법

제22조

①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신문, 방송, TV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

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 문화 활동을 전개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 출판 관리 조례

제39조 국가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소매 업무를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5장 출판물의 수입

제41조 출판물의 수입 업무는 본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경영한다. 그 중의 신문, 정기간행물 수입 업무를 경영하는 것은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의 지정에 따라야 한다.

◎ TV방송 관리 조례

제10조

② 국가는 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과 중외합작경영으로의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의 설립을 금지한다.

제26조 위성TV방송의 지면 접수 시설의 설치와 사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TV방송 행정부서에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국경 이외의 TV방송 프로그램 접수기와 기타 위성TV방송 지면 접수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 TV방송 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유선TV 관리 규정

제10조

- ① 개인은 유선TV방송국의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다.
- ② 아무 단위는 국경 이외의 기구 또는 개인과 합자, 주식 합병 방식으로 유선TV방송국을 설립하여서는 안 되고 유선TV넷을 건설하거나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유선TV방송국은 아무 단위와 국경 이외의 기구와 개인에게 프로그램 또는 방송 시간 단을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 유선TV방송국이 방송하는 국경 이외의 동영상의 방송은 반드시 영화 TV방송부서의 심사를 겪고 비준을 받고 영화 TV방송부서가 지정한 단위가 통일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 다음 경우 중의 하나가 있을 때는 유선TV방송국에서의 방송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된다.

- ① 국가의 법률, 법규, 규장과 정책이 위반되는 TV프로그램
- ② 방송권을 취득하지 않는 TV프로그램, 영화와 녹화제품
- ③ 영화 TV방송부서가 수여하는 “드라마 제조 허가증”을 가지지 않는 단위가 제작하는 국산 드라마
- ④ 영화 TV방송부서의 비준을 얻지 않아 방송하는 국경 이외의 동영상과 녹화제품
- ⑤ “유선TV방송 허가증”을 얻지 않는 녹화제품
- ⑥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TV프로그램
- ⑦ 위성전송으로 방송하는 국경 이외의 TV프로그램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조

- ① 중국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그 발표여부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 ②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이 저작자의 소속국 또는 상주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향유하는 저작권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③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이 먼저 중국내에서 출판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 ④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국과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거나 가입국과 비가입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8 조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 국경 이외에서 맨 먼저 출판한 다음의 30일 내 중국 국내에서 출판한 경우 그 작품을 외국과 동시에 중국 국내에서 출판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 ① 외국인, 무국적인이 중국 국내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②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그의 공연에 향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 ① 외국인, 무국적인이 중국 국내에서 제작하고 발행하는 녹음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②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그의 제작하고 발행하는 녹음제품에 향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제5조 외국인, 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가 맨 먼저 중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자 소속국 또는 상주국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향유하는 저작권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10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신청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중국에 상주거처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그들의 소속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본 법을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중국에 상주거처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특허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 대리 기구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가 외국으로 특허 신청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에 특허 신청을 한 다음에 국무원이 지정한 특허 대리 기구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본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은 외국에서 처음에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신청을 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외국에서 처음에 외관 설계에 대하여 특허신청을 하는 날부터 6개월 이

내, 동시에 중국에서 같은 주제로 특허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 조약에 따라 혹은 우선권 상호 승인의 원칙에 의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4조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신청권 혹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서에서 국무원 과학 기술 행정부서과 회동하여 비준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의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대등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상표에 관한 기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상표대행자격을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捐贈법

제15조

- ① 국경 이외의 기증인이 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기증 받는 사람이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입국 수속을 한다.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기증 물품에 대하여 기증 받는 사람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증 신청 수속을 한 다음에 세관이 그 허가증에 따라 검사하여 통과시키고 감시하여 관리한다.

- ② 화교가 중국 국내에 기증하는 경우 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僑務부서가 화교를 협조하여 관련 입국 수속을 하고 기증인의 기증 항목의 실시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 ③ 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교무부서는 화교가 중국 국내에 기증한 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26조 국경 이외에서 공익적 사회단체와 공익적 非 營利적 사업 단위에 기증한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물자는 법률, 행정법 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 增值稅를 감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 청소년·체육 분야

◎ 헌 법

제21조

- ②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제9조 국가는 대외 체육 교류의 전개를 격려한다. 대외 체육 교류는 독립자주, 평등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유지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중국 올림픽 위원회는 올림픽 운동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는 체육조직이고 중국을 대표하여 국제 올림픽 사무에 참여한다.

제40조 전국적 종목별 체육 협회는 당해 운동 항목을 보편화시키고 촉진하는 작업을 관리하고 중국을 대표하여 상응한 국제 종목별 체육 조직에 참여한다.

◎ 健身氣功 관리 暫行 방법

제13조 섭외(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이 포함됨)健身氣功 활동의 전개는 외사 활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한다.

◎ 올림픽標識보호조례

본 조례는 2002년 2월 4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5호 공포하고 2002년 4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제1조 올림픽표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림픽표지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림픽 운동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북경시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제1조 올림픽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림픽 지적재산권 소유인과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림픽 운동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실행한다.

마. 관광·레저 분야

◎ 여행사 관리 조례

제16조

- ① 외국 여행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상주 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여행 행정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② 외국 여행사 상주 기구는 여행컨설팅, 연락, 홍보활동만 종사할 수 있고 여행 업무의 경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

- ① 외상투자여행사는 입국 여행 업무와 국내 여행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 ② 외상투자여행사는 분점을 설립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 외상투자여행사는 중국 공민의 출국 여행 업무와 중국 기타 지역의 사람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 지구에서의 여행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 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 방법

제1조 여행사가 중국 공민 출국 여행 활동을 규범하기 위하여 출국 여행자와 출국 여행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바. 국제·외무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교류의 발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본 법을 제정한다.

제4조

- ① 중국 정부는 중국 국경내의 외국인의 합법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② 외국인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고 인민 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 공간기관 또는 국가 안전 기관 집행을 겪지 않는 경우 체포를 받지 않는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국경 이내에 있는 경우 반드시 중국법률을 준수하고 중국 국가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

제1조 중국 공민의 중국 국경을 출입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본 법을 제정한다.

제4조 중국 공민은 출국한 경우 조국의 안전, 영예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因私 출입국 중개 활동 관리 방법

제1조 因私 출입국 중개 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출입국 중개 활동 관리의 강화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4조 중개활동은 공개, 공정, 성신과 공평경쟁, 서비스규범, 自願有償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종교

◎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으라고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 하며 종교를 믿는 또는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3. 일본의 현행 문화교류관련 법제현황

가. 교육학술분야

◎ 학교교육법

제1조 (목적) 초등학교는 심신의 발달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초등학교의 교육목표)

- ①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제시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내외의 사회생활의 경험에 기초하여 인간상호의 관계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공동, 자주 및 자율 정신 육성
- ③ 향토 및 국가의 현상과 전통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의 유도 및 국제협조 정신의 육성
- ④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산업 등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의 육성
-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의 육성
- ⑥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의 육성
- ⑦ 일상생활에서의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처리하는 능력의 육성
- ⑧ 건강, 안전으로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습관의 육성 및 심신의 조화적 발달의 도모
- ⑨ 생활을 밝고 풍부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의 육성
- ⑩ 지방 및 국가의 현재 상태와 전통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르도록 한다.

제40조 (중학교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의 규정은 중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이 때에 제18조의2에서『전조각호』라 함은, 『제36조 각호』를 말한다.

제51조 (고등학교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 2, 제21조, 제28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3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이 때에 제18조의 2에서『전조각호』라 함은, 『제42조 각호』를 말한다.

제51조 의9 (중등교육학교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 2, 제21조, 제28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34조, 제49조 및 제50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중등교육학교에, 제44조부터 제45조의 2까지, 제48조 및 제50조의 2의 규정은 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때에 제18조의 2에서의『전조각호』라 함은『제51조의 3 각호』를 말한다.

제76조 (맹아학교 등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 2(제40조 및 제51조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1조(제40조 및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8조(제40조, 제51조 및 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 제37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맹아학교, 농아학교 및 양호학교에, 제52조의 2의 규정은 맹아학교, 농아학교 및 양호학교의 고등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 (전수학교의 일반적 요건) 제1조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교육시설로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또한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당해 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을 제외한다)은 전수학교라 한다.

- ① 수업 연한이 1년 이상.
- ② 수업 시수가 문부과학장관이 정한 수업 시수 이상
- ③ 교육을 받는 자가 평상시 40인 이상.

◎ 공립대학 등에서의 외국인 교사의 임용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공립 대학 등에서 외국인을 교수 등에 임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에서의 교육 및 연구의 진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술국제교류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117·일부개정)

제2조 (외국인의 공립 대학의 교수 등에의 임용 등)

- ① 공립 대학에서는, 외국인(일본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이하『교원』라고 한다)에 임용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외국인임을 이유로 하여 교수회 그 밖에 대학의 운영에 관여하는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이 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昭和 24년 법률 제1호) 제2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평의회(평의회를 두지 않는 대학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의사에 의거하여 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년55·2003년117·일부개정)

제3조 (외국인의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 센터의 직원으로의 임용 등)

- ① 독립행정법인대학입시센터에서는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에 상당하는 직원 또는 독립행정법인대학입시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그 이사장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상응하는 직원에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중『교육공무원특례법(昭和 24년 법률 제1호)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평의회(평의회를 두지 않는 대학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의사에 의거하여 학장』라고 있는 것은『독립행정법인대학입시센터의 이사장』을 말한다.

(1999년166·추가, 2003년117·일부개정·구제4조 조상)

제 4 조 (해석규정) 전조 제1항의 규정은 독립행정법인대학입시센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昭和 22년 법률 제120호) 제2조 제7항에 규정하는 근무 계약에 의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다. (1999년166·일부개정·구제4조 조하, 2003년117·일부개정·구제5조 조상)

◎ 과학기술기본법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과학 기술(인문 과학에만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동일)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과학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의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학 기술의 진흥에 관한 방침)

- ① 과학 기술의 진흥은 과학 기술이 우리나라 및 인류 사회의 장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며, 과학 기술에 관계된 지식의 집적이 인류에 있어서의 지적 자산인 것에 비추어 보아 연구자 및

기술자(이하『연구자 등』이라고 한다.)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인간의 생활, 사회 및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과학기술의 진흥은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균형 잡힌 연구 개발 능력의 함양,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개발 연구의 조화 된 발전 및 나라의 시험 연구 기관,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민간 등의 유기적인 연대에 대해 배려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과의 상호 연관이 과학 기술의 진보에 있어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보아 양자의 조화된 발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국제적인 과학 기술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 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의 한층의 진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자 등의 국제적 교류, 국제적인 공동연구 개발, 과학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유통 등 과학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 등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구] 과학기술진흥사업단법

제30조 (업무의 범위)

- ①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 내외의 과학기술정보를 수집·분류·정리 및 보관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외에, 이러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이 보관하는 과학기술정보 열람
 - ㉡ 연구 교류에 관하여 다음에 언급한 업무(문부과학성의 소장 사무(대학에서의 연구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 외국의 연구자의 인수에 관계된 지원, 국내 및 국외의 시

협 연구 기관으로의 연구자의 파견, 연구 집회의 개최, 외국의 연구자를 위한 숙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연구자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 ㉑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한 자가 과학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공동하여 실시하는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하여 알선하는 업무
 - ㉒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 연구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및 기술적 원조를 하거나 또한 자재 및 설비를 제공할 업무(문부 과학성의 소장 사무(대학에서의 연구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㉓ 과학 기술에 관계되어, 지식을 보급하거나 또는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무
 - ㉔ 신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하는 초기적 단계의 기술에 관한 식견을 탐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것.
 - ㉕ 기업화가 현저하게 곤란한 신기술에 관하여 기업 등에 위탁하여 개발을 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외에 신기술의 개발에 관하여 기업 등에 알선
 - ㉖ 前各号에서 언급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㉗ 前各号에서 언급한 것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② 사업단은 전항 제8호에 언급한 업무를 하려고 할 때는 문부과 학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1999년160·일부개정)

◎ 연구교류촉진법

제1조 (목적)이 법률은 과학기술(인문 과학에만 관계된 것을 제외

한다. 이하 동일)에 관한 국가 및 특정독립행정법인의 시험 연구에 관계하고,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와의 사이의 교류 및 특정독립행정법인과 특정독립행정법인 이외의 자와의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과학 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220·일부개정)

제 4 조 (외국인의 연구 공무원에의 임용)

- ① 임명권자는 외국인(일본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동일)을 연구 공무원(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언급한 직원에 관해서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시험 연구 기관 등의 長인 자.
 - ㉡ 시험 연구 기관 등의 長을 도와 당해 시험 연구 기관 등의 업무를 정리하는 직의 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政令에서 정하는 자.
 - ㉢ 시험 연구 기관 등에 설치된 출장소 그 밖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관의 長인 자.
- ② 임명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을 연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을 임용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기를 정할 수 있다. (1992년 42·일부개정·구제3조 조하, 1997년 65·1999년220·일부개정)

제 5 조 (연구 집회에서의 참가)연구 공무원이 과학 기술에 관한 연구 집회에서의 참가를 신청한 때는, 임명권자는 그 참가가 연구에 관한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와의 사이의 교류 및 특정독립행정법인과 특정독립행정법인 이외의 자와의 사이의 교류의 촉진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이면서 당해 연구 공무원의 직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 공무원이 소속된 시험 연구 기관 등의 연구 업무의 운

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참가를 승인할 수 있다. (1992년 42·구제4조 조하, 1999년220·일부개정)

제 7 조 (국가의 수탁 연구의 성과에 관계된 특허권 등의 양여)국가는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한 연구의 성과에 관계된 國有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일부를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여 할 수 있다. (1992년 42·구제6조 조하)

제 8 조 (국가가 실시한 국제 공동연구에 관계된 특허 발명 등의 실시)국가는 외국 혹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관과 공동하여 실시한 연구(기반 기술 연구 원활화 법(昭和 60년 법률 제65호)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반 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를 제외한다.)의 성과에 관계된 국유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중 政令에서 정하는 것에 관해서, 이러한 자 그 밖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에 대한 승락을 할 때는 그 승락을 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승락의 대가를 시가보다도 낮게 정할 수 있다. (1992년 42·일부개정·구제 7조 繰下)

제 9 조 (국가의 위탁에 관계된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에 관계된 특허권 등의 취급) 국가는 그 위탁에 관계된 연구이면서 자국 법인과 외국법인,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관(이하『외국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공동하여 실시하는 것의 성과에 관하여,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平成 11년 법률 제131호)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언급한 취급을 할 수 있다.

- ① 당해 성과에 관계된 특허권 혹은 실용신안권(이하『특허권 등』이라고 한다.)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 혹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 중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일부만을 수탁자로부터 양수

- ② 당해 성과에 관계된 특허권 등 중 정령에서의 정함이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이면서 정령에서 정하는 바와의 공유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국 이외의 자의 그 특허 발명 또는 등록 실용신안의 실시에 대해 국가의 지분에 관계된 대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시가보다도 낮은 대가를 받는 것.
- ③ 당해 성과에 관계된 국유의 특허권 등 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관하여 당해 특허에 관계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계된 고안을 한 자가 소속된 자국 법인 또는 외국법인 등 그 밖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승락을 무상으로 하거나 또는 그 승락의 대가를 시가보다도 낮게 정하는 것.

제10조 (국가가 실시한 국제 공동연구에 관계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포기)국가는 외국 혹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관과 공동하여 행한 연구 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이러한 자 그 밖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 있어 『외국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에 언급한 나라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포기 할 수 있다.

- ① 당해 연구가 행해지는 기간에 당해 연구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국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구 및 자재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외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의 청구권
- ② 당해 연구가 행해지는 기간에 당해 연구의 활동에 의해 국가 공무원재해보상법(昭和 26년 법률 제191호)제1조 제1항 또는 방위청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에 대해 발생한 공무상의 재해에 관해, 국가가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제10조,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방위청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보상을 한 것에 의해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 제1항의 규정(방위청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다.)에 의거하여 취득한 외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1990년 36·일부개정, 1992년 42·일부개정·구제8조 조하)

제11조 (국유 시설등의 사용)

- ① 국가는, 국가의 연구에 관한 교류의 촉진을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한편, 당해 연구의 효율적 추진에 특히 유익한 연구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그 연구를 위해 국유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한 기록, 자료 그 밖의 연구의 결과를 국가에 정령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 때는 당해 시험 연구 시설의 사용의 대가를 시가보다도 낮게 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국가의 연구에 관한 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이외의 자로써 시험 연구 기관 등 그 밖의 정령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관과 공동하여 실시한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부지 내에 정비하고, 당해 시설에서 그 연구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해 그 자가 당해 시설에서 행한 연구에 의해 얻은 기록, 자료 그 밖의 연구의 결과를 국가에 정령으로 정한 조건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할 때는 당해 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사용의 대가를 시가보다도 낮게 정할 수 있다.

(1992년 42·일부개정·구제9조 조하, 1998년82·일부개정)

제12조 (배려 사항) 국가는 국가의 연구에 관해 국제적인 교류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조약 그 밖의 국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 및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 (1992년 42·구제10조 조하)

나. 문화예술분야

◎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 2 조(기본이념)

- ①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자의 자주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②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자의 창조성이 충분히 존중됨과 동시에 그 지위의 향상이 의도되고,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③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享受하는 것이 사람들의 선천적인 권리인 점에 비추어 보아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문화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며 또한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의 보호 및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역사, 풍토 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 예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⑦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이 폭넓게 세계로 발신되도록 문화 예술에 관계된 국제적인 교류 및 공헌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⑧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자, 기타 폭넓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 배려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제 교류 등의 추진)

- ① 국가는 문화 예술에 관계된 국제적인 교류 및 공헌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계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자의 국제적인 교류 및 문화 예술에 관계된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가에 대한 지원, 해외의 문화유산의 수복 등에 관한 협력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② 국가는 전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을 종합적으로 세계에 발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술가등의 양성 및 확보)국가는 문화 예술에 관한 창조적 활동을 하는 자, 전통 예능의 전승자, 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획 등을 하는 자, 문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 그 밖의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자(이하『예술가 등』이라고 한다.)의 양성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수에 대한 지원, 연수 성과에 대한 발표의 기회의 확보,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저작권등의 보호 및 이용)국가는 문화 예술의 진흥의 기반이 되는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한 권리에 관하여, 이것들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입각하면서 이러한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것들에 관하여 제도의 정비, 조사 연구, 보급 계몽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음악문화의 진흥을 위한 학습환경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률은 음악 문화가 밝고 풍부한 국민생활의 형성 및 국제상호이해 및 국제 문화 교류의 촉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서의 음악 학습에 관계된 환경의 정비에 관한 시책의 기본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로써 세계 문화의 진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공공단체의 사업)

- ①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에 있어서의 음악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입각하여 그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대체로 다음 각호에서 언급하는 학습 환경의 정비 등의 사업을 하도록 노력한다.
 - ㉠ 음악의 연주 및 감상에 관계된 행사 주최
 - ㉡ 음악에 관계된 사회 교육을 위한 강좌 개설
 - ㉢ 전2호에서 언급한 것 외에 음악 학습의 기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 ㉣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학교의 시설을 음악 학습을 위해 주민의 이용에 제공
 - ㉤ 음악 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
 - ㉥ 음악 학습에 관한 지도자 및 조연자에 대한 연수 실시
 - ㉦ 음악 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추진
 - ㉧ 음악을 통한 국제 문화 교류 사업 시행
- ②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본국의 전통 음악과 지역의 특색 있는 음악 문화 및 이들에 관계된 음악 학습을 진흥 하도록 배려한다.
- ③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 및 협력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조 (국제 음악의 날)

- ① 국민 사이에 폭넓게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고, 적극적으로 음악 학습을 행한 의욕을 고양함과 동시에,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관 헌장(昭和 26년 조약 제4호)의 정신에 따라 음악을 통한 국제상호이해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제 음악의 날을 설치한다.

- ② 국제 음악의 날은 10월1일로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제 음악의 날의 취지의 보급에 노력한다.

다. 문화산업분야

◎ 만국저작권조약의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 조 (목적) 이 법률은 만국저작권조약의 실시에 따라 저작권법(소화45년 법률 제48호)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 ① 이 법률에서 『만국조약』이라 함은, 만국저작권조약을 말한다.
- ② 이 법률에서 『발행』이라 함은, 만국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발행을 말한다.
- ③ 이 법률에서 『번역권』이라 함은, 만국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번역권을 말한다.

제3 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특례)

- ① 만국조약의 체약국의 국민이 발행하지 않은 저작물 또는 만국조약의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로서 만국조약 제2조의 규정에 기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때에,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한 보호기간 만료의 날까지로 한다.

- ② 만국조약의 체약국의 국민이 발행하지 않은 저작물 또는 만국조약의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로서 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만국조약 제2조의 규정에 기인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간주규정)

- ① 만국조약의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로서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은 전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둘 이상의 만국조약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전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許與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초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번역권에 관한 특례)

- ① 만국조약에 기초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문서의 최초의 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년을 경과한 때까지에 번역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 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일본어로 그 문서의 번역물이 발행되지 않거나, 또는 발행되었으나 절판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일본국민은 정령의 정함에 의해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본어로 그 문서의 번역물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발행 전에 정령의 정함에 의해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정한면서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번역권을 가지는 자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그 자를 위해 공탁해야 한다.
- ② 번역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번역하고, 또한 그 번역물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했으나 거부된 때.

- ㉔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번역권을 가지는 자와 연락할 수 없었던 때.
- ② 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동항의 허가를 신청하였던 자는 원저작물에 발행자의 성명이 게재되어 있는 때는 그 발행자에 대하여, 또한 번역권을 가지는 자의 국적이 판명되어 있는 때는 그 번역권을 가지는 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외교대표 혹은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는 한편, 그것을 송부한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 ④ 문화청장관은 제1항 단서의 허가를 함에는 문화심의회에 자문을 구해야한다.

제9 조 (무국적자 및 망명자) 무국적자 및 망명자의 저작물에 대한 만국저작권조약의 적용에 관한 동조약의 제1부속 의정서의 체약국에서 상시 거주하는 무국적자 및 망명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베른조약 등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 법률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에 의해 창설된 국제연맹의 가맹국,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관조약의 체결국 또는 세계무역기관의 가맹국의 하나를 각각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관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관을 설립하는 마라케시협정의 규정에 기인하여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저작물이 되기 전에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당해 허가에 관계된 번역물에 대한 동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에 해

당되지 않는다.

제11조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20조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연합국에서 이 법률을 시행하는 때에 만국조약의 체결국이거나 혹은 그 국민은, 이 법률의 시행할 때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20조의 규정에 기인한 구 저작권법(명치32년 법률 제39호)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그 보호(저작권법의 시행 시에 당해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한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 방송법

제33조 (국제방송 등의 실시에 관한 명령 등)

- ① 총무대신은 협외에 대하여 방송구역, 방송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국제방송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방송을 하게 하는 구역, 위탁방송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위탁협회국제방송업무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전항의 국제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외국에서의 송송신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당해 외국방송사업자와의 사이에 협정에 기인하여 그 자에게 관계된 중계국제방송을 할 수 있다.
- ③ 제9조 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협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7항 중 『또는 변경하고』라고 하는 것은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방송에 관한 연구)

- ① 총무대신은 방송 및 그 수신에 진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사항을 정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명령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는 방송사업의 발달 기타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제35조 (국제방송 등의 비용부담)

-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해 협회가 시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전 2조의 명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4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

- ① 협회는 국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및 방송 또는 수탁 국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및 방송의 위탁에 있어서는 제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바 외에,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풍부하고,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또한 위탁하여 방송하는 것에 의하여 대중의 요망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
 - ㉡ 전국용의 방송프로그램 외에, 지방용의 방송프로그램을 보유 할 것.
 - ㉢ 일본국의 과거의 우수한 문화의 보존 및 새로운 문화의 육성 및 보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② 협회는 대중의 요망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협회의 중파 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④ 협회는 국제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및 방송 또는 수탁 협회 국제 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및 방송의 위탁 또는 외국 방송 사업자 혹은 외국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그 밖

의 사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배양하고, 또한 보급하는 것 등에 의해 국제친선의 증진 및 외국과의 경제 교류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해외 동포에게 적절한 위안을 주도록 해야 한다. (소34법30·소57법60·소62법56·소63법29·1994년 74·1998년88·일부개정)

제52조의27 (수탁 내외 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위탁 방송 사업자는 수탁 내외 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있어서, 국제친선 및 외국과의 교류가 손상된 일이 없도록 당해 수탁 내외 방송의 방송 대상지역인 외국의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사정을 가능한 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4년 74·추가)

라. 청소년·체육분야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점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며, 아울러 아동의 권리의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입각하여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았던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2004년106·일부개정)

제17조 (국제 협력의 추진)국가는 제4조로부터 제8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행위의 방지 및 사건의 적정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제적인 긴밀한 연대의 확보, 국제적인 조사 연구의 추진, 기타 국제 협력의 추진에 노력 한다.

◎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법

제15조 (업무의 범위)

- ①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한다.
 - ㉠ 그 설치한 스포츠 시설 및 부속 시설을 운영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 ㉡ 스포츠 단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행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행하는, 다음에 언급한 활동에 대한 자금의 지급 및 그 밖의 원조
 - ㉠ 스포츠에 관한 경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 이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합숙 그 밖의 활동
 - ㉡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스포츠 경기대회, 연구집회 또는 강습회의 개최
 - ㉢ 우수한 스포츠 선수 또는 지도자가 행한 경기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또는 우수한 스포츠 선수가 받는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자금의 지급 및 그 밖의 원조
 - ㉣ 국제적으로 탁월한 스포츠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의 지급 및 그 밖의 원조
 - ㉤ 투표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 ㉥ 학교의 관리 하에서 아동 학생 등의 재해(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관하여, 당해 아동 학생 등의 보호자(학교교육법(昭和 22년 법률 제26호)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를 말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부모(아동복지법(昭和 22년 법률 제164호)제2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양부모를 말한다)그 밖의 政令에서 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또는 당해 아동 학생 등 중에서 학생 또는 학생이 성년에 이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해공제급부(의료비, 장애위로금 또는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말한다. 이하 동일)

- ㉔ 스포츠 및 학교 안전(학교(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동일)에서의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를 말한다.) 그 밖에 학교에서의 아동 학생 등의 건강의 보호 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및 제공
- ㉕ 전호에서 언급한 업무에 관련된 강연회의 개최, 출판물의 간행 및 그 밖의 보급 사업
- ㉖ 前各号에서 언급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② 센터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외에,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항 제1호에 언급한 시설의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 스포츠진흥법

제14조 (스포츠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일본국의 스포츠의 수준을 국제적인 것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국가는 전항에서 정한 조치 중, 재단법인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실시한 국제적인 규모의 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재단법인 일본 올림픽 위원회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 노력 한다. (1998년65·일부개정)

마. 관광·레저분야

◎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의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률은 일본국에서의 국제회의 등의 개최를 증가

시키고, 또한 국제회의 등에 수반하는 관광 및 기타 교류의 기회를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의 촉진 및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과의 사이의 교류의 촉진에 이바지 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또한 그 개최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고 그로써 국제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률에서 『국제회의 등』이란 회의, 토론회, 강습회 기타 이에 유사한 집회(이에 부수되어 개최된 전람회를 포함한다.)로서 해외로부터 상당수의 외국인의 참가가 예상 되는 것 및 이들과 아울러 이루어지는 관광여행 기타의 외국인을 위한 관광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 3 조 (기본방침)

- ① 국토교통장관은 국제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개최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또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의 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대한 조치』라고 한다.)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한다.
- ② 기본방침에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 ㉠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 ㉢ 국제회의 등의 개최의 원활화에 관한 사항

- ㉔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에 대한 매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㉕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그 개최의 원활화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㉖ 국토교통장관은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가 생겼을 때는 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㉗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1999년160·일부개정)

- ③ 국토교통장관은 기자국침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미리 외무대신, 문부과학장관 및 경제산업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하고자 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 4 조 (인정)

- ①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은 신청에 의해 그 구역에서의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국제 관광의 진흥에 특히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취지의 국토교통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전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읍면은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㉔ 국제 회의장 시설 기타의 국제회의등용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개요 및 규모
- ㉕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숙박시설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개요 및 규모

- ㉔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그 개최의 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체제
- ㉕ 당해 시읍면의 구역 또는 그 부근에 존재하는 관광자원의 개요
(1999년160·일부개정)

제 5 조

- ① 국토교통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에 대한 신청이 다음에 언급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 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이 정비되어 있을 것 또는 정비된 것이 확실할 것.
 - ㉕ 국제관광호텔정비법(昭和 24년 법률 제279호)제3조의 등록을 받은 호텔 기타 전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시설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 정비되어 있을 것 또는 정비된 것이 확실할 것.
 - ㉖ 오로지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그 개최의 원활화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실시하는 기관 기타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그 개최의 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적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 ㉗ 당해 시읍면의 구역 또는 그 부근에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에 대한 매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관광자원이 존재할 것.
- ② 국토교통장관은 둘 이상의 시읍면에서 공동으로하여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 보아 당해 시읍면의 구역에서 일체로서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국제관광의 진흥에 특히 이바지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읍면

을 一體로 하여 동향의 인정을 할 수 있다.

(1999년160·일부개정)

제 6 조 (인정의 공시 등)

- ① 국토교통장관은 제 4조 제1항의 인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② 제4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시읍면(이하『국제회의관광도시』라고 한다.)은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언급하는 사항에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국토교통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년160·일부개정)

제 7 조 (인정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장관은 국제회의관광도시가 제5조 제1항 각호에 언급한 요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9년160·일부개정)

제 8 조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 ①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이하『기구』라고 한다.) 는 국제회의관광도시에 관하여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에서 언급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국제회의관광도시에 대하여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기에 알맞은 제공.
 - ㉡ 해외에서 국제회의관광도시의 선전 행위
- ②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구는 시읍면이 하는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 관계 기관과의 연락 조정, 조언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2년181·일부개정)

제 9 조 (국제회의 등의 개최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 ① 기구는 국제회의관광도시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국제회의 등의 개최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또한 당해 국제회의 등을 주최하는 자이면서 그 개최에 필요한 자금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전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기구는 국제회의 등의 개최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통역안내업을 운영하는 자, 여행업을 운영하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의 알선, 국제회의관광도시 이외의 시읍면에서 개최되는 동항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국제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교부금의 교부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9년160·2002년181·일부개정)

제10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의 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

기구는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의 매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시읍면의 구역 또는 그 부근에 존재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언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2년181·일부개정)

제11조 (기구의 업무)기구는 국제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한다.

- ①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에 관한 원조
- ② 국제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기부금의 모집 및 관리 및 교부금의 교부 기타 국제회의 등의 개최의 원활화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의 매력의 증진에 관한 원조.
- ③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그 개최의 원활화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연수 실시

④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⑤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2002년181·일부개정)

제12조 (구분 경리)기구는 전조 제2호의 업무 중 국제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기부금의 모집과 관리 및 교부금의 교부에 관계된 업무(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계된 경리에 관해서는 그 밖의 경리라고 구분하고 특별한 계산을 설정하여 정리해야 한다.

(2002년181·일부개정)

제13조 (국가 등의 원조 등)

① 국가는 기구, 국제회의관광도시 그 밖의 시읍면과 국제회의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그 밖의 원조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국제회의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국제회의 등의 개최의 원활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의 매력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그 밖의 원조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국토교통장관, 기구, 관계 지방공공단체, 관계 단체 및 관계 사업자는 국제회의 등의 개최의 원활화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의 매력 증진에 관하여 서로 연대를 도모하면서 협력하여야 한다.

(1999년160·일부개정, 2002년181·일부개정·구제14조 조상)

◎ 국제회의 등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원활화 등에 의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국제 회의등에 참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한 시설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기준은 다

음과 같다.

- ① 숙박시설은 다음에 언급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 ㉠ 그 수용 인원의 합계가 전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의실 등의 수용 인원(동호에서 규정한 회의실 등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회의실 등의 수용 인원의 합계)이상일 것.
 - ㉡ 그 객실 중 넓이 및 설비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수가 객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일 것.
 - ㉢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것.
- ② 식사 시설은 다음에 언급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 ㉠ 그 수 및 규모가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것
 - ㉡ 그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것
- ③ 안내 시설은 그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할 것.

(2000년영39·일부개정)

제5조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그 개최의 원활화에 관한 업무)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
- ② 유치해야 할 국제회의 등의 관계자에 대한 선전, 기타 유치를 위한 활동
- ③ 국제회의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한 원조

(2000년영39·일부개정)

◎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정비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률은 국제관광문화도시가 일본국의 국민생활, 문화 및 국제친선에 서의 역할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도시에 있어 특히 필요하게 된 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사업의 원활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로써 국제관광문화도시에 적합한 양호한 도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며 아울러 국제 문화의 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이 법률에서『국제관광문화도시』라고 함은 다음에 언급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시 또는 마을 및 이러한 시 또는 마을에 준하는 시읍면 중, 당해 시읍면에 관광, 휴양 등의 목적을 위해 체재하거나 또는 숙박한 자의 총수(이하『유동 인구』라고 한다.)의 상황 및 당해 시읍면의 재정력이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령에서 지정하는 시읍면을 말한다.
- ㉠ 벳푸(別府)국제관광온천문화도시건설법(昭和 25년 법률 제 221호)
- ㉡ 이토(伊東)국제관광온천문화도시건설법(昭和 25년 법률 제 222호)
- ㉢ 아타미(熱海)국제 관광온천문화도시건설법(昭和 25년 법률 제233호)
- ㉣ 나라(奈俵)국제문화관광도시건설법(昭和 25년 법률 제250호)
- ㉤ 교토(京都)국제문화관광도시건설법(昭和 25년 법률 제251호)
- ㉥ 마츠에(松江)국제문화관광도시건설법(昭和 26년 법률 제7호)
- ㉦ 아시아(芦屋)국제문화주택도시건설법(昭和 26년 법률 제8호)
- ㉧ 마쓰야마(松山)국제관광온천문화도시건설법(昭和 26년 법

를 제117호)

㉔ 카루이자와(輕井澤)국제친선문화관광도시건설법(昭和 26년 법률 제253호)

② 주무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을 지정하는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회 자본 정비 심의회의 의논을 거쳐야 한다.

(1999년160·일부개정)

제 3 조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

① 국제 관광 문화 도시의 장은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보는 한편, 유동 인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로 된 도시공원, 하수도, 도로 및 그 밖에 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이하『사업 계획』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 계획에는 전항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개요 및 경비의 概算 및 유동 인구의 상황에 관하여 정한다.

③ 사업 계획은 2년마다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 (보조금의 교부의 결정에 관한 특별한 배려)국가는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보조금등에관계된예산의집행의적정화에관한법률(昭和 30년 법률 제179호)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조 사업 등인 것에 한한다.) 에 관해서는 당해 사업의 진행 상황, 당해 국제관광 문화도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에 관한 특별한 배려 등)

① 국제관광문화도시가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한 사업에 필

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만드는 지방채에 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 및 당해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재정 상황이 허용한 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국가는 전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국제관광문화도시에 대해 재정상의 조치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국가 등 및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장의 責務)

- ① 국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2조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의 촉진과 완성으로 할 수 있는 한의 적극적인 원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정비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주무 장관)이 법률에서의 주무 장관은 국토교통장관 그 밖에 정령에서 정하는 장관으로 한다.
(1999년160·추가)

◎ 관광기본법

- 제 1 조 (국가의 관광에 관한 정책의 목표)국가의 관광에 관한 정책의 목표는 관광이 국제 수지의 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 문화의 교류의 촉진과, 국민의 보건의 증진, 근로 의욕의 증진 및 교양의 향상에 공헌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의 촉진, 관광여행의 안전의 확보, 관광자원의 보호, 육성 및 개발, 관광에 관한 시설의 정비 등을 위한 시책

을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 관광의 발전 및 국민이 건전한 관광여행의 보급 발달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하며 아울러 지역 격차의 시정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제 2 조 (국가의 시책)국가는 전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언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의 촉진 및 외국인 관광 여객에 대한 대접의 향상
- ② 국제 관광지 및 국제 관광 루트의 종합적 형성
- ③ 관광여행의 안전의 확보 및 관광여행자의 편의의 증진
- ④ 가족 여행 기타 건전한 국민 대중의 관광여행의 용이화
- ⑤ 관광여행자가 하나의 관광지에 과도한 집중의 완화
- ⑥ 저개발지역에 대해 관광을 위한 개발.
- ⑦ 관광자원의 보호, 육성 및 개발
- ⑧ 관광지에서의 미관 풍치의 유지

제 6 조 (외국인 관광 여객의 내방의 촉진)국가는 외국인 관광 여객의 내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에서 관광 선전 활동의 충실 강화, 국제교통기관 및 이에 관련된 시설의 정비, 외국인 관광 객의 출입국에 관한 조치의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외국인 관광 여객에 대한 대접의 향상)국가는 외국인 관광 객에 대한 접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숙박시설, 식사 시설, 휴식 시설, 안내 시설 기타 여행에 관한 시설(이하 『여행관계시설』이라고 한다.) 로 외국인 관광 여객의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의 정비, 통역 안내, 여행 알선, 기타 국제 관광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서비스의 향상, 관광토 산품 등의 품질의 개선, 우리나라의 산업, 문화 및 가정생

활의 소개의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8조 (국제 관광지 및 국제 관광 루트의 종합적 형성)국가는 국제 관광지 및 국제 관광 루트의 종합적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에 적합한 관광지 및 그 관광시간을 연결한 경로에 대해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주차장, 여객선, 기타 관광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하『관광기반시설』이라고 한다.) 및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행 관계 시설의 종합적 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7조 (관광 관계 단체의 정비)국가는 국제 관광의 발전, 관광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 관광여행자의 편의의 증진 및 관광에 관한 사업이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에 관한 단체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률은 지역 전통예능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의 다양화에 의한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의 매력의 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소비생활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에 입각한 특정 지역 상공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당해 행사가 확실히 또한 효과적인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것에 의해,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그것으로써 여유가 있는 국민생활 및 지역의 고유의 문화 등을 살린 개성 풍부한 지역 사회의 실현, 국민 경제가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의 『지역 전통예능 등』이란, 지역의 민중의 생활

가운데에 계승되어 당해 지역의 고유의 역사, 문화 등을 진하게 반영한 전통적인 예능 및 풍속 관습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의『활용 행사』란,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된 행사로써, 지역 전통예능 등의 실연, 지역 전통예능 등에 사용된 의복, 기구 등의 전시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지역 전통예능 등을 그 주제로서 활용한 것 중, 국내 관광 및 국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상당 정도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특정 사업 등』이란, 지역 전통예능 등의 실연 등에 관계된 인재의 확보, 지역 전통예능 등에 관계된 실연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 지역 전통예능 등에 사용된 물품의 확보, 활용 제품, 선전, 관광여행자 및 고객의 편의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조치로써 활용 행사에 관계된 것 중, 활용 행사의 확실히 또한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활용 행사에 관련하여 실시된 것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의『특정 지역 상공업』이란, 활용 행사가 실시된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구역에서 소매업, 당해 소매업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으로써 당해 활용 행사가 실시되는 都道府縣의 구역에서의 물건 및 당해 활용 행사에 관계된 지역 전통예능 등에 사용된 의복, 기구 그 밖의 물품 및 당해 지역 전통예능 등에 관계된 활용 제품의 제조업으로 당해 활용 행사가 실시되는 都道府縣의 구역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의『활용 제품』이란, 지역 전통예능 등의 특징 또는 지역 전통예능 등에 사용된 의복, 기구 그 밖의 물품의 특징을 활용하고 기능 및 효용을 높였던 제품을 말한다.

제9조 (사업)지원 사업 실시 기관은, 다음에 언급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

- ① 계획 활용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 ② 계획 활용 행사 등이 확실하고 효과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실시 주체에 대해 전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③ 계획 활용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자금의 지급 그 밖의 원조를 하는 것.
 - ④ 독립 행정법인 국제 관광 진흥 기구가 실시한 외국인 관광 여객의 내방의 촉진 및 그 접대의 향상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립 행정법인 국제 관광 진흥 기구에 대해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활용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조사, 연구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
- (2002년181·일부개정)

바. 국제·외무분야

◎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

제7조 (국제적 협조)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의 촉진이 국제사회에서의 대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은 국제적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 (국제적 협조를 위한 조치)국가는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을 국제적 협조 하에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과의 정보의 교환 기타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에 관한 국제적인 상호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률은 해외의 지역, 특히 개발 도상에 있는 해외

의 지역에 있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확실히 발생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재해를 입거나, 혹은 입을 우려가 있는 나라의 정부 또는 국제기관(이하『이재국 정부 등』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하는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긴급원조대를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이로써 국제 협력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① 외무대신은 이재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제 긴급 원조대의 파견의 요청이 있던 경우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파견이 적당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대해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이재국 정부 등으로부터의 당해 요청의 내용, 재해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별표에서 언급한 행정기관(다음 조에서『관계 행정기관』이라고 한다.)의 장 및 국가공안위원회와 협의 한다.
- ② 외무대신은 전항의 협의를 한 경우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위대법(昭和 29년 법률 제165호)제8조에서 규정하는 부대 등에 의해 다음에 언급하는 활동에 대해 협력을 구하기 위해 방위청장관과 협의 한다.
 - ㉠ 국제 긴급 원조 활동
 - ㉡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하는 인원 또는 당해 활동에 필요한 기차재 그 밖의 물자의 해외의 지역으로의 수송
- ③ 전항의 규정은 해상보안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한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자위대법(昭和 29년 법률 제165호)제8조에서 규정하는 부대 등에 의해 다음에 언급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 보안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한

제2호에 서 언급한 활동』이라 하고, 『방위청장관』이라함은 『해상보안청장관』이라고 한다. (1992년 80·일부개정)

제 4 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조치)

- ① 관계 행정기관장은 전조 제1항(해상보안청 장관에 있어서는 동항 또는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2항)의 협의에 근거하여, 그 직원에게 국제 긴급 원조 활동(해상보안청의 직원에 있어서는 동조 제3항에서 대체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방위청장관은 전조 제2항의 협의에 근거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부대 등에 동항 각호에서 언급한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국가 공안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협의에 근거하여 都道府縣경찰에 대하여 그 직원에게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④ 都道府縣경찰은 전항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 그 직원에게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소방청 장관은 전조 제1항의 협의에 근거하여 시읍면(도쿄도(東京都) 및 시읍면의 소방의 일부 사무조합 및 광역 연합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동일.)에 대하여 그 소방 기관의 직원에게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요청 할 수 있다.
- ⑥ 시읍면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소방 기관의 직원에게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관계 행정기관장 중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平成11년 법률제103호)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주무 장관(동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주무 장관을 말한다.)이라 함은 전조 제1항의 협의에 근거하여 그 관할에 관계된 독립행정법인에 대하여 그 직원에게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요청 할 수 있다.

- ⑧ 독립행정법인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직원에게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992년 80·1994년 49·1999년220·일부개정)

제 5 조 (외무대신의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에 대한 명령)외무 대신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에 대하여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전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국가, 지방공 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의 직원 기타의 인원을 국제긴급 원조대로서 파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명령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협의가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협의 에 근거하여 행한다.

(1992년 80·1999년220·2002년136·일부개정)

◎ 국가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

제 7 조 (독립 행정법인 국제 협력 기구에 의한 업무의 실시)국제긴 급원조대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업무(국제 긴급 원조 활동 에 필요한 기자재 기타 물자의 조달, 수송의 준비 등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하고, 제3조 제2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활동 중 동조 제2항 제 2호에 해당하는 것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는 독립행 정법인 국제협력기구가 실시한다. (1992년 80·2002년136·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2 조 (정의)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이에 근거한 명령에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① 삭제
- ② 외국인 - 일본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를 말한다.
- ③ 탑승자 - 선박 또는 항공기(이하『선박등』이라고 한다.) 의 승무원을 말한다.
- ③의2 난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하『난민 조약』이라고 한다.) 제1조의 규정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난민 조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을 말한다.
- ④ 일본 영사관 등 - 외국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관을 말한다.
- ⑤ 여권 - 다음에 언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 가) 일본정부, 일본정부가 인정한 외국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여권 또는 난민 여행증명서, 기타 당해 여권에 대신하는 증명서(일본 영사관등이 발행한 도항 증명서를 포함한다.)
 - 나) 정령에서 정하는 지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가)에서 언급한 문서에 상당하는 문서
- ⑥ 탑승자 수첩 -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선원수첩, 기타 탑승자에 관계된 이에 준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⑦ 삭제
- ⑧ 출입국 항구 - 외국인이 출입국 해야 할 항구 또는 비행장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⑨ 운송업자 - 자국과 자국외의 지역과의 사이에서 선박 등에 의해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⑩ 입국심사관 - 제61조의3에서 정하는 입국심사관을 말한다.
- ⑪ 주임심사관 - 상급의 입국심사관으로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⑫ 특별심리관 - 구술심리를 하게 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지정하

는 입국심사관을 말한다.

- ⑫의2 난민조사관 - 난민의 인정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입국심사관을 말한다.
- ⑬ 입국경비관 - 제61조의 3의 2에서 정하는 입국 경비관을 말한다.
- ⑭ 위반조사 - 입국경비관이 행하는 외국인의 입국, 상륙 또는 재류에 관한 위반 사건의 조사를 말한다.
- ⑮ 입국자 수용소 - 법무성설치법(平成 11년 법률 제93호)제13조에서 정하는 입국자 수용소를 말한다.
- ⑯ 수용장 - 제61조의 6에서 정하는 수용장을 말한다. (소27법 126·소27법268·소33법154·소46법130·소56법85·소56법86·소58법78·1998년57·1999년160·일부개정)

제 5 조 (상륙의 거부)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당해하는 외국인은 자국에 상륙할 수 없다.
 -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平成14년 법률 제114호)에서 정하는 1종 감염증, 2종 감염증 또는 지정 감염증(동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환자(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1종 감염증, 2종 감염증 또는 지정 감염증의 환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 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
 - ㉡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식 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 있는 자 또는 그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로, 자국에 있어서 그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는 자.
 - ㉢ 빈곤자, 방랑자 등으로 생활 상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자.

- ㉔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에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일이 있는 자. 단, 정치범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㉕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약의 거래에 관해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
- ㉖ 의2. 국제적 규모 또는 이것에 준한 규모에서 개최된 경기 대회 또는 국제적 규모에서 개최된 회의(이하『국제 경기회 등』이라고 한다.)의 경과 또는 결과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건축물 기타의 물건을 파괴하는 것에 의해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규정에 의해 자국에서의 퇴거가 강제되었거나, 또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나라에서 퇴거되었던 자로써 자국에서 행해지는 국제 경기회 등의 경과 또는 결과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해 국제 경기회 등의 개최 장소 또는 그 소재하는 시읍면(도쿄도(東京都)의 특별구가 존재한 구역 및 지방자치법(昭和 22년 법률 제67호)제252조의 19제1항의 지정 도시에 있어서는, 구)의 구역 내 또는 그 부근의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제공된 장소에서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거나 또는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자.
- ㉗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昭和 28년 법률 제14호)에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약, 대마단속법(昭和 23년 법률 제124호)에서 정하는 대마, 아편법(昭和 29년 법률 제71호)에

서 정하는 아편 또는 양귀비, 각성제단속법(昭和 26년 법률 제252호)에서 정하는 각성제 또는 각성제 원료 또는 아편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자.

- ㉔ 매춘 또는 그 주선, 권유, 장소의 제공, 기타 매춘에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
- ㉕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昭和 33년 법률 제6호) 에서 정하는 총포 혹은 도검류 또는 화약류단속법(昭和 25년 법률 제 149호)에서 정하는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한 자.
- ㉖ 다음의 ㉗에서 ㉙까지에서 언급하는 자로 각각 당해 ㉗로부터 ㉙까지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는 것.
 - ㉗ 제6호 또는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상륙이 거부된 자 - 거부된 날로부터 1년
 - ㉘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제4호 ㄱ로부터 ㄴ까지 및 제4호의 3을 제외한다.) 에 해당하고 자국에서의 퇴거가 강제된 자로 그 퇴거일 전에 자국에서의 퇴거가 강제된 것 및 제5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적이 없는 자 - 퇴거한 날로부터 5년
 - ㉙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제4호 ㄱ로부터 ㄴ까지 및 제4호의 3을 제외한다.)에 해당하고 자국에서의 퇴거가 강제된 자(나)에서 언급한 자를 제외한다.) - 퇴거한 날로부터 십년
 - ㉚ 제5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자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 ㉗ 의2. 별표 제1의 上欄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국에 재류하고 있는 사이에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제2편 제 12장, 제16장으로부터 제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37장 또는 제39장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26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

조의 이 또는 제1조의 3(형법 제222조 또는 제261조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도범등의방지및처분에 관한 법률(昭和5년 법률 제9호)의 죄 또는 특수개정용구의소지의금지등에 관한 법률(平成 15년 법률 제65호)제15조 또는 제16조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판결의 선고를 받았던 자로 그 후 출국하여 자국 외에 있는 사이에 그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일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㉔ 제24조제4호 ㄷ로부터 ㄹ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국에서의 퇴거가 강제된 자
- ㉕ 일본 헌법 또는 그 의거하여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것을 계획 또는 주장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있는 자.
- ㉖ 다음에 언급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
 - ㉗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할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
 - 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
 - ㉙ 공장 사업장에서의 안전 유지의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영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것 같은 정의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
- ㉚ 제11호 또는 전호에 규정한 정당 그 밖의 단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쇄물, 영화 그 밖의 문서 도화를 작성하여 반포하고거나 또는 전시할 것을 계획한 자.
- ㉛ 전각호에 언급한 자를 제외하는 외에 법무장관에게 있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② 법무장관은 자국에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가 동항 각호 이외의 사유에 의해 일본인의 상륙을 거부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해 당해 외국인의 상륙을 거부할 수 있다. (소27법268·소28법214·소29법71·소33법 6·소40법47·소56법85·소62법98·1990년 33·평성7 법 9 4·1996년 28·1998년114· 1999년135·2001년136·2003년65·2004년73·일부개정)

제 6 조 (상륙의 신청)

- ① 자국에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탑승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동일.)은 유효한 여권으로 일본 영사관 등의 사증을 받은 것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국제 약속 또는 일본정부가 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통고에 의해 일본 영사관 등의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외국인의 여권,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의 허가를 받고 있는 자의 여권 또는 제61조의 2의 6의 규정에 의한 난민 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자의 해당 증명서에는 일본 영사관 등의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전항 본문의 외국인은 그 자가 상륙하고자 하는 출입국 항구에서 법무성령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 입국심사관에 대해 상륙의 신청을 하여 상륙을 위한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소27법268·소56법85·소56법86·평원 법79·일부개정)

제24조 (퇴거 강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해 자국에서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다.

-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국에 들어간 자
②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 상륙한 자

- ② 의2. 제22조의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해 재류자격이 취소된 자
- ② 의3. 제22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간의 지정을 받았던 자로, 당해 기간을 경과하여 자국에 잔류하는 자
- ③ 다른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앞 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 상륙 허가의 證印 또는 허가, 동 장 제4 절의 규정에 의한 상륙의 허가, 또는 본 장의 제1절 또는 다음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또는 도화 또는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 소지, 양도, 대여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알선을 한 자
- ④ 자국에 재류하는 외국인(假상륙의 허가, 기항지 상륙의 허가, 통과 상륙의 허가, 탑승자 상륙의 허가 또는 조난에 의한 상륙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으로 다음에 언급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만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인정된 자
 - ㉡ 재류기간의 갱신 또는 변경을 받지 않고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본국에 잔류한 자
 - ㉢ 및 ㉣ 삭제
 - ㉤ 제74조부터 제74조의 6까지 또는 제74조의 8의 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자
 - ㉥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자를 제외한다.
 - ㉦ 소년법(昭和 23년 법률 제168호)에서 규정하는 소년으로昭和 26년11월 1일 이후에 장기3년을 초과한 징역 또는 금고

에 처해진 자

- ㉔ 昭和 26년11월 1일 이후에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 단속법,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국제적인 협력 하에 규제 약물에 관계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 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등의특례등에관한법률 (平成3년 법률 제94호) 또는 형법 제2편 제14장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던 자
- ㉕ ㉔부터 ㉗까지 규정한 자 외에, 昭和 26년11월 1일 이후에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자를 제외한다.
- ㉖ 매춘 또는 그 주선, 권유, 장소의 제공 그 밖에 매춘에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종사자
- ㉗ 다른 외국인이 불법으로 본국에 들어가거나 또는 상륙하는 것을 부추기거나 도왔던 자
- ㉘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또는 주장하고, 또는 이를 계획 또는 주장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 하고 있는 자
- ㉙ 다음에 언급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 입하고,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
 - ㉚ 공무원이라는 이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
 - ㉛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을 권장 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
 - ㉜ 공장 사업장에서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영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것 같은 정의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
- ㉚ ㉔ 및 ㉙에서 규정하는 정당 그 밖의 단체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인쇄물, 영화 그 밖의 문서 도화를 작성,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자

㉞ 의2 ㉠, ㉡ 및 ㉢에서 ㉞까지 언급한 자를 제외하고, 법무 장관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의2. 별표 제1의 上欄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로 재류하는 자로, 형법 제2편 제12장, 제16장으로부터 제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37장 또는 제39장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1조의 2 또는 제1조의 3(형법 제222조 또는 제261조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도범등의방지및처분에관한법률의 죄 또는 특수개정용구의소지의금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④ 의3. 단기 체재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로 재류하는 자로, 본국에서 행해지는 국제 경기회등의 경과 또는 결과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해 국제 경기회등의 개최 장소 또는 그 소재한 시읍면(도쿄도(東京都)의 특별구가 존재한 구역 및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제1항의 지정 도시에 있어서는, 구)의 구역 내 또는 그 부근의 불특정 또는 다수에 제공된 장소에 있어, 불법으로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거나 또는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한 것

⑤ 仮상륙의 허가를 받았던 자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착된 조건에 위반하여, 도주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않는 자

⑤ 의2. 제10조 제10항 또는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퇴거를 명령받았던 자로, 지체 없이 본국에서 퇴거하지 않는 자

⑥ 기항지 상륙의 허가, 통과 상륙의 허가, 탑승자 상륙의 허가,

긴급 상륙의 허가, 조난에 의한 상륙의 허가 또는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의 허가를 받았던 자로, 여권 또는 당해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을 경과하여 본국에 잔류하는 자

- ⑥ 의2.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기간의 지정을 받았던 자로 당해 기간 내에 귀선 하거나 또는 출국하지 않는 자.
- ⑦ 제2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 또는 제22조의 2 제 4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제2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본국에 잔류하는 자
- ⑧ 제5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국 명령을 받았던 자로 당해 출국 명령에 관계된 출국 기한을 경과하여 본국에 잔류하는 자
- ⑨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해 출국 명령이 취소된 자
(소27법126·소27법268·소28법214·소29법71·소56법85·소56법86·평원 법79·1990년 33·1991년 94·1997년 42·1999년135·2001년136·2003년65·2004년73·일부개정)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년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